

현안분석 2007-

콘텐츠산업법제지원사업(Ⅲ)

출판·인쇄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한 정 미

콘텐츠산업법제지원사업(Ⅲ)

출판·인쇄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Revision Proposal for Legislations related to Publishing
and Printing Industry

연구자 : 한정미(부연구위원)

Han, Joung-Mi

2007. 10. 31.

국문 요약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법의 기본적인 성격이 규제법에서 진흥법으로 바뀌었고, 출판진흥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내용면에서는 아직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비롯한 출판관련 법제를 체계화하고 저작권법의 출판권 규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출판·인쇄산업의 발전과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간행물 유통의 측면에서 보면, 진흥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진흥기구가 없는 문제에 대하여, 진흥기구 설치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의 출판관련 공익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진흥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전자출판 및 전자책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전자도서관의 확대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제2항의 도서관 안에서만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관외 복제, 전송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서정가제 문제는 최근 개정으로 온·오프라인 서점에 불공정하게 적용되었던 할인허용의 문제를 시장경쟁 논리에 일임하도록 하였으나, 온·오프라인 서점의 동일한 할인허용은 다른 의미로는 도서의 거품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도서정가제의 본래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1항에 출판자가 가격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록, 즉 최종소비자 가격을 출판사만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출판사가 정한 가격에 도서를 판매해야 한다는 사항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간행물심의는 현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열거된 간행물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유형간행물 등을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간행물 등급분류기준과 관련하여서도 각 매체물간에 등급분류의 동일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므로 각 매체물에 대한 근거법의 소관부처간 합의를 통한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출판과 관련한 저작권법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출판계약에 관한 일반법이 없이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저작권법의 규정을 독일 출판권법의 경우와 같이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앞서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해 서면계약을 일반화하도록 하고, 약관규제절차를 통하여 표준계약서의 내용통제를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저작자 보호를 위하여 출판계약 체결시에 약정한 보상금이 실제로 얻은 수익에 비해 상당하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추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추가보상청구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통한 출판계약체결의 경우 획일적으로 사용료를 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용자의 이용목적과 방법, 저작자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체계화·다양화 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책의 저작권보호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자책’과 ‘전자출판’의 개념을 저작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출판권설정계약의 내용도 전자출판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는 한미FTA 협정문에 의거하여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2007년 9월 입법예고 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최저 및 최고 배상액수와 금액 결정에 대한 법원의 고려사항일 것인 바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키워드 : 출판, 법정손해배상, 전자출판, 출판계약, 도서정가제

Abstract

Changed to a promotion act from a regulation on February 27, 2003, the Publication Culture Industry Promotion Act provides a firm legal framework for the promotion of the publishing industry. However, several articles and clauses stipulated in this act need to be revised in order to address several emerging issu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revisions to copyright laws, publishing rights, and legislation related to the publishing industry such as the Publication Culture Industry Promotion Act in order to further develop the publishing and printing industry and improve distribution channels.

In the case of the distribution of periodicals, there is no oversight agency to enforce the Publication Culture Industry Promotion Act while the fact that the promotion act was successfully passed as a bill indicates that the industry worked closely together with the government to draft it. In light of the ties that exist between the publishing industry and public agencies, an oversight agency should be established. There is a current proposal to expand digital libraries as a way to foster growth in the distribution of electronic books and support the emergence of electronic publications. But in order to proceed with this proposal, Clause 2 in Article 31 of the Copyright Act (regulation that limits copying of material within libraries) needs to be revised to allow material to be copied and transmitted outside of libraries.

The fixed price system pertaining to book sales was recently revised to allow e-retailers and brick-and-mortar stores to discount books according

to market forces. In the previous system, books could not be marked down in excess of 10% of the cover price but since e-retailers and brick-and-mortar book store operate under different economies of scale and business models, this restriction could possibly create artificially inflated prices. Thus, Clause 1 in Article 22 of the Publication Culture Industry Promotion Act must be revised to allow publishers to make their own decisions on setting prices for books and this will make the fixed price system work as it was originally planned to. The new revisions should clearly state that publishers can determine book prices at their discretion.

Only the publications listed in Clause 4 in Article 2 of the Publication Culture Industry Promotion Act are currently reviewed for censorship matters, but the list should include new types of periodicals for review. There is also the need to develop a general classification system that will broadly apply to different types of media publications. The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should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agree upon a broad guideline for a new classification system.

Another pending issue is the fact that copyright laws are enforced in publishing contracts due to the absence of contract laws governing publishing contracts. The current copyright law should include specific language and more contract details like German copyright laws. But more importantly, written contracts must be adopted as a standard procedure in all publishing deals in order to establish fairness in agreements. The terms of use regulation could be applied on standard contracts as a way to enforce basic safeguards.

There is also the need to allow a plaintiff to seek additional damages if the initial damages awarded to the plaintiff in a contract lawsuit are

substantially lower than the profits accrued by the defendant at the expense of the plaintiff. One of the recurring and widespread problems in publishing contracts is how contracts overseen by copyright management agencies give licensees broad use of copyright material at a fixed licensing fee rate. An adjustable license fee should be introduced that will take into account how the copyright material is used by the end user and for what purposes - personal or business. The value of the copyright material should also be assessed and reflected in the setting of a licensing fee.

In order to enforce copyright protection for electronic books, copyright laws must first stipulate the definitions of electronic books and electronic publishing. Publication rights contracts should also be revised to include electronic publishing as a form of copyright material.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compensation for infringement outlined in the KORUS FTA, a system for legal compensation is currently taking shape and will be duly adopted. This legal compensation system is included in the pending copyright law revisions that were submitted to the legislative body on September 2007. Hence, the courts will only determine the minimum and maximum amount that can be awarded to a plaintiff, who is seeking monetary damages in a copyright lawsuit, if the legal compensation system is passed into law.

※ Key words : Publication, legal compensation for infringement, electronic publication, publishing contract, fixed price system on books

목 차

국문 요약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5
제 1 절 연구의 목적	15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8
제 2 장 출판산업의 구조와 법제개관	21
제 1 절 출판산업의 현황	21
I. 출판산업의 구조와 현황	21
II. 출판산업의 전자화 현황	24
제 2 절 출판산업 관련 입법체계	26
I. 진흥관련 입법	26
II. 저작권법	34
III. 간행물심의규정	37
제 3 절 주요국의 입법례	39
I. 미 국	39
II. 독 일	41
III. 일 본	44

제 3 장 출판과 유통	49
제 1 절 출판산업 관련 기구의 문제	49
I. 출판산업 진흥주체의 부재	49
II. 출판관련 공익기관의 비효율성	51
제 2 절 전자출판 활성화와 전자도서관	53
I. 전자출판의 개요	53
II. 전자도서관의 전자책 보급	61
제 3 절 도서정가제의 유지	68
I. 도서정가제의 개관	68
II. 도서정가제 시행경과와 개정내용	71
III.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제도와와의 관계	75
제 4 절 간행물심의제도의 운영	78
I. 간행물심의제도의 운영상황	78
II. 간행물심의의 제도적 문제	82
제 5 절 출판산업의 진흥방안	86
I. 출판산업 관련 기구의 개편	86
II. 전자도서관을 통한 전자책 보급확대	90
III. 도서정가제의 개선	96
IV. 간행물 심의규정의 정비	99

제 4 장 출판과 저작권	105
제 1 절 출판과 저작재산권의 적용	105
I. 출판권 개관	105
II. 출판계약의 구분과 적용	110
제 2 절 저작물의 이용과 보상	115
I. 저작물이용의 보상금 문제	115
II. 저작권 사용료 징수체계	115
III.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문제	119
제 3 절 전자책의 저작권	124
I. 전자책 저작권의 법적 보호	124
II. 전자책의 기술적 보호	128
제 4 절 저작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제도	132
I. 출판과 저작권 침해	132
II.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제도	136
III.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139
제 5 절 출판관련 저작권 보호방안	144
I. 출판계약의 공정화	144
II. 이용보상의 합리화	148
III. 전자책의 저작권 보호	154
IV. 손해배상제도의 개선	159

제 5 장 결 론 165

참 고 문 헌 169

【부 록】

◆ 출판권법(독일) 179

◆ 문자·활자 진흥법 (일본) 19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출판산업은 매체산업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지식산업, 문화산업이라 할 것이며, 출판산업은 문화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창의력을 생산해내는 원재료라는 면에서 기간산업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출판(出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회학이나 출판학적으로 살펴보면, “도서발행인 또는 출판사가 자신 또는 저작자의 저작물인 원고 또는 원화를 입수·정리·제작한 도서를 판매기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독자에게 제공해 그들의 정신적 욕구나 흥미를 만족시켜주고 그 대가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 및 문화적 커뮤니케이션 행위”라고 정의하고 출판매체를 도서와 잡지로 구분(신문발행 제외)하여 발행하는 것을 출판이라고 하고 있다.

법학에서는 출판의 개념에 대하여 좀 더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우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에서는 “저작물 등을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편집, 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에 한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헌법에서는 출판이라는 말을 주로 언론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하고 표현의 자유를 나타내는데 사용하고 있다.

즉, 헌법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¹⁾

1) 이 외에도 형법에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면서 출판을 “신문, 잡

이러한 출판의 개념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인쇄매체에 의한 간행’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수요계층의 문화패턴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출판’개념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통적 출판 및 CD 등을 이용한 기존의 전자출판 산업이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콘텐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융합을 통해 생성된 뉴미디어로 출판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책은 기존의 종이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유통되던 텍스트 기반의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키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이다. 전자책은 브로드밴드 기반하의 콘텐츠-독자, 디바이스-독자, 독자-독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전통적 출판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뉴미디어 채널로서의 지식·정보·문화 전달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유비쿼터스(Ubiquitous)²⁾ 환경의 도래 및 와이브로(WiBro : Wireless Broadband)의 발전과 함께 전자책이 더욱 입체적이고, 이동성을 가지는 u-book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자책을 비롯한 출판이 지식정보시대의 유력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판산업은 극심한 침체와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 환경의 조성이나 발전기반의 구축을 위해 법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인 시점이다.

출판 및 인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2002년 제정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은 규제위주의 입법형식을 탈피하여 진흥법 체제로 전환하였

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이라고 표현하여 출판의 범위를 매우 넓게 확장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에서는 출판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 규정은 없으나 제57조에서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로써 출판권을 규정하고 있다.

2) 지능화된 소형단말기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접속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여 간단, 편리, 안전하게 이용 혹은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최적 IT환경을 말한다.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시행 후 약 5년이 경과하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지적되어 2007년 6월 20일 대폭 개정되었다.

저작권법에서도 새로운 매체환경을 고려하여 2000년, 2006년에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으나, 전통적인 매체로서의 출판으로 아날로그 매체로만 한정함으로써 출판매체의 디지털화 양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출판권 관련 조항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존의 출판권과 신생권리인 전송권, 복제권, 2006년 신설된 공중송신권 등에 관련된 조항 사이에 혼란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저작물 이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재산권의 전부 또는 복제권 및 배포권을 양도받지 않은 이상 채권적 효력을 가진 이용허락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에서 출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출판권 설정계약 등 준 물권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권리관계의 정리 및 보호강화의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내용의 규제 면에서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 및 심의절차 등에 대하여 외국의 심의관련 규정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해한 전자출판물 등에 대한 심의규정의 보완책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출판 및 인쇄 시장의 건전화와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체계화 및 간행물 심의규정과 청소년 보호법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저작권적인 측면에서도 출판 및 인쇄사업과 관련하여 출판계약과 출판권, 복제권, 배포권 등의 개념을 정비하여 출판업자와 저작권자의 올바른 권리관계 설정 및 공정한 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책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확장되고 있는 출판의 개념과 출판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저작권법 등 관련 법제도가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정비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비롯한 출판관련 법제를 체계화하고 저작권법의 출판권 규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출판·인쇄산업의 발전과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출판산업의 현황 조사 및 출판미디어의 전자화, 출판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의 융합 실태를 조사하여 기초적인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현행법의 분석 및 개선방안 부분은 헌법상의 출판 개념과 형법상의 출판 및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은 제외하고, 출판의 산업발전의 측면을 중심으로 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집중하여 전개하도록 한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2007. 6. 20. 개정으로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법명이 변경된 것이며, 인쇄사의 신고, 인쇄문화단지 조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2007. 7. 19일 별도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출판·인쇄 관련 법제”는 ‘출판’ 및 ‘인쇄에 있어서의 간행물’³⁾ 즉 인쇄방법에 의한 간행물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한 인쇄업 자체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다루지 아니한다.

3)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5호의 “간행물”에 대한 정의를 보면 “간행물이라 함은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외국의 출판·인쇄 관련 법제, 특히 출판에 관한 체계적인 법률관계를 정립하고 있는 독일의 출판관련 법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한다.

e-book⁴⁾에 대한 학술적 개념이 명확화되어 있지 않고, 한정시키기도 어려운 만큼 온라인출판과 e-book을 전자출판과 전자책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 한국전자출판협회(kepa)에 따르면 전자책은 “도서로 간행되거나 도서로 간행될 수 있는 저작물의 내용을 디지털 데이터로 CD-ROM, DVD 등의 전자책 기록매체 또는 저장장치에 수록하고,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경유하여 컴퓨터 또는 휴대용 단말기 등을 이용해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제 2 장 출판산업의 구조와 법제개관

제 1 절 출판산업의 현황

I. 출판산업의 구조와 현황

1. 출판사의 설립과 도서유통현황

(1) 출판사의 설립현황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 후 출판사 설립 등록제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출판의 자유 확대와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개혁으로 출판사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사)출판유통진흥원 거래처 정보와 출판 통계서비스⁵⁾에 따르면, 약 16,555개의 출판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2006년 총 1,782개의 출판사가 신규 등록되어 하루 평균 4.88개의 신규출판사가 생겨났으나, 지난 2006년 1년간 총 34,209종의 신규출판물이 등록되었으며, 1종이라도 발행한 출판사는 2,134개 출판사에 불과하고, 이중 50종 이상 출간한 출판사는 90개 사였다.

또한, 매출 비중 또한 500억 이상 매출 출판사가 등장하였지만, 중소형 출판사의 매출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며, 출판물의 신간 발행종수도 수년간 특별한 증감이 없는 상태이다.⁶⁾

5) (사)출판유통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출판유통현대화시스템(www.booktrade.or.kr)의 통계서비스는 출판관련 거래처정보(출판사, 유통사, 서점, 도서관)와 주요 메이저 유통사를 통해 유통되는 도서를 중심으로 출판사별, 기간별, 분야별, 가격별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booktrade.or.kr/publication/statistics_by_publisher.jsp

6) 김종수, “출판유통구조의 현대화와 문제점”, 『지식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12쪽.

(2) 도서유통현황

도서유통회사는 도매상, 도서물류회사, 총판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유통 경로를 보면 출판사-도매상-서점을 거치는 경우는 약 31.9%에 이르며, 서점이 출판사로부터 직접 책을 받거나, 도서물류회사를 통하는 경우는 약 49.5%에 이른다.⁷⁾ 학습참고서의 경우는 대부분 지역총판을 통해 유통되며 최근 학습참고서의 학원 직납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점은 한국서점조합편람에 의하면 2006년 전체 서점 수는 3,576여개로 동네 소형 서점은 거의 사라지고, 대형서점의 체인화가 가속되어 가고 있다. 문방구 겸업 등의 서점을 제외하여 20평 이상의 서점 수는 약 1,682개로 최근 10년간 반수로 줄어들었다.⁸⁾

또한, OECD 회원국내 도서정가제 시행국 14개국 중 인구 10만명당 서점 수 평균 9.54개에 비해 한국은 4.9개⁹⁾로 약 50%정도 이다. 이는 인터넷 서점의 성장¹⁰⁾, 대형 할인점 및 도서대여점의 증가, 학습참고서 직납과 도서정가제의 과행, 인터넷 및 영상매체 등 타 미디어 매체에 의한 독서율 하락, 서점의 대응력 부재 등에 기인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7) (사)출판유통진흥원, 『한국의 출판유통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2003, 7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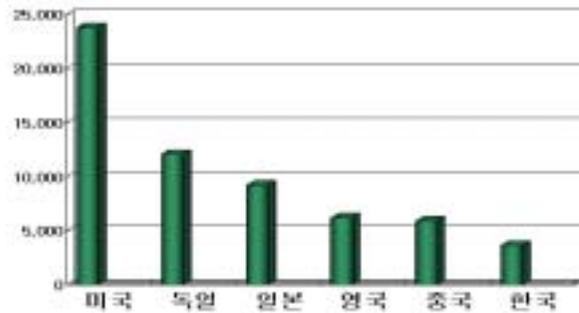
8) 윤청광, “고사 위기의 서점,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제35회 출판포럼(2004.6.28)을 개최해, “서점의 위기는 결코 서점업자들의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 결국은 출판의 위기요, 학문과 교육의 위기요, 문화 예술의 위기이다.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위기이다.”라고 주장했다.

9) 부길만 외, 『OECD 회원국의 도서가격제도 현황』,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2005, 7쪽.

10) (재)한국출판연구소, 도서정가제 평가 및 향후 방향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2005, pp5.에 따르면 도서시장에서의 인터넷 서점 매출 성장세는 2005년 시장규모가 5천억원에 이를 만큼 급성장해, 출판시장의 점유율은 2004년 15.9%에 이어 2005년에 21%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 했다.

<표-1> 주요국의 도서출판 시장규모

(단위 : 100만 달러)



자료 : 한국출판연구소, 『출판지식산업관련 통계조사분석』, 2006.

(3) 도서관 현황

도서관의 경우 2006년 한국도서관연감에 따르면, 전체 11,839개관 중 공공도서관은 514개에 불과하여¹¹⁾,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출판물의 안정된 수요 확보처라고 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통해, 양서 구입의 확대를 통한 시장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표-2> OECD회원국(10개국) 공공도서관 현황

국 가	연도	인구수 (A)	도서관수 (B)	장서수 (C)	1인당 장서수 (C/A)	1관당 인구수 (A/B)
미 국	2003	281,421,906	9,133	767,454,000	2.73	30,814
영 국	2003	58,789,194	4,614	116,000,000	1.97	12,741
프랑스	2001	59,463,538	3,989	152,159,231	2.6	14,907
캐나다	2001	31,374,667	921	75,032,608	2.4	34,066

11) 구체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1개, 공공도서관 514개, 대학도서관 438개, 학교도서관 10,297개, 전문특수도서관 589개로 집계 되었다(2005년12월31일 현재).

국 가	연도	인구수 (A)	도서관수 (B)	장서수 (C)	1인당 장서수 (C/A)	1관당 인구수 (A/B)
스페인	2001	39,542,333	4,829	42,817,561	1.1	8,189
핀란드	2001	5,158,440	436	37,073,549	7.2	11,831
덴마크	2001	5,367,226	244	27,081,405	5.0	21,997
독 일	2001	82,213,913	9,062	104,358,906	1.3	9,072
일 본	2003	127,800,000	2,759	321,811,000	2.53	48,427
터 키	2001	67,090,173	1,434	12,476,310	0.2	46,785
한 국	2004	48,583,805	487	40,077,545	0.82	99.761

자료 : 도서관정책과 ‘공공도서관 현황’, 도서관정책과, 2005. 6. 24.
 보도자료

II. 출판산업의 전자화 현황

디지털미디어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창의력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으며, 시대의 패러다임도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를 거쳐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²⁾

지식기반사회의 출판은 지식콘텐츠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식과 콘텐츠를 창출하는 기간 문화산업이라 할 수 있다.

출판산업의 전자화를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현황을 보면, 우선 문화관광부의 출판유통 현대화 사업은 출판사, 도매상, 서점 간의 도서거래에 대한 도서정보 교환, 수발주 등의 B2B 업무를 정보화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 12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다. 출판유통 현대화사업의 향후 과제는 출판사, 서점 등이 정보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출판 유통의 정보화를 달성하는 일이다. 출판사 및 서점이 중앙 시스템에 연결하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여 출판유통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

12) 문화관광부,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 2007. 4., 1쪽.

여야 시스템의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다.¹³⁾

출판유통진흥원에서는 출판·서점·유통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동 출판유통 시스템의 기능과 활용 방법 등의 이점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출판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문화관광부는 2001년부터 전자책 시장의 기반구축과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적 정비와 지원을 지속해왔다.

전자출판을 둘러싼 시장상황을 보면, 온라인서점은 인터넷 구매의 대중화와 높은 할인율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¹⁴⁾ 대형 서점들도 전국 체인점을 확대하는 등 점유율 증가를 나타내는 반면, 중소형 오프라인 서점들은 경쟁력 약화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전·폐업도 늘고 있다.

<표-3> 인터넷서점 매출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거래액	구 성	거래액	구 성	거래액	구 성	거래액	구 성	거래액	구 성	
서적거래	183,404	100	295,599	100	344,352	100	374,319	100	495,666	100	
운영 형태별	온라인	94,757	51.7	173,573	58.7	177,264	51.5	253,740	67.8	357,082	72.0
	오프 라인	88,647	48.3	122,026	41.3	167,088	48.5	120,579	32.2	138,584	28.0
취급 상품 범위별	종합물	37,407	20.4	46,064	15.6	78,011	22.7	122,046	32.6	145,176	29.3
	전문물	145,996	79.6	249,535	84.4	266,341	77.3	252,273	67.4	350,490	70.7

자료 : 통계청, 전자상거래 통계조사; 문화관광부, 『문화산업백서』, 2006, 447쪽.

13) 문화관광부, 『문화산업백서』, 2005.

14) 미국의 경우 전문서적시장은 2004년 e-book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전체시장의 5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ebrary, Books24×7, knovel, Safari Books Onlines 등과 같은 e-book 기업들이 비즈니스, IT, 메디컬 등의 전문서적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 2005~2009, 2005.

제 2 절 출판산업 관련 입법체계

I. 진흥관련 입법

1. 출판문화산업진흥법

(1) 제정배경

출판은 저작자와 독자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통해 지식의 보급, 사상의 전파, 문화유산의 전수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출판은 과거에 주로 통제의 대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진흥의 대상으로 변화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정치적 이유로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경우가 많았고, 출판에 대해 강력한 규제정책을 펼쳐왔다.¹⁵⁾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는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진흥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문화산업 발전의 핵심기반인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식산업으로 중점 육성하도록 하는 진흥법적 체계로 전환하는 입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기존의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 관한법률』과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로는 출판의 자유를 신장하고, 출판·문화인쇄산업을 종합적으로 진흥시키는 데 미흡하기 때문에 이 두 종류의 법률을 통합해 미래 지향적이고 종합적인 법체계를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왔고,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은 2002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02년 8월 26일 공포되어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¹⁶⁾

15) 예를 들면, 1961년에 제정된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 관한법률』과 1973년에 제정된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16) 이 법의 제정과 함께 기존의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 관한법률』과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은 폐지되었다.

그 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간행물에 대해서 유해성 심의를 한 결과 유해간행물로 결정하면 관계기관에 대한 통보 및 관보 고시의 절차를 도입하여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 1월 27일 제19조의2가 신설되었고, 그 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2006년 4월 28일 제3조의 일부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도서정가제와 관련한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07년 6월 20일 도서정가제 개정을 중심으로 하여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 개정으로 법령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변경되었다.

(2) 주요내용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문화관광부장관이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진흥시책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¹⁷⁾ 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 출판계 및 학계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8대 정책¹⁸⁾과제 및 36개 세부사업계획을 담은 ‘출판인쇄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약 6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26개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¹⁹⁾

본 법은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의 진흥과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신고,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간행물의 유통, 벌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²⁰⁾

17) “매 3년마다”에서 “매 5년마다”로 개정되었다.

18) 출판인쇄산업발전 8대 정책과제에는 (i) 출판산업 인프라 구축, (ii) 출판유통 현대화 기반조성, (iii) 양서출판 기반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 (iv) 출판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v) 세계적 전자책 주도국 지위 확보, (vi) 지방출판문화 육성, (vii) 인쇄문화산업 진흥, (viii) 남북 출판교류 활성화 등이 있었다.

19) 문화관광부, 『2005 문화미디어산업백서』, 2006. 7. 30., 64면.

20) 총 7장 28조와 부칙 8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확충과 단지 조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을 출판에 포함하여 전자출판의 육성·지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의 경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특히 출판사는 해당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해 정가대로 판매해야 하며, 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 정가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정가제에 대한 규정을 비롯해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다루고 있다.²¹⁾

①출판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한 양서 출판의 장려 및 지원, ②간행물의 유통질서 정착을 위한 모든 간행물의 국제표준자료번호 표시, ③출판 및 인쇄문화산업의 기반시설 확충과 단지 조성, ④출판사·인쇄사의 경영, ⑤북한에서 출판한 간행물의 수입, ⑥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 ⑦간행물의 유통질서 유지에 관한 심의, ⑧불법 복제 및 유해 간행물의 수거 및 폐기, ⑨과태료 부과 등이다.

2. 도서관법

도서관법은 2006년 10월 4일 제정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이 법의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다.

도서관법이 이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도서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법적 체계화와 제도적 틀의 공고화를 기하기 위한 것과 함께, 법의 명칭상의 불균형 즉, 도서관의 기본활동 가운데 하나인 독서진흥을 명칭에 포함시킨 것이 법체계상 불균형하기 때문이었다.²²⁾

21) 도서정가제와 관련한 세부사항과 개정내용은 후술함.

22) 이러한 이유 이외에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정당시 이 법을 제정하려

따라서 도서관계를 주축으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도서관법’으로 도서관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

도서관법은 도서관의 책임과 역할, 육성과 서비스의 활성화, 평생교육의 증진 등 문화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²³⁾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을 포함한다.

도서관 사업은 업무 성격상 여러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또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 걸쳐 고도의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음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²⁴⁾

그러므로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도서관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한 기구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였고, 이에 도서관법 제12조에서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로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 위원회’라 함)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도서관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원중에서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된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에 의하면 당연직 위원으로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

는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긴장을 국회에서 대화·조정한 끝에 ‘도서관법’과 ‘독서진흥법’을 통합하여 기형적으로 탄생하게 된 입법이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려는 역학관계가 작용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문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전면 개정안 검토보고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2005. 6.

2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나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 여기에는 문고,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등이 포함된다.

24) 현재 국가의 도서관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문화관광부이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도서관, 행정자치부 산하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분야 도서관 및 정보센터, 법무부는 교도소 도서관, 국방부는 병영도서관 설치·운영을 관장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국가학술연구 DB구축을 비롯한 각종 전문도서관, 보건복지부는 각종 장애인 도서관과 병원도서관,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책임기 운동과 청소년독서진흥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수많은 정부부처가 도서관·정보관련 업무에 산발적으로 관여되어 있다. 이용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의미와 방향”, 출판문화, 2007.

관, 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되어 있다.

도서관위원회는 국가차원의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구로서 도서관 종합 발전계획의 수립, 도서관 관련제도,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 도서관 운영평가, 도서관 및 자료의 접근과 이용 격차의 해소,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정책적 사안을 다루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하여야 하며(법 제14조), 시행령 상의 도서관 시설 및 자료, 사서직원 배치기준의 현실화, 사서자격제도의 개선 등 많은 정책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와 유사한 조직으로 미국의 ‘국가문헌정보학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 약칭 NCLIS)’와 영국의 ‘박물관·기록보존소·도서관위원회(Council for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 Resources)’를 들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NCLIS가 1970년 대통령 직속의 상설기관으로 설치되어, 매우 광범위한 기능을 법률로부터 위임받고 있는 성공적인 조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전국적인 도서관·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가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도서관·정보서비스에 관련된 정책수행에 관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대한 자문, 도서관·정보 요구와 관련된 서베이와 연구 수행, 도서관·정보정책과 관련하여 연방정부, 주·지역정부 및 사설기관에 대한 자문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정책 수행에 관해 대통령과 의회, 도서관 행정 관련부처에 대한 자문과 성과를 포함하여, 국가차원의 도서관 요구를 조사·분석하여 결과물을 보고서로 발간하고, 매년 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는 등 국가 도서관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15인), 전체 위원 중 1/3정도는 전문직 사서 또는 정보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회의와 함께 소위원회와 연구팀 등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장이 사무기구의 직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3. 독서문화진흥법

이 법은 2006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28일 공포되었으며, 10월 4일 도서관법과 함께 시행되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시행하도록 하였고(제5조 제1항), 문화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였다(제6조 제1항). 독서문화 진흥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독서진흥위원회를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두도록 하였으며(제7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학교·직장에서의 독서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제8조 내지 11조).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지정, 독서관련 행사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제12조), 매년 독서 진흥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제15조).

이 법은 특히 도서관을 비롯한 독서시설 개선과 독서자료 확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 등을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출판산업 진흥과의 연계성을 도모하고,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을 포함시키는 등 출판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입법이라 할 수 있다.

4.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 법의 주된 의미는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근거 마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1999년 2월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 따라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기금사업은 융자사업과 투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간의 융자사업위주의 운용에서 2000년부터 투자사업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기금의 지원으로 문화산업의 개발지원, 유통구조의 현대화, 제작비 융자, 기타사업 등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금의 운용상의 적정화 및 투명화가 요구되며, 기금의 운용에 따른 문화산업발전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평가제도의 현실화방안이 필요하고, 공적자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문화산업의 발전이라는 공공적인 성격에 맞게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제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이 모태펀드 방식으로 기금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 예상은 부족한 상황이다.²⁵⁾

25) 문화산업 전 분야의 기획 및 창작력 강화, 유통구조 개선, 제작 인프라 현대화 등을 위해 1999년부터 운영된 문화산업진흥기금이 2006년 말로 폐지되고 모태펀드 방식이 도입되었다. 정부는 2006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개정하면서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폐지하고 2007년부터 중소기업 모태조합 내에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모태펀드를 별도로 운영하도록 개정하였다.

모태펀드(Fund of Funds) : ‘펀드를 위한 펀드’를 말하는 것으로 민간벤처캐피탈 시장에서 조성하는 다양한 하위 자(子)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조성된 상위개념의 펀드를 의미한다. 직접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되는 펀드가 아니고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기 위해 조성하는 하위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간접 투자방식을 말한다. 그동안 민간하위 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투사에 대한 모태적 펀드 기능을 수행해왔으나 2005년부터는 하나의 조합개

이 법의 제2조에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이 포함되고 있다.

또한, 문화콘텐츠의 개념에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라 규정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콘텐츠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한다고 하였다.

이 법에서 ‘유통’의 정의를 볼 수 있는데, “문화상품이 제작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말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것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내용을 법에 규정하고 있으며(제12조), 문화산업의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그 업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고 및 문화산업진흥기금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7조). 따라서 현재 출판산업과 관련하여서도 이 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 제작, 유통, 수출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념으로 별도 재원을 결성하여 운영하기 위해 모태펀드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모태펀드 운영을 위해 최근 정부는 금년부터 별도 전담기관을 지정설치하여 운영하는데, 동 기관은 정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100% 출자 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흔히 모태펀드를 FOF라 약칭함 그리고 ‘모태조합’이라는 용어는 ‘모태펀드’의 외형적 형태를 의미하며 일종의 법률적 양태를 말하기 때문에 통상 구분하지 않고 호칭하므로 동일하게 볼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모태펀드의 출자대상은 중소기업 사모펀드(PEF), 창업투자조합, CRC조합 등이다.

- 모태펀드를 통해 우수 업체 및 콘텐츠에 대한 투자지원은 효율적으로 지속할 수 있지만 융자지원사업은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사업기회도 사라질 전망이다.
- 그러나 모태펀드를 통하여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투자갈증을 해소해 줄 기금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했다.

II. 저작권법

1. 저작권법 시행경과

저작권법은 제정된지 20년 만인 2006년 12월 28일에 전면 개정되었으며, 2007년 6월 29일 시행되었다.²⁶⁾²⁷⁾

디지털 기술 및 저작물의 이용환경 변화로 공중송신 등의 개념을 신설하고 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를 국제규범에 맞게 보호할 필요가 생겼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정한 침해 방지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문화발전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었으며, 또한 1986년 전문개정 이후 20년 동안 7차례의 잦은 개정으로 인하여 흐트러진 법체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생겼다.

이와 함께, 법정허락을 통하여 사용을 허락받은 저작물의 경우, 후발 신청자는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 등을 생략하게 하고, 저작물 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저작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저작권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2. 개정 저작권법의 출판 및 어문저작물 관련 주요내용

첫째, 학교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전제로 교사 및 학생들이 저작물의 일부분을 전송할 수 있도록

26) 법률 개정의 경과를 보면, 2004년 9월 4일 정성호의원, 2004년 12월 27일 윤원호의원, 2005년 10월 31일 이상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6월 13일 이광철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관광위원회(2004. 11. 25), 제252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2. 18) 및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3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11. 17)에 각각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국회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index.jsp>>.

27)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9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12. 6)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상기 4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06년 12월 1일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175514호.

하되, 그러한 전송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수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다(제25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10항).

둘째, 교과용 도서보상금의 지급 단체 지정 및 취소요건을 신설하고 3년 경과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1조 제6항).

셋째,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 및 저작물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승인 내용을 변경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105조 제6항 및 제8항).

넷째, 저작권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저작권위원회에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도록 하였다(제114조).

다섯째,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34조).

여섯째,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 등을 친고죄에서 제외하여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제140조).

일곱째, 온라인상 저작물 송신에 대한 전송권과 관련하여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제공하는 전송의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여, 출판사가 e-book 등 전자책을 제작하거나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²⁸⁾

여덟째, 사적복제의 범위에 있어서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를 사적복제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출판물에 대한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2003년 개정에서는 도서관 등이 도서 등

28) 저작권법 제2조 9의 2 내지 제18조의 2 참조.

을 도서관간에 열람 목적으로 전송하거나 디지털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도록 하고, 당해 도서관 관내에서의 열람을 위한 복제·전송의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도서 등의 부수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여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제28조).²⁹⁾

또한 전자 도서관을 통한 정보이용을 허용하고 있는데(제28조),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전송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경우 도서관 등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전자 도서관을 통한 일정한 범위의 공정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이지만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도서관 외 전송이나 도서관 내 컴퓨터 등을 이용한 출력 또는 다운로드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³⁰⁾ 그러한 불법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장치의 설치, 암호화조치, 다운로드 방지장치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³¹⁾를 취하도록 요구하였다.³²⁾

아홉째, 저작권 등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저작권을 저작권위원회의 (위임) 저작권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저작권 관련 사항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과실이 추정되도록 하였다.

29) 이를 계기로 저작물의 복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이 중심이 되어 2000년 7월에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설립하였다.

30) 시행령 제3조에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고정하는 방법을 통한 복제, 즉 디지털 복제는 국립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산업기술정보원 및 연구개발정보센터의 도서관에 한하여 전송하도록 그 범위를 다소 축소하였다.

31)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복제·전송에 따른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 출판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서관 등에서 기술적 조치로 복제 방지 장치의 설치, 암호화조치, 이용 및 내용변경 확인 조치, 판매용 전자기록매체의 이용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저작권, 출판권 등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경고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32) 성선재, “온라인 뉴스와 저작권 - 상생의 길”, 계간 저작권, 2006 여름호, 39쪽.

특히 출판권이 등록되면 제3자에 대한 대항 효력이 있고 제3자의 출판행위를 직접 금지시킬 수도 있다.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 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저작권·출판권을 등록하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다.

Ⅲ. 간행물심의규정

간행물 심의와 관련해서는 크게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한 내용심의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성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표시·광고의 부당·허위성 심의를 받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 내지 21조에는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 같은 간행물과 일반일간신문을 포함한 정기간행물, 전자출판물 등 제반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및 광고심의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간행물 심의를 실질적인 기준인 심의규정은 심의기준, 심의절차 등 심의업무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월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간행물의 표시·광고에 관하여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범위에 포함되는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부당 표시·광고로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임시 중지 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부당·허위성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는 광고를 게재한 간행물의 발행인과 광고주에게 광고수정을 포함한 주의, 경고 등으로 심의 결정하

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이외에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을 통하여 매체³³⁾에 대한 다른 심의기구들을 비롯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콘텐츠나 이들 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콘텐츠의 등급부여와 기타 유해매체물, 음반 및 음악파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각 매체물의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2항),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시에 이용 청소년의 연령, 당해 매체물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등급구분을 하도록 요청할

33) 제 7 조 (매체물의 범위)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2.5, 2001.5.24, 2004.1.29, 2005.3.24, 2006.4.28>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
2. 삭제 <2001.5.24>
3. 『공연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4.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5.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다만, 보도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
6.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을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분야를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잡지(정치·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중 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8.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

수 있다(제9조 제2항).

제 3 절 주요국의 입법례

I. 미 국

1. 저작권법

미국 저작권법은 출판권이나 출판권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어문저작물에 대한 규정으로써 전반적인 출판관련 저작권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에서 ‘어문저작물’이란 시청각저작물 이외에, 그 저작물을 수록하고 있는 서적, 정기간행물, 원고, 음반, 필름, 테이프, 디스크, 또는 카드와 같이 대상물의 본성과 무관하게 문자, 숫자, 또는 기타 문자적 또는 숫자적 기호나 부호로 표현된 저작물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저작물의 보호대상에는 어문저작물이 포함되며(제102조), 어문저작물의 편집물과 2차적 저작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다(제103조).

어문저작물 등의 ‘발행’이란 매매, 기타 소유권의 이전 또는 대여, 리스나 대출에 의하여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공중에 배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복제물이나 음반을 추가 배포, 공연, 또는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일단의 공중에 배포하도록 제공하는 것은 발행이 되며, 저작물의 공연이나 공개전시는 그 자체로는 발행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제101조).

2. 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f 1998(DMCA)은 디지털환경에 의하여 야기되는 저작권법상의 쟁점을 처음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DMCA는 5편 22개의 주요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⁴⁾

Title I 은 WIPO 저작권협약(WIPO Copyright Treaty)과 실연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 Treaty)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³⁵⁾ Title II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책임제한에 관한 것이고, Title III는 MAI Systems Corp. v. Peak Computer, Inc. 케이스에 대한 반응으로서 컴퓨터의 수리와 관련하여 저작권의 침해를 면제하는 입법이며,³⁶⁾ Title IV는 잡칙(miscellaneous)으로서 6개의 조문으로 특허·저작권청 업무 개선 및 원격교육에 관한 것 등 저작권법을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여러 규정 및 도서관을 위한 일시적인 녹음 등에 관한 것이다, Title V는 일명 ‘선박디자인보호법’이라 불리는 것으로 특정한 원본 디자인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2000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다만,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었으면서도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규정이 관련업계의 반발로 인해 최종 입법과정에서 삭제됐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34) 미국의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인 CORDS는 1993년 2월 저작권청이 미국 의회도서관 및 국가검색진흥협회와 공동으로 개발에 착수하여 1996년부터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에서 디지털 형태로 전송되는 저작권 신청, 저작물, 저작권 관련 문서의 저작권 등록 및 저장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35) 제1편은 WIPO 디지털 의제를 처음으로 국내 입법한 사례로 꼽힌다. 또한 기술조치의 무력화와 저작권관리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미국 저작권법 제17편에 이러한 두 가지 새로운 금지 의무를 부과하였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에 있어 제한되는 책임유형으로는 순간적인 디지털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 캐쉬, 이용자의 지시에 의한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상에 저장된 정보, 정보 소통을 위한 도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36) 제3편은 컴퓨터유지경쟁보장법으로서 컴퓨터의 유지 및 보수와 관련한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컴퓨터 보수 및 유지 업무자가 컴퓨터 수선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결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컴퓨터 수선업자의 RAM에의 일시적 저장은 복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II. 독 일

저작자 계약은 모든 계약들 가운데 가장 구조적 문제가 심각한 분야이다. 서구의 대부분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이용계약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강제규정인 계약규제조항들을 저작권법에 두고 있다.

그 계약규제조항은 모든 저작물 이용계약관계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되고 강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모든 저작물 이용계약은 이 강제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1901년 6월 19일에 제정된 독일의 ‘출판권법(Gesetz über das Verlagsrecht)’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그 임의규정과 다르게 합의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 합의는 저작권법 제32조 이하에서 규정한 강제규정에 어긋나서는 안 되며, 그에 위반된 규정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³⁷⁾

유럽각국의 각종의 저작물이용계약관련 법률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계약에 관한 규정 외에도 불공정한 계약의 내용을 규제하는 저작권법상의 계약규제조항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독일의 출판권법은 출판계약관계를 규제하는 저작권법상의 계약규제조항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³⁸⁾

반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이용관련 계약관계 일체를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맡기고 아직 계약내용규제에 관한 강제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출판권법으로는 2006년 12월 28일의 개정저작권법 제2장 제7절의 최소한의 규정(제57조~제63조)밖에 없다.

37) 독일뿐만 아니라 대체로 서구 각국의 저작권법은 강제규정인 계약규제조항(독일 저작권법 제32조, 제32조a, 프랑스 저작권법 제131조의 1~제131조의 8까지, 스페인 저작권법 제107조~제114조 등)과 임의규정 2개의 체제로 되어 있다.

38) 서달주, “독일의 출판관련 법제 현황과 시사점”, 『지식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68쪽.

1. 출판권법

(1) 개 요

독일의 출판권법(Gesetz über das Verlagsrecht)은 1901년 6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2002년 3월 22일에 일부개정되었다.

독일의 출판권법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그 임의규정과 다르게 합의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 합의는 저작권법 제32조 이하의 강제규정에 어긋나서는 안 되며, 그에 위반된 규정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표-4> 출판관련 독일 법제의 비교

구 분	성 질	비 고
출판권법	임의규정	1901. 6. 19일에 제정한 (50개조)
계약규제조항 (저작권법상)	강행규정	저작권법 제11조, 제29조, 제32조~36조a 등

2. 저작권법

(1) 법적성질

저작권법(계약규제조항)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당사자들을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사항을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각 계약규제법과 다르게 합의된 사항은 효력이 없다³⁹⁾.

39)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2 독일개정저작권법과 저작자의 지위강화”, 저작권연구 자료 44. 2003. 참조.

저작물은 그것을 이용하여 얻는 장래수익을 예측하기 어렵다. 베스트셀러와 같이 계약체결시의 예상과 실제수익 사이에 현저한 격차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역학적 불균형에 의한 불공정 계약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상당하지 못하는 때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것을 이용자측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자에게 인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32a조 1항).

(2) 추가보상청구권⁴⁰⁾ 사전적 양도 · 포기금지

출판자가 저작자에게 인세를 지급하듯이 저작자는 저작물의 이용방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익마다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정액제에 의한 보상금 합의를 금지하는 이유는 저작자에게 상당보상금을 보장하려는데 있다.

저작권 양도를 금지하더라도 저작자가 추가보상금 청구권을 양도 또는 포기해버린 후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이 점을 배려하여 보상금청구권에 대해서는 사전적 포기, 강제집행, 기대권 처분 등을 금지하고 있다(저작권법 제32a조 3항).

(3) 공통보상금규정

공통보상금규정은 저작자 단체와 이용자 단체 또는 저작자 단체와 개개의 이용자가 서로 협상하여 정한 최저한의 계약조건으로서 개별적 계약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적용된다. 개별적 계약 가운데 공통보상금 규정과 다른 부분은 효력이 없다. 당사자 간에 협상이 불성립된

40) ‘추가보상청구권’은 ‘추급권’과는 상이한 개념이다. 추가보상청구권이라 함은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여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일정비율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추급권은 미술저작물의 원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처분한 후에도 매수인이 그 저작물의 소유권을 재차 처분하여 웃돈을 받은 경우에는 처음의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독일 5%, 프랑스 3%)의 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을 말한다.

경우에 법무부 산하의 조정소에서 공통보상금규정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저작권법 제36조).

Ⅲ. 일 본

1. 문자·활자진흥법

(1) 입법배경

일본은 2003년 말 국회의원의 모임인 ‘활자문화의원연맹’을 만들어 2년 이상 법 제정을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하였으며, 2005년 7월 15일 제162회 의회에서 『문자·활자문화진흥법안』(중의원법 제24호)이 중의원 문부과학위원장의 제안으로 중의원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고, 참의원으로 송부되어 7월 21일에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7월 22일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성립되었다. 이 법은 2005년 7월 29일 법률 제91호로 공포, 시행되었다.

(2) 입법목적

이 법에서는 문자·활자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자·활자문화 진흥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적이고 풍요로운 국민생활 및 활력 있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주요내용

이 법은 문자·활자문화의 진흥에 대한 정책적인 면을 중심으로 하는 간단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도서관,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연대강화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7조에서는 지역에서도서관 봉사에 대한 주민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적체제의 정비, 시스템의 정비, 정보네트워크의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 학교교육에서 언어력 함양이 충분히 도모되도록 효과적인 교육을 할 것을 도모하고 교육직원의 양성 및 연수내용의 충실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문자·활자문화의 국제교류(제9조), 학술적 출판물의 보급(제10조), 문자·활자의 날 지정(제11조) 등을 규정하여 다양한 방면에서의 진흥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재정적인 면에서도 이 법에 의한 시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다(제12조).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에서는 문자·활자 문화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다.

문자·활자진흥법의 시행에 앞서 4월 11일에 있었던 문자·활자문화진흥법 심포지움에서는 초당파적인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활자문화의원연맹은 “문자·활자문화진흥법에 기본이 되는 정치·행정·시민은 연대하여 다음의 시책을 추진한다”고 하는 ‘시행에 따른 시책의 전개’를 공표하였다.

<표-5> 진흥시책과 주요내용

지역에서의 문자·활자문화의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스타트 운동의 보급, 이동도서관의 보급·확충 - 책을 읽는 것을 지원하는 독서 어드바이저의 육성 - 작문 어드바이저의 네트워크화에 따른 작문활동의 장려 - 그림책 마을(거리)만들기 활동의 지원 - 소규모서점의 개성화·북-페어, 교육기관의 도서관의 지역개방 등의 지원 - 미설치시정촌에 있어서 공공도서관의 계획적인 설치 - 공립도서관설치기준의 개혁 - 공립도서관도서관의 학술·연구 등 전문서의 정비·충실 - 공립도서관에의 전문적인 직원·독서 어드바이저의 배치의 추진

학교교육에 관한 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지도의 충실, 독서 시간의 확보를 위한 ‘언어력’ 교육지원 - 교원양성과정에 ‘(가칭)도서관료’ 또는 ‘(가칭)독서료’ 등의 도입을 위한 교원 자질향상 - 학교도서관서 표준의 달성, 학교 도서관 도서정비비의 교부세 조치의 충실·예산화, 신문을 사용한 교육활동의 충실 - 소규모 학교(12학급 미만)에 사서정교사의 배치, 학교도서관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배치의 추진 - 사서정교사의 담당수업의 경감·전임화 등의 추진 - 고교 도서관의 충실, 맹·노인·양호학교의 독서환경의 정비 - 독서활동의 기반이 되는 국어교육의 충실·보다 풍부한 일본어의 교육지원 -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위한 학교 간·공립도서관간의 제휴 추진 - IT화의 추진을 위한 학교도서관·공립도서관간의 외국인들 도서관등의 네트워크화 추진
출판활동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활자를 비롯한 저작물 재판매제도의 유지 - 학술적 가치가 있는 저작물의 진흥·보급 - 저작자 및 출판자의 권리보호의 충실 - 번역기회가 적은 국가의 저작물 번역 - 일본어 저작물의 번역 진흥 지원 및 번역자의 양성 - 세계 각국에 개최되는 북-페어 등 국제문화교류의 지원

2. 저작권법

저작권법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장을 정하여 출판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범위에는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물의 발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따라 공중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당 부수의 복제물이 복제권을 가지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얻은 자 혹은 제79조의 출판권 설정을 받은 자에 의하여 작성

되고 반포된 경우에 발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제80조 제1항은 “출판권자는 설정행위에 정한 바에 의하여 반포의 목적으로,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인쇄 또는 타의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문서 또는 도화로서 복제할 권리를 전유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저작권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도 구 저작권법에서는 우리나라 저작권 제54조와 같은 출판권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개정된 것은 일본의 구 저작권법의 해석상 출판권의 모권이 되는 복제권에 발행, 배포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⁴¹⁾

3.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2004년 6월 4일 법률 제81호로 제정되었으며, 지적재산기 본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콘텐츠제작 등을 하는 자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및 콘텐츠 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⁴²⁾

이 법률에서의 콘텐츠에는 영화, 음악, 연극, 문예,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 컴퓨터게임 기타 문자, 도형, 색채, 음성, 동작 또는 영상이나 이들을 조합한 것, 또는 이들에 관련된 정보를 전자계산기를 매개로 하여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따라 산출되는 것 중 교양 또는 오락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제2조) 정의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도서의 출판 및 전자출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1) 加戸守行, 『著作権法逐條講義』, 著作権情報センター, 2000, 421面.

42) 콘텐츠의 창조, 보호 등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コンテンツの創造, 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제3조의 기본이념 제3항에서 이 법에 관한 시책의 추진은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 사회형성기본법(2000년 법률 제144호) 및 문화예술진흥기본법(2001년 법률 제148호)의 기본이념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2조에서 원활한 유통의 촉진을 위한 국가의 지원 및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 적절한 보존의 촉진을 위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가 콘텐츠의 디지털화 체제정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특히 제17조에서 콘텐츠제작업자의 경우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제작사업자가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콘텐츠 사업의 원활화를 위한 조치로서 국가가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하였으며(제21조), 제작사업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자의 위탁 또는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콘텐츠 제작의 위탁 또는 도급자와의 공정한 거래관계가 구축되어 제작사업자의 이익이 적정하게 확보되도록 지침의 책정 및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제22조).

제 3 장 출판과 유통

제 1 절 출판산업 관련 기구의 문제

I. 출판산업 진흥주체의 부재

우리나라의 각종 진흥법에서는 대부분 법정 진흥기관을 필수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⁴³⁾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는 진흥기관 규정이 없다. 이는 법 제정 목적을 실제로 담보하고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각종 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 진흥기관들은 각 분야의 정책적 지원 기능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해당 산업에 막대한 진흥 효과를 주고 있다.⁴⁴⁾

43) <표-6> 각종 진흥법에 따른 진흥기관 예시

진흥법명	진흥기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예술진흥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법	영화진흥위원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학술진흥법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과학연구진흥법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발명진흥법	한국발명진흥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디자인진흥법	한국디자인진흥원

44)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2005년에 약600억 원의 예산으로 문화콘텐츠 창작기반 조성,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콘텐츠 산업 육성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전체 예산 중 국고 지원액이 553억 원으로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 예산 및 조직적 지원에 힘입어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이 전략적 문화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 등은 문화 관련 진흥기관으로서의 위상과 함께 실질적인 진흥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는 제1조에서 “출판에 관한 사항과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4조에서 출판산업의 진행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에서 진흥기관과 관련한 문제는 우선, 전술한 바와 같이 진흥기관은 없으면서 규제기관을 진흥법 소관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⁴⁵⁾

다음으로는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의 적절성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의 진흥기구로 ‘(가칭)출판진흥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는 반드시 예산확보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출판문화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장도 있으나,⁴⁶⁾ 출판진흥위원회와 출판문화기금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문화산업진흥기금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을 문화산업에 포함하고 있으며, 제39조에서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에 대한 규정과 제42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였는데, 기금의 용도에 문화산업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출판문화기금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또한, 기금의 설치를 위해서는 기금의 징수대상의 문제가 있는데 ‘정부의 출연금,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 기금 운영에서 생기는 이익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공익자금, 기타 대통령령 및 국무총리가 정하는 수익금’으로 한정한다면 정부의 예산에

45) 실질적인 진흥기관의 설치·운영은 부재한 대신 규제적 성격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청소년보호법에서 이관해 법정기구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내에 포함시킨 것이다.

46) 서계원, “출판인쇄진흥법의 현황과 문제점”, 『콘텐츠저작물 관련 법제의 동향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2006, 47쪽.

지나치게 의존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방송법상의 방송발전기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로부터의 징수가 필요할 것인데, 현재 출판업계는 출판산업의 전반적인 침체에 따라 기금을 징수할 수 있을 정도의 경영 상태라 할 수 없을 것이다.⁴⁷⁾

II. 출판관련 공익기관의 비효율성

출판관련 공익기관은 소속된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막론하고 설립 목적이나 실제의 사업 운영에서 내부적 이익이 아닌 사회적 공익에 이바지하고, 출판문화 및 출판산업 전반의 공공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영위되는 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정부와의 직·간접적인 지원·협력 관계가 순수 민간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특성이 있으며, 목적사업의 결과가 국익과 출판계 전체에 파급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⁴⁸⁾ 출판산업과 관련한 공익기관에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문화관광부 소관법인),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한국출판연구소, 출판유통진흥원 등이 포함된다.

<표-7> 출판관련 공익기관 현황

기관명 항목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출판 문화진흥재단	한국출판 연구소	출판유통 진흥원
기관성격	법정기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재단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연도	1970	1985	1986	2003

47) 출판지식산업진흥을 위한 총괄 지원기구 설치 검토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를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며, 현행 출판관련 법정기구의 기능 및 조직 확대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화관광부,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 2007, 21쪽.

48) 백원근, “(가칭)한국출판진흥위원회 왜 설립되어야 하는가”, (가칭)한국출판진흥위원회 설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5. 11., 19쪽.

기관명 항목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출판 문화진흥재단	한국출판 연구소	출판유통 진흥원
설립목적	유해간행물심의 청소년보호	출판문화 발전 및 출판산업진흥	출판산업 발전과 출판학 진흥을 위한 연구	출판유통 현대화를 통한 출판산업 발전
주요사업	- 출판물 유해성 심의 - 간행물윤리향상 - 양서 권장 - 청소년독서진흥	- 출판자금 융자 - 출판문화진흥 지원(양서보급, 출판저널 발행, 국제도서전, 출판연구 등)	- 출판산업 조사연구 - 출판정보 제공	- 출판유통정보 공용 DB구축 및 보급
예산규모 (2005년)	약 33억 원 (국고지원)	약 11억 원 (기금 245억 원)	약 1억 원 (기금 11억 원)	약 6억 원 (국고지원)

자료 : 대한출판문화협회, 『(가칭)한국출판진흥위원회 설립을 위한
공청회』자료집, 2005, 20쪽.

그런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법정기구로서 예산과 조직이 가장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유해 간행물 심의’를 주력으로 한 규제
활동에 치중하며, 양서 권장에 대한 소극적 활동에 그치고 있다. 출판
물 심의는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에 비추어볼 때 심의사업의 실질적
기대효과가 의문시된다는 평가가 많이 있으며, 독서진흥 활동으로 기
구의 주된 성격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⁴⁹⁾

여타 출판계 기관들의 경우 특성화된 독자적 활동과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출판산업 전체에 미치는 순기능이나 파급효과가 상당히 제
한되어 있으며, 고립·분산된 역할 수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출판산업
발전을 위한 주동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재정, 인력부족
등 조직적 영세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49) 백원근, 앞의 논문, 20쪽.

이와 같이 출판 관련 공익기관들이 영세한 조직과 재정으로 출판진흥을 위한 활동을 펴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될 수밖에 없으며, 전체 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연계활동 추진도 현실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적정규모와 조직을 갖춘 종합적인 진흥기관 설립이나 기존조직의 확대 개편을 통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2 절 전자출판 활성화와 전자도서관

I. 전자출판의 개요

1. 전자출판의 정의와 범위

(1) 법령상의 정의

다양한 법과 시행령 그리고 규칙들 가운데 전자출판물에 대한 정의가 내려진 대표적인 것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라 할 수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6호에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라고 하였고, 같은 법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이 법은 모든 출판·인쇄 및 간행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50) 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

50)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3.31, 시행일 2006.4.1]에 의하면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1. “음반”이라 함은 음 또는 음의 표현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다만, 이 법에 정기간행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제11조(전자출판물의 범위)에 “영 제32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 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이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 이외에 전자책의 저작권법상의 분류를 보면, 전자책은 그 내용이 문자 또는 그림 등 싱글미디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과 문자, 그림, 음향, 동영상 등이 혼합되어 멀티미디어의 형태로 구성된 것이 있는데, 전자는 단순히 기존의 종이책을 디지털화한 경우일 것이고, 이러한 유형의 전자책은 저작권법상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전자책의 내용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의 저작물의 종류 중 하나로 보면 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 멀티미디어 형태로 구성되는 전자책의 대표적인 예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음 또는 음의 표현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게임물과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음악 등의 내용물이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로는 디지털백과사전을 들 수 있으며, 멀티미디어 저작물은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어 저작물로 한정시키기 어렵다 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또는 멀티미디어 저작물이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있어서 정신적 창작물을 나타내는 경우, 이는 저작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집합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창작성 없는 집합물의 경우에도 그 제작자는 저작인접권자에 유사한 보호를 받는다.⁵¹⁾

(2) 전자출판의 범주

전자출판의 범주는 곧 전자출판의 정의에 따른 유형을 근거로 한다.

전자책에 대해 “저작자의 메시지를 전달자에 의해 디지털 형태로 가공(편집 및 레이아웃, 디지털로 변환된 자료)하여 전자저장 매체(CD-ROM, CD-I, DVD)에 담거나 또는 전자책 파일의 형태를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유통되어 전자책 전용 뷰어나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보는 형태와 전자단말기를 통하여 볼 수 있는 새로운 출판물”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그 유형으로는 전용 뷰어가 필요하지 않은 전자책(HTML), 전용 뷰어를 이용한 전자책, 멀티미디어 전자책, 오디오 북(Audio book), 전자사전(Electronic dictionary), 전자저널(Electronic journal), 전자잡지(Webzine), 이메일 매

51) 멀티미디어 형태의 전자책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을 가한 자, 즉 창작자가 저작자로서 사후 50년까지 저작권을 향유하게 되며(저작권법 제36조),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받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에 인적·물적 투자를 한 자, 즉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제작한 때로부터 5년간 보호된다(저작권법 제95조).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는 경우에도 그것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창작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저작권법에 따라 원시적으로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전자책이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 중 어느 것으로 보호받든 권리자는 동일하게 될 것이다.

거진(e-mail magazine), 웹 데이터베이스(Web database), 그리고 주문형 출판(POD: Print on demand) 등으로 구분하였다.

1) 전자책

전자책을 종이책의 대체 매체로 PC를 통해서 보는 CD-ROM 등에서부터 개인 휴대 단말기나 전자책 전용단말기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전제하였다.⁵²⁾ 이는 전자책의 태동기의 정의로서 다분히 하드웨어적 정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전자책은 그것이 알려지기 시작한 초기에만 하더라도 콘텐츠로서의 소프트웨어적인 개념보다는 오히려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기기나 장비로서의 하드웨어적 개념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전자책은 기존의 종이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유통되던 텍스트 기반의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키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라고 정의한 것에 따라 전자책을 광의로 정의하면 모든 전자적 출판매체를 의미하지만 협의적 시각에서는 디지털화된 서적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새로운 정보매체의 출현과 더불어 무선 인터넷 콘텐츠로 한정하기도 한다고 하였다.⁵³⁾ 이 정의 역시 초기의 정의로서 전자책을 콘텐츠, 솔루션, 하드웨어 등으로 구분하여 텍스트 기반의 정보와, 전용 뷰어나 브라우저, 그리고 단말기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전자책을 콘텐츠·솔루션·하드웨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보서비스로 규정하고, 초기의 단순한 텍스트 수준을 넘어서 완벽한 책의 모습을 구현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 멀티미디어 요소까지 추가함으로써 전자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⁵⁴⁾ 즉, 최근의 전

52) 이정준, “디지털 시대의 전자책 발전방향 : e-book의 시장전망과 문제점”, 문화관광부, 2000.

53) 박지희, “e-book의 현황과 전망”, 정보통신정책 제13권 1호, 2001.

54) 성동규 외 4인, “전자출판물 이용자 증대를 위한 기반연구 : e-book을 넘어 u-book

자책은 초기의 단순성을 탈피하고 진화하여 멀티미디어 전자책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의 전자책은 콘텐츠 제공업체의 인식 미비로 인해 저작권이 소멸된 구한말의 신소설 등으로 제작하였다. 전자책 제작 기술 역시 아직 진전중인 상황이어서 단순 텍스트 수준으로 제공될 뿐이었으며 유선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하여 접하는 수준이었다. 당연히 폰트의 종류나 크기는 한정되어 있어서 독자들의 개별적 취향이나 상황에 따라 정보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인 수준의 형식으로 제공되었다. 형식이나 내용의 다양성 역시 기대할 수 없었다. 저작권 소멸된 신소설들을 주로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시범적으로 제공되었으며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나 멀티미디어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였다.

그러나 전자책 표시언어의 표준화 작업, 전자책용 폰트의 개발 등을 통해 전자책의 형식을 발전시켜 왔으며, 협회 차원의 전자책 경진대회나 개별 기업 차원의 저작자 발굴 작업 등을 통해 기술의 발전과 저변 확대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전자책은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저작도구 등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적 요소를 갖춘 새로운 매체로 거듭나고 있다.

2) 전자출판물(CD-ROM, CD-I, DVD)

전자출판물이라는 용어는 전자출판의 결과물에 대해 종이책의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 용어는 당시로서는 새로운 출판매체인 CD-ROM으로 된 책을 출판해 내는 출판사들에게 종이책 출판과 같은 세제혜택을 위해 선택된 행정적 용어라 할 수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으로”, 한국전자출판협회, 2005.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라고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어로 발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자출판물이 전자책과 무관한 매체인 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직 네트워크 기술이 오늘날과 같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 디지털로 작성된 책과 같은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즉, 대부분의 PC들이 아직 연계되지 못하고 각각의 사용자들에게 독자적(stand alone)으로만 이용되고 있을 때 멀티미디어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작성한 대용량의 정보(당시에 600메가는 대용량이었다.)를 CD-ROM이나 CD-I로 제작하여 대중에게 제공하였던 것이며, 오늘날에는 DVD로 제작하여 제공되고 있다. 특히 초기에는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용으로 주로 이용되었으나 요즘에는 컴퓨터 서적이거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도서의 경우 CD-ROM이나 CD-I 및 DVD로 제작된 부록은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⁵⁵⁾

따라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출판물은 전자책과는 별개의 매체가 아니다. 이것은 CD-ROM 등으로 만들어진 전자책이라 할 수 있다.

3) 모바일 전자책

모바일 전자책은 핸드폰이라고도 하는 개인휴대전화단말기나 PDA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개인휴대단말기의 액정 크기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 화면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그에 맞는 적절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출퇴근이나 통학 시간 등의 자투리 시간대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한

55) e-book의 교육서적부문은 잠재력 면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학교육교재로 대표되는 고등교육교재 시장규모는 2004년 초중등교육교재시장의 35배에 달할 정도로 전문서적부문과 함께 e-book의 주요한 활용처가 되고 있다.

정된 공간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만화나 콩트 같은 오락용 정보와 요리정보 같은 실용적인 내용도 제공된다. 모바일 전자책은 대부분 이동통신회사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콘텐츠 개발업체의 사이트를 통해서도 제공되는데, SK텔레콤은 ‘네이트온’, KTF는 ‘멀티팩’을 통하여 콘텐츠를 제공한다.

4) 오디오 북

오디오 북은 어학서적 분야에서 주로 제공되고 있다. 혹은 문자해독 능력이 없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음성으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제공되기도 한다. 야날로그 오디오 북의 대표적인 형태는 어린이용 도서의 부록으로 제공되었으나 오늘날에는 MP3 같은 파일로 책의 내용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오디오 북 파일들은 온라인상의 관련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다.

5) 전자사전

대부분의 전자사전은 사전 전용기기에 콘텐츠를 탑재한 형태로 판매된다. 전자사전에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종이책 사전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담아서 판매되는데, 저장기술의 발달로 하나의 전자사전에 여러 사전을 같이 포함시켜 판매한다. 이와 같은 하드웨어적 전자사전 외에도 PC나 PDA를 이용하는 전자사전도 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로 제작된 콘텐츠만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6) 기 타

그 외에도 전자저널(electronic journal)과 웹진(Webzine), 이메일 매거진(e-mail magazine), 웹 데이터베이스(Web Database) 등이 전자책의 범주에 포함되며, 학자에 따라 주문형 출판(POD: Print on Demand)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전자저널이란 학회지와 같이 학술정보를 주로 담고 있는 매체를 가리킨다. 대부분의 전자저널은 종이책으로 출간되면서 그 내용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상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웹진은 종이 잡지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한다는 한정적 개념의 매체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웹진은 단순히 종이잡지의 온라인 판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 제공 사이트라 할 수 있다. 이메일 매거진이란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다양한 정보 혹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디어이다.

2. 전자출판산업의 특징

전자출판이 본격화되면서 전통적인 인쇄매체의 Value Chain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콘텐츠의 생산자와 독자 또는 소비자 간의 직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중간단계의 과정이 생략되기도 한다.

<표-8> 전자출판의 주요특징

특 징	주 요 내 용
비용절감	기존 출판프로세스에 비해 제작·유통·발송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통해 비용을 줄임
휴대편의성	eReader기 또는 PDA 등의 복합단말기를 통해 데이터화된 다량의 책을 휴대할 수 있음
공간초월성	인터넷 접속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다운로드할 수 있어 시공의 제한이 비교적 없음
영구보관성	각종 서적의 Database화를 통해 유지·보관의 수월성을 확보하고 영구보관이 가능하게 됨
가공성	기존 서적의 정형성을 탈피하여 동일정보의 다양한 형태로의 정보가공 및 표현이 가능함

특 징	주 요 내 용
멀티미디어 활용	음악,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가 다량 포함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제공할 수 있으며 다른 e-book과의 하이퍼링크 기능을 통해 정보 활용을 극대화 함
기능성	eReader기 등 디바이스의 기능을 활용하여 상호작용적 정보 교환 및 부가정보입력, 검색, 저장 등이 가능하며 Back Light 기능 등 부가적인 편의 장치를 제공함
업그레이드의 신속성	콘텐츠의 수정, 추가 등에 따라 신속하게 업데이트하여 최신의 정보를 항상 유지할 수 있음

자료 : 스트라베이스, 2005.

II. 전자도서관의 전자책 보급

1. 전자출판업계의 변화와 전자도서관 확대의 필요성

현재 출판업계는 기술의 변화에 따라 예전의 호황기와는 다른 상황을 맞고 있다. 인쇄 출판업계는 갈수록 매출이 저하되고 수익률이 저하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책을 구매하지 않는 경향도 있고, 출판사가 수요예측을 잘못하게 되면 대량인쇄에 따라 재고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도서 출판과 보급에서 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할 여지도 증가하고 있다.⁵⁶⁾ 전자책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다 더 풍부한 내용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에 의한 전자책 시장 창출은 기존의 종이 출판물을 단순히 판매하는 온라인서점의 등장과는 달리 새로운 시장규모

56) Fisher, William W., III, Promises to Keep-Technology, Law, and the Future of Entertainment, Stanford Univ Press, 2004, pp.19~20.

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러한 전자책의 출판과 보급의 촉진을 위한 전자도서관의 확대는 필연적이다.

전자도서관은 공공도서관,⁵⁷⁾ 대학도서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민간에서도 전자도서관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9> 국회 전자도서관 이용현황

구 분	이용자수
국회의원 및 내부이용자	368,247명
협정체결기관 이용자	488,016명
인터넷 이용자	2,633,276명
포털사이트 이용자	3,787,396명
합 계	7,276,935명

자료 : 국회도서관 연간보고서, 2007, 82쪽.

전자책 시장 활성화와 전자도서관의 확대를 위해서는 저작권 문제의 해결과 많은 정책적, 법적 문제가 있을 것이나, 출판산업이 문화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저작권법의 제정 목적은 저작자들에게 독점적 이윤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 보다는 저작자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더 나은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결과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 결과적으로 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출판 산업은 단순히 재화를

57)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홈페이지를 비롯한 3개 사이트(국가전자도서관, 국가자료공동목록, 인터넷정보서비스시스템)를 정보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용 국가전자도서관”시스템으로 개발하여 2003년 1월 13일(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공급하는 산업이 아니라 지식정보와 문화를 공급한다는 문화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출판 산업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저작자들이 자유로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저작자들의 사상과 사유의 결과물을 저렴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면서 문화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히 전자책의 저작권 보호만이 아닌 저작자, 출판사 및 소비자가 최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종이책 시장도 점점 축소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자책 시장이 이러한 종이책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자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도 전자출판 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요구되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순위로 응답한 내용으로는 ‘공공교육기관의 전자책 교육 활성화 방안 확대’가 33.3%로 가장 우선시 되었다. 또한 ‘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전자출판물 구입비용 확대’가 26.7%를 차지했다. 전자출판물 거래 비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기관과의 전자출판물 거래확대가 가장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출판 업체의 판매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전자출판물 구입이 늘어가고, 전자책 활용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표-10> 전자출판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설문자료)

구 분		해당사(%)
1순위	전자출판에 대한 독자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진행	13.3
	공공교육기관의 전자책 활용 교육 활성화 방안 확대	33.3
	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전자출판물 구입비용 확대	26.7

제 3 장 출판과 유통

구 분		해당사(%)
1순위	전문인력 양성 지원	6.7
	전자출판 연구 지원	6.7
	전자출판 기업을 위한 컨소시엄 확대와 활성화	0
	전자출판 관련 사업에 대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6.7
	불법 복제 방지에 대한 기구 설립	6.7
	기타	0
2순위	전자출판에 대한 독자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진행	13.3
	공공교육기관의 전자책 활용 교육 활성화 방안 확대	20.0
	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전자출판물 구입비용 확대	26.7
	전문인력 양성 지원	20.0
	전자출판 연구 지원	0
	전자출판 기업을 위한 컨소시엄 확대와 활성화	0
	전자출판 관련 사업에 대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6.7
	불법 복제 방지에 대한 기구 설립	0
기타	6.7	
3순위	전자출판에 대한 독자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진행	6.7
	공공교육기관의 전자책 활용 교육 활성화 방안 확대	0
	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전자출판물 구입비용 확대	13.3
	전문인력 양성 지원	26.7
	전자출판 연구 지원	6.7
	전자출판 기업을 위한 컨소시엄 확대와 활성화	13.3
	전자출판 관련 사업에 대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6.7
	불법 복제 방지에 대한 기구 설립	13.3
기타	0	

자료 : 전자출판산업 활성화 기반 연구, 한국전자출판협회, 2006. 9. 236쪽.

2. 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전송문제

(1) 저작물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이용허락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전자책 형태로 복제 및 전송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고, 이용허락이 있는 저작물에 한하여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⁵⁸⁾ 그러나 저작권법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은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을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도서관 등을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 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 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주요 도서관을 연계하여 국가정보자원의 공유체제를 확대·발전시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국가 정책적 목표에 따라 지난 1997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을 비롯한 각 도서관에서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추진하였

58) 국회도서관의 경우 2006년도의 저작물 이용허락 현황을 보면, 정부기관, 공공기관, 개인 및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10,628건,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38,452건의 동의를 얻었다.

<표-11> 저작물이용허락 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누 계
저작물 이용허락	5,089건	24,222건	47,496건	47,350건	51,415건	52,450건	49,080건	277,102건

자료 : 국회도서관 연간보고서, 2007, 82쪽.

고, 최근에는 대학도서관을 비롯한 각 도서관에서도 소장 자료에 대한 목록뿐만 아니라 저작물 전문 전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등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고, 이러한 디지털 원문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도서관 구축 및 서비스에는 필연적으로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와 전송이 수반되고, 이에 대하여 수많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개별적으로 얻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저작권법 제31조 제2항과 제3항은 예외적으로 이에 대한 법정허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⁵⁹⁾

(2) 전자책의 무단인쇄의 문제

대학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책 상당수가 부분 인쇄가 가능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한다.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⁶⁰⁾

현행 저작권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익적 목적이 큰 도서관에서의 복사 및 전송은 저작권법상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구매하면서 전자책업체와 인쇄 범위를 정할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출판사와 전자책업체의 계약서에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전자책업체가 인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구매하면서 전자책업체와 인쇄 범위를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백히 저작권 침해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전자책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초기에 인쇄 기능을 개방적으로 허용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후 개별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미미한 국내 출판계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⁶¹⁾

59)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 1999. 11., 15쪽.

60) 경향신문, 2007. 7. 22.

61) 최근 ‘학술분야 전자책 구매 컨소시엄’은 가입한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전자책 서

3. 도서관보상금제도

현행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하면 도서관등은 동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상금은 판매용 자료의 경우 1장 출력 시 5원, 1파일 열람 시 20원이며, 비판매용 자료는 1장 출력 시 3원, 1파일 열람 시 20원이다.⁶²⁾

그리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문화관광부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저작재산권자 단체로 지정하고, 각 도서관에서 징수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아 지적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분배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 도서관보상금제도는 저작권 보호와 디지털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보상금 관련 약정을 체결한 전국 50개 공공도서관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징수된 보상금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50개 공공도서관 중 6개월간 징수한 보상금이 1만원이 넘는 도서관은 단 한 개관도 없었으며, 단 1원도 징수하지 않은 도서관은 무려 14개관이나 되었다. 50개 공공도서관에서 징수된 보상금은 총 5만원 정도였다고 한다.⁶³⁾ 이처럼 징수금액 자체가 미미하였고, 과금시스템 도입

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전자책 구매를 일괄 대행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한다(전자신문, 2007. 4. 25). 국가의 중요한 학술 관련 정보와 지식이 공신력 있고 효율적인 채널을 통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권소사업이 활성화되면 한 동안 인터넷의 발달과 불법 복제로 고전해온 국내 학술 분야 출판사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2) 적용기간 : 2007. 1. 1. ~ 2007. 12. 3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32호

63) 오마이뉴스, 2005. 10. 19.

에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한다. 총 보상금은 2천만 원인데 25만원만 분배하는 이유는 저작권재산권자 1인에게 분배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 2천원⁶⁴⁾인데 현재 70명만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합하면 약 25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보상금 1천원 징수하고자 과금시스템을 30만원에서 300만원을 주고 도입하였고, 보상금보다 지급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징수된 보상금 가운데 80%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⁶⁵⁾ 이와 같이 실행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 결과, 사실상 도서관보상금제도는 성공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⁶⁶⁾

제 3 절 도서정가제의 유지

I. 도서정가제의 개관

1. 서 설

도서정가제를 규율하는 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함)의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도서정가제이다.

독점규제법은 제29조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당사자의 가격결정권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위법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독점규제법은 제2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은 예외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64) 지급 최소금액을 2천원으로 산정한 것은 지급에 소요되는 은행 송금수수료, 전화비, 기타 행정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65) 오마이뉴스, 2005. 10. 19.

66) 서계원, “저작물 이용 및 보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식재산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43쪽.

따라서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제22조에서 도서정가제를 규정하여 시행하여왔으며, 이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전자출판업계와 오프라인 출판업계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많은 분쟁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 독점규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용의 근거와 타당성에 관해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2. 도서정가제의 개념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제22조 제1항에서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를 정하고 이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출판사가 도서 등의 소비자가격(정가)을 정하여 표시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따른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도서의 재판매가격유지, 즉 출판사에 의한 도서정가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결국 도서정가제는 법률적으로 ‘재판매(再販賣) 가격 유지제도’(Resale Price Maintenance : RPM)를 일컫는다. 즉 생산자인 출판사가 정한 가격대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이며, 소매 단계에서 책정하는 경쟁가격이나 정찰제와 달리, 생산 단계에서 책정한 경쟁가격을 그대로 소비자 판매가로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도서정가제의 장점으로는 전국 균일가를 통한 문화복지 구현, 다품종 소량생산이 특성인 도서상품의 시장실패 방지 기능, 출판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 사업자를 가격경쟁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꼽힌다.

반면, 단점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쟁의 일반 원칙인 소비자 가격 선택권의 부정, 불완전 경쟁으로 인한 시장 발전 지체 가능성 등이 지적된다.

3. 외국의 도서정가제 현황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모든 상품의 재판매가격 유지(정가제 적용) 행위를 원칙적으로 규제한다. 하지만 출판물이라는 지적 재화를 일반 상품과 동일한 시장경쟁 원리의 범주에 둘 것인지, 아니면 공공재라는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생산자가 정한 수직적 가격 결정을 허용할지의 정책 선택은 국가마다 판이하다. OECD 30개 회원국 중 16개국 이 도서정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세계적 시장권을 가진 영어권 중심의 14개국은 정가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도서정가제 시행국의 정가제 대상 품목은 일본처럼 저작물 6개 품목(도서, 잡지, 신문, 음악용 음반·테이프·CD), 독일·오스트리아·포르투갈·덴마크처럼 도서·잡지·신문을 포함한 경우 등이 있는데, 대체로 도서와 잡지가 주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교과서를 정가제 대상으로 포함한 경우와 이를 배제한 경우, 도서정가제 적용 기한을 출판 후 2년 등으로 설정한 경우(유럽)와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일본)가 있다. 단, 정가제 기한이 출판 후 2년 등으로 정해진 경우라 하더라도, 출판사의 의사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여 대부분의 출판물은 정가제 상품으로 취급된다.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를 예외적 할인판매 대상으로 정한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

이와 같이 정가제 적용 여부 및 그 범위는 나라마다 다르다. 공정거래정책, 출판의 역사와 특질, 교육 및 문화정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용됨을 알 수 있다. 경제력이나 시장자유화 정도에 비례해 획일적으로 출판물의 가격제도나 도서정가제의 유무 및 형태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회의 출판시장 질서에 대한 문화정책 차원

의 고려와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중대한 제도 존립의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⁶⁷⁾

II. 도서정가제 시행경과와 개정내용

1. 시행경과

도서정가제는 1977년부터 출판·서점업계의 자율적 관행에 의해 시작된 이래, 1981년에 독점규제법의 추인을 거쳐 계속 유지되어 왔다. 출판사(생산자) 책정 가격(정가)을 독자(소비자) 구매 가격으로 하며, 유통경로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전국 균일가로 판매하는 도서정가제의 특성은 신규 출판사·서점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다수 출판 관련 사업자의 출현과 기초 영업질서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유통 제도로 출판산업 발전에 순기능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가격과괴 열풍 속에서 등장한 할인 양판점에서 도서를 취급하기 시작하고, 1990년대 후반에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할인영업 위주의 인터넷서점이 등장함에 따라 정가제의 기반이 급속히 침하되기 시작했다. 독점규제법의 추인에 의해 자율적 협약으로 유지되던 제도였으므로 할인판매에 대한 규제수단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출판·서점업계는 할인시장 형성을 제재할 법적 조치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도서정가법 제정을 시도했다. 그리하여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는 도서정가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⁶⁸⁾

동법은 온·오프라인간 가격제도에 차등을 두었으며(발행 후 1년 미만의 도서에 한해 온라인 판매에만 10% 할인 허용, 오프라인 판매는 할인 불허), 추가적으로 마일리지(구매 누진 할인판매) 적용 판매

67) 문화관광부, 『도서정가제 평가 및 향후 방향에 관한 연구』, 2005. 11., 48쪽.

68) 문화관광부, 앞의 보고서, 30쪽.

를 규제개혁위원회가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온·오프라인간 차별적 규정의 적용은 2001년 말 법 제정 당시 “인터넷 서점에 대해서는 유통상의 특수성과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가의 1할의 범위 내에서 할인판매”한다는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전자상거래가 충분히 활성화되고, 오히려 인터넷 서점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오프라인 역차별’ 논란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⁶⁹⁾

2. 도서정가제에 대한 분쟁과 개정

2007년 개정 전(구 ‘출판 및 인쇄 진흥법’) 제22조 및 부칙 제2조는 도서정가제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인터넷) 판매시 정가의 1할 범위 내 할인 허용,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간행물의 할인 허용, 법시행일로부터 5년간 정가제 규정⁷⁰⁾ 등을 명시하고 있었다.⁷¹⁾ 그러나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에도 중소 서점수의 감소는 지속되었으며, 온라인서점의 10% 할인허용 및 마일리지 등 유사할인행위에 대한 허용 등으로 인해 도서 할인 과당 경쟁에 대한 폐해가 제기되었다. 이에 2005년 3월 31일 일체의 할인을 불허하는 ‘완전도서정가제’로의 개정안⁷²⁾이 국회

69) 도서정가제에 관하여 인터넷서점 측은 자유시장 논리와 자유경쟁원리를 거스르고 특히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로서 폐지를 주장하고 오프라인 서점 측에서는 도서정가제의 파괴는 출판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완전도서정가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지표, “인터넷 서점의 할인경쟁 및 수익성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원 논문집, 제54집, 2006, 7., 329쪽.

70)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부칙 제2조

7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9조 제1항에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다만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규정의 예외조항을 도서정가제로 표현하고 있다.

72) 법안의 주요 내용은 (i) 온라인 서점에 허용된 할인(10%) 및 사은품, 누적점수제, 할인쿠폰 등의 유사할인을 금지함, (ii) 잡지(당월분)를 도서정가제 품목으로 포함 시킴, (iii)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간행물에 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함, (iv) 지속적인 도서정가제 실시를 위해 5년 한시조항을 삭제함, (v) 도서

에 상정되었다.

먼저, 완전도서정가제 도입을 통해 출판업계를 보호하고 온오프라인 서점 할인정책의 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과 완전도서정가제의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혜택을 줄일 뿐만 아니라 시장 및 소비자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장논리에도 어긋나는 완전도서정가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출판물을 일반 상품과 동일한 시장경쟁 원리의 범주에 둘 것인지 아니면 공공재라는 견지에서 일정한 가격구속을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정책판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도서정가제는 신인 저작자나 중소 출판사·서점 같은 경제적 약자의 시장 진입과 영업을 안정화함으로써 출판의 다양성과 소비자의 접근권을 자유가격제보다 훨씬 더 잘 보장할 수 있다고 한다.⁷³⁾ 이러한 관점에서 유통형태와는 무관한 최소 할인을(마일리지 등 유사할인 포함) 공통적용, 발행 후 2년이 지난 후 출판사의 재조정 정가 판매, 한시 조항 삭제 등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었다.⁷⁴⁾

이에 대하여, 중소서점 붕괴현상 및 서점업계의 독점화·대형화의 근본원인은 온라인서점의 할인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욕구의 다변화, 온라인 환경의 급격한 성장, 서점의 입지조건 및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강화 등 사회문화적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그 해결방안으로 출판유통구조의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의 개선을 주장하거나,⁷⁵⁾ 중소서점의 전문화·특성화나 집중화, 또는 연합 온라인서점 운영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다.⁷⁶⁾

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에 대한 정가제 예외조항을 삭제함(사회복지시설은 유지).

73) 백원근·박호상, “도서정가제 평가 및 향후 방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 문화관광부, 2005.

74) 백원근, 앞의 논문, 8쪽.

75) 최준영, “출판·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출판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 2005. 6. 14., 70~74쪽.

76) 임형목, “죽어가는 출판문화, 어떻게 살릴 것인가”, 『출판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이 문제에 대하여 개정안 발의 후 출판, 온·오프라인 서점업계는 한국출판유통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i) 온라인 서점에만 적용되던 할인규정의 폐지, (ii) 10% 내에 마일리지, 경품 등 유사할인 행위 모두 포함, (iii) 정가제 대상 서적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큰 가닥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다만, 온라인 서점 업계는 10% 내의 유사할인 행위를 포함하되, 프리미엄 고객⁷⁷⁾에 대한 서비스 보장, 개별 출판사가 원할 경우 1년이 지나면 할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오프라인 서점업계는 이를 반대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었다. 즉, 출판업계는 전자에 대해서는 프리미엄 고객에 대한 서비스 역시 유사할인 행위에 해당하고, 그 금액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후자인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이러한 온·오프라인 서점의 오랜 분쟁과 타협을 통해 2007년 6월 20일 도서정가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3. 도서정가제에 관한 개정내용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진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정가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22조 제2항 단서), 간행물의 발행일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정가판매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제22조 제3항 제1호).

또한, 5년 한시 조항이었던 도서정가제 시한을 삭제하여 도서정가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률 제6721호 부칙 제2조 삭제).

정책토론회』, 2005. 6. 14.

77)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한 고객을 말한다.

<표-12> 도서정가제 관련 개정내용 비교

	개 정 전	개 정 후
도서가격 원칙	도서정가제	도서정가제
할인범위	-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정가의 1할 범위안에서 할인 판매 허용	- 온·오프라인의 구분 없이,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으로 정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허용
도서정가제 적용제외	-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간행물 - 도서관,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	-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 - 도서관,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
적용시한	시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2008년 2월 27일까지)	삭제(계속 유지)

Ⅲ.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제도와의 관계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의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독점규제법 제2조 제6호).⁷⁸⁾

78) 예컨대, 제조업자가 일정한 상품이나 용역을 수직적 관계에 있는 판매업자에 공급하면서, 판매업자가 당해 상품이나 용역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받아야 할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설정된 가격이 최저가격이나 최고가격이냐에 따라 최저가격유지행위와 최고가격유지행위로 구분된다.⁷⁹⁾

또한, 일반적으로 유통단계에서 상부에 위치한 사업자가 하부에 위치한 사업자에 대하여 가격, 거래조건, 거래상대방,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수직적 거래제한이라고 한다. 수직적 거래제한은 상부에 위치한 사업자가 자신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상표 내 경쟁제한과 상부에 위치한 사업자가 하부에 위치한 사업자로 하여금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에 대하여 하위시장의 일정부분을 봉쇄함으로써 상표 간 경쟁을 제한하는 상표 간 수직적 제한으로 나눌 수 있다.⁸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제조업자 등이 자신의 상품에 대하여 하부유통업자가 다음 단계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공급할 가격을 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표 내 경쟁에 해당한다. 한편 상표 내 경쟁제한은 다시 가격을 제한하는 상표 내 가격경쟁제한과 가격 이외의 다른 조건들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상표 내 비가격 경쟁제한으로 나뉘는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바로 상표 내 가격경쟁제한에 해당한다.⁸¹⁾

출판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며, 출판사가 책을 출판해서 서점에 판매할 때 서점이 다음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재판매할 때 가격경쟁이 불가능하도록 재판매가격을 설정해 두고 있다면 서점은 해당 상표 즉, 서적에 대한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가격을 미리 정하여 강제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의미한다. 출판시장의 경우 도서정가제가 이에 해당되는데, 출판사가 서적도매상이나 중소형 서점에 책을 공급하면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79) 이에 관한 상세는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5, 421쪽.

80) 이호영, “수직적 거래제한의 규제 - 미국의 학설 및 판례이론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와 법치, 법문사, 2004, 599쪽.

81) 박승룡,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상의 재판매유지행위금지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43집, 2007. 2., 175~176쪽.

2. 저작물에 대한 적용제외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과 용역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금지되지만 저작권법 제2조의 저작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 포함)에 대해서는 독점규제법 제29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⁸²⁾ 또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15호)”에 의하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간행물과 실용도서,⁸³⁾ 학습참고서Ⅱ,⁸⁴⁾ 일간신문⁸⁵⁾을 포함하고 있다.

<표-13>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허용범위

기 간	2003. 1. 1부터 2004. 12. 31까지	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	2007. 1. 1이후
허용범위	- 모든 간행물 (단,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간행물 제외) - 일간신문	- 실용도서를 제외한 모든 간행물 (단,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간행물은 제외) - 일간신문	- 실용도서와 학습참고서Ⅱ를 제외한 모든 간행물 (단,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간행물은 제외) - 일간신문

자료 :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15호

82) 독점규제법 제2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83) 국제표준자료번호(ISBN)의 부가기호 제1행이 “1”인 간행물을 말한다.

84) 국제표준자료번호(ISBN)의 부가기호 제1행이 “6”인 간행물을 말한다.

85) 정기간행물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한다.

따라서 도서와 같은 저작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개별 출판사와 서적도매상간의 개별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 운영의 측면을 고려하여 실제로는 출판사들로 구성된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서적상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전국서점조합연합회가 구성사업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 4 절 간행물심의제도의 운영

I. 간행물심의제도의 운영상황

매체에 대한 심의문제를 논함에 있어 항상 전제가 되는 것이 헌법 제21조의 언론매체에 대한 검열금지 규정을 근거로 하는 심의제도 자체의 위헌성 여부 문제이다.

간행물심의, 영화등급심의, 방송심의 등 여러 매체의 심의제도는 각각의 특성 및 운영형태(사전, 사후심의)에 따라 그 위헌성 여부를 문제삼을 수 있겠으나⁸⁶⁾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⁸⁷⁾ 심의제도 및 각 심의기관의 매체물 심의는 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하는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서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규제장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86) 헌법재판소가 1996.10.4. 영화법 제12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화심의제도는 심의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가 영화의 상영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고, 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화에 대하여는 상영을 금지할 수 있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헌선언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6.10.4. 93헌가13, 91헌바10 (병합)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심판)

87)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이라 하고 있다(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즉, 언론매체의 표현의 자유를 우선으로 할 것인가, 공정성·공공성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언론매체의 수혜자 및 유해매체의 피해자가 결국은 일반 국민과 청소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각 심의기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는 현재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과 사후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제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유해매체물의 유통정지 등 처분의 방법이 병행되고 있다.

<표-14> 청소년보호법상 처벌내역

행 위 유 형	형 별 내 용	근 거 규 정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외국매체물특례규정위반 범죄의 충동이 일어나게하는 매체물 유통	“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불이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청소년유해매체물 포장의무 불이행	“	“
청소년유해 콘텐츠 방송시간제한 위반	“	“
청소년유해 광고물 설치·부착·배포	“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포장 훼손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보호법 제52조

<표-15> 청소년유해정기간행물 등의 발행·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청소년보호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과징금액 구분	경 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횟수별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유료일간지	1회	2~3회	4~5회	6~10회	11회 이상
무료일간지	1회	2~5회	6~10회	11회 이상	-
주간지	1회	2~5회	6~8회	9회 이상	-
월간지	1회	2회	3~4회	5회 이상	-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고시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

<표-16> 매체물별 심의기관 비교

구 분	간행물	방송 프로그램	인터넷 콘텐츠	영상물	게임물	심의기관 없는 매체물
심의 기관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방송 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청소년 보호단 매체 환경팀
심의 기관 법적 성격	내용심의 목적의 법정기구	방송정책, 방송행정 및 방송규제에 관한 총괄적인 합의제 행정기구	내용심의 목적의 법정기구	내용심의 목적의 법정기구	내용심의 목적의 법정기구	유해매체물 관리·감독, 결정, 고시 행정기구
근거 법률	출판문화 산업진흥법	방송법	전기통신 사업법	공연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제 4 절 간행물심의제도의 운영

구 분	간행물	방송 프로그램	인터넷 콘텐츠	영상물			게임물	심의기관 없는 매체물
심의 대상	신문,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 중 만화, 사진첩, 화보류, 소셜 등의 도서류 등 전자출판물	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이동멀티 미디어 방송 등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정보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영상물등급위원회 음반·음악파일·국가청소년위원회	영화, 비디오물	공연물 및 선전물	게임물	전문심의기관이 없는 매체물, 각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유통되는 매체물
심의 형태	사후심의	방송광고-강제적 사전심의 방송프로그램-방송사업자에 의한 자율적 사전심의 및 방송위원회에 의한 사후심의	사후심의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사전심의 음반·음악파일-사후심의	사전심의	사후심의	사전심의	심의기관 없는 매체물 등 급부여 기타 유해매체물관리·감독
등급구분의 종류 및 표시 방법	유해간행물(불법표현물) 청소년유해간행물(19세미만 구독불가)	모든연령 시청가, 7세이상 시청가, 12세이상 시청가, 19세이상 시청가	청소년유해매체물(19세미만 이용불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19세미만 청취불가	전체관람가, 12세이상 관람가, 15세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영화)	연소자유해공연물(18세미만 관람불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II. 간행물심의의 제도적 문제

1. 심의제도의 개황

(1) 심의현황

1) 전체심의현황

출판 산업 전반에 걸쳐 수년 동안 불황이 지속되면서 일반 독자층의 구미에 맞춰 발행되는 단행본은 갈수록 특화되는 반면에 기존 종이책만 펴내던 출판사들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는 출판 패턴으로 바뀐지도 꽤 오래되었으며, 독자에게 소위 읽히는 책들을 기획·발행하기 위하여 출판계 일각에서는 ‘기획출판’이 관례처럼 인식되어 콘텐츠 측면에서도 다양화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표-17> 전체심의현황

연 도	심의권수	청소년 유해	유 해	의견 제시	임시중지 명령요청	관계기관 통보	문구 수정	주 의
2005년	52,826	3,101	315	318	-	207	740	62
2006년	55,477	3,119	248	150	-	89	689	348
증감률 (%)	5	1	△21	△53	-	△57	△7	461

자료 : 2006 간행물심의연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 도서 및 전자출판물

제1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도서와 전자출판물이다. 2006년 한 해 동안 제1심의위원회에서는 도서 5,529권, 전자출판물 2,069권 등 총 7,598권을 심의하였으며, 이 중 888권을 청소년유해간행물로, 13권을 의견제시로 결정하였다. 2005년도에 총 6,433권을 심의하여 936권을 청소년유해간행물로, 87권을 의견제시로 결정한 것과 비교해 보면 올해는 심의권수는 증가한 반면 청소년유해 결정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심의권수는 6,433권에서 7,598권으로 18% 증가하였고, 청소년유해 결정은 2005년도에 총 심의권수의 15%를 차지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12%로, 의견제시는 1.4%에서 0.2%로 감소하였다.⁸⁸⁾

<표-18> 도서 및 전자출판 심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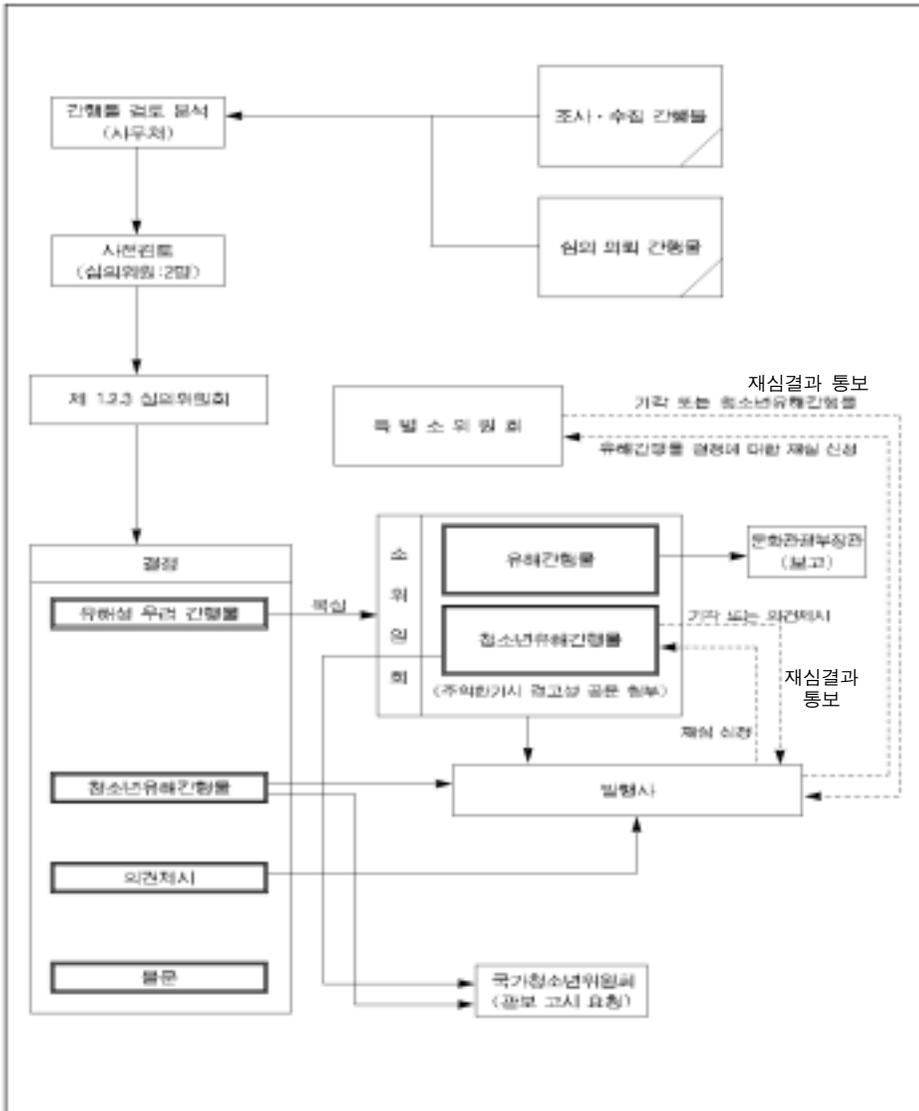
	연 도	심의권수	청소년유해	유 해	의견제시
도 서	2005년	4,032	148	-	53
	2006년	5,529	105	-	12
	증감률(%)	37	△29	-	△77
	연 도	심의권수	청소년유해	유 해	의견제시
전자출판	2005년	2,401	788	-	34
	2006년	2,069	783	14	1
	증감률(%)	△14	△1	-	△97

자료 : 2006 간행물심의연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88)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간행물심의연감, 2006, 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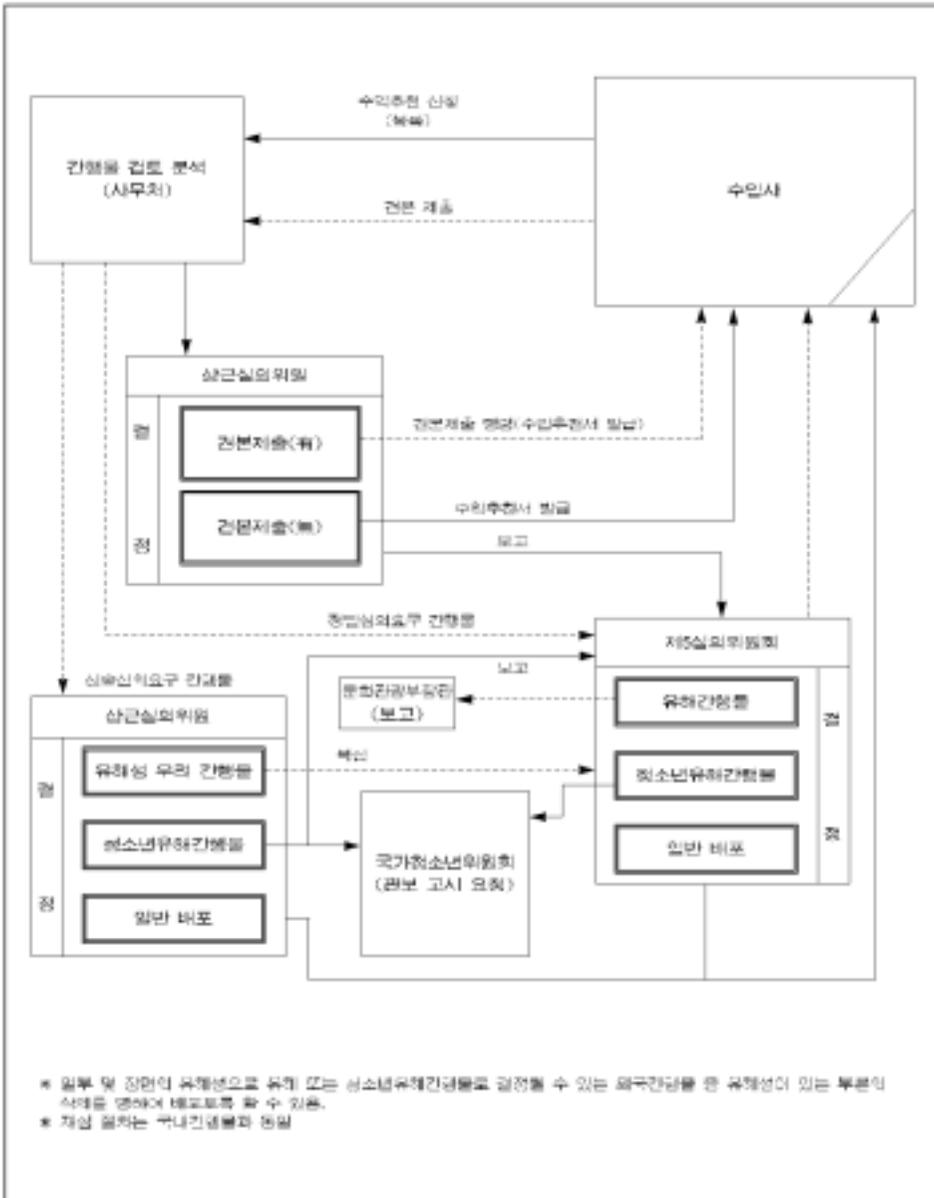
(2) 심의흐름도

1) 국내간행물



자료 : 2006 간행물심의연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 외국간행물



자료 : 2006 간행물심의연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 제도적 문제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이 규정된 「청소년보호법」 등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조항 자체가 ‘선정적인 것’,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등으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개별심의기준 역시 ‘지나치게 묘사한 것’ 등으로 규정되어 다시 각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간행물윤리위원회가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 한계가 있겠으나, 이미 출판되어 유통 중인 간행물을 놓고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고 의견제시를 하는 순수 심의기관으로서 역할만으로는 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본래적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전 예방적으로 사전심의 기능을 강화한다면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언론의 사전검열이라는 언론의 자유 침해의 헌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제 5 절 출판산업의 진흥방안

I. 출판산업 관련 기구의 개편

1. 출판·유통 관련 진흥기구

(1) 진흥기구의 설치 필요성 및 구성

국내외적으로 출판산업이 문화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크다. 세계 문화산업 시장규모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05년 기준 21.6%로 2,982억 달러나 되는데, 이는 모든 문화산업 분야 중 가장

높다.⁸⁹⁾ 또한 출판은 국내 문화산업 중에서도 1위를 차지해 총 규모가 53조원 정도인 문화산업 전체의 35.9%를 차지한다.⁹⁰⁾

이러한 출판의 중요성이나 산업적인 국내외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출판산업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진흥기관이 없어, 진흥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주체가 없으며, 다른 진흥법상 설립된 진흥기구들이 막대한 진흥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에 반하여 출판산업 분야에서는 지식정보 사회를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장기적으로 설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규제적 성격을 가지는 진흥법 소관 정부기관을 진흥의 주체로 하여 역할에 있어 모순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산업구조의 측면에서 보아도 현재 출판산업은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산업구조이며, 고질적인 생산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산업 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상의 반영이자 그 결과이기도 하다.⁹¹⁾

따라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추진할 수 있는 법정기관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에서는 2007년에 진흥기구 설립을 위한 TF 운영 등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⁹²⁾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하여 (가칭)출판진흥위원회를 설립할 경우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현재 비상설기구로 유통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활동하고 있는 출판유통심의위원회와의 관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9) Pricewaterhouse Coopers(2004),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 2004-2008.

90) 2005년 출판산업 매출액의 전체 문화산업 대비 구성율은 35.9%로 19조 3,922억 원이며, 이는 2004년의 18조 9,210억 원에 비하여 2.5% 증가한 수치이다.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6 문화산업통계』 참조.

91) 예컨대,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대학생들의 대량 불법복제나 상업적 도서대여점의 난립, 최근 부각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전송권 침해 등이 출판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92) 문화관광부, 『2006 문화미디어산업백서』, 242쪽.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위원회이며, 출판·인쇄·유통 및 소매 등 출판관련 업계의 대표자, 공정거래위원회, 문화관광부 등 관계기관 및 학계 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출판유통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동법 제23조 2항에 규정된 문화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출판된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 명령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4조 3항).

이와 같이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유통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담고 있어 (가칭)출판진흥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이 위원회 내에서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가칭)출판진흥위원회 내의 심의위원회 형태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된다.

(2) 진흥기금의 지원

전술한 바와 같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을 문화산업에 포함하고 있으며, 제39조에서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에 대한 규정과 제42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였는데, 기금의 용도에 문화산업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출판문화기금을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되며, 실제 사례에서도 문화산업기금이 출판기금으로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에 지원되고 있다.⁹³⁾

따라서 우수도서가 안정적으로 출판되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출판환경 여건이 조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양서 출판자금 용자를 통해

93) 이에 관한 상세는 한국출판문화재단 홈페이지 운영연혁 및 기금지원사항 참조(<http://www.tkpf.or.kr/technote6/board.php?board=introduction&command=body&no=2>).

출판계 은행역할을 하는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에 대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지원액 및 사용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2. 독서진흥 및 심의관련 기구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제5장에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제18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간행물 유해성의 심의,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양서권장·진흥사업 및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를 주로 해야 하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는 양서권장사업을 비롯한 독서아카데미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⁹⁴⁾

이러한 경향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유일한 법정기구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크고, 예산지원액도 다른 공익기관에 비해 현저히 높아 독서진흥활동도 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⁹⁵⁾

그러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기능규정에 독서진흥 관련 사항으로는 단순히 “양서권장·진흥사업”으로만 명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독서진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단순 양서권장 사업은 독서진흥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독서문화진흥법』이 최근 제정되었으며 독서문화진흥법 내에 독서진흥위원회를 두고 있어 이에 대한 기능 조정이 필

94) 이에 관한 상세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kpec.or.kr/>

95) 현행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한국독서진흥위원회’로 개칭하고 이에 준하는 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에도 정부차원에서 독서관련 진흥정책의 집행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이관시키는 등 행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재윤, “출판산업 현황과 주요 정책과제”, 정책자료집, 2004. 10, 67쪽.

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우선, 독서진흥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평가 등에 대한 심의이므로 자문기구 성격의 정책 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무기구와 행정력을 갖추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개정된 도서관법의 경우 도서관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별도 기획단까지 갖춘 도서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과 그 위상을 비교해보면 독서진흥위원회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게 된다.

따라서 간행물심의위원회의 양서권장 등의 기능을 독서진흥위원회로 이관하고, 독서진흥위원회에 도서관위원회와 같이 정책 수립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는 것이 독서진흥 사업의 장기적 발전과 전략적 사업의 집행 중점적인 추진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독서진흥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일본의 「문자·활자진흥법」의 진흥시책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인데, 특히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활동과 도서관 설치의 확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의 문자·활자문화의 진흥사업’과 독서지도 전문인력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가칭)도서관료·독서료 등의 도입 등 ‘학교교육에 관한 시책’ 부분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전자도서관을 통한 전자책 보급확대

1. 관외전송서비스 허용방안

(1) 관외전송서비스 관련 논의

지난 2000년 저작권법 개정에 의하여 도서관 디지털 복제·전송이 허용되었을 당시에 도서관계 및 이용자측에서는 자료 디지털화를 통

한 대국민 정보서비스 및 정보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관외전송서비스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반면, 저작자단체에서는 관외 디지털 복제·전송을 허용할 경우 재복제로 인한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고,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도 위반될 것이라 하였다.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민간부분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산업발달로 인하여 국내의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이러한 규정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외국의 경우는 개별 저작권자 또는 신탁관리단체와의 계약에 기초하여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집중단체와 저작권자 사이의 계약합의나 저작권자와 서비스제공자 사이의 계약합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2) 미국의 도서관 복제 관련 규정

미국 저작권법은 도서관, 기록보존소(archives) 또는 그 고용인이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면책되기 위한 일반적 요건으로 복제 또는 배포가 상업적 목적이 없고, 소장물이 일반공중에게 개방되어 있거나 연구자들 일반에게 접근가능하고, 복제물에 도서관면책규정(동법 제108조)에 의하여 복제되었다는 표시를 할 것 및 1부만 복제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동법 제108조(a)).

보존 또는 대체용으로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경우는 미발행저작물과 발행저작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 등은 그 보존 및 안전을 위하여 또는 타 도서관 등에서의 연구목적의 사용을 위한 기탁을 위해서는 미발행 저작물을 3부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본 저작물이 그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디지털형태로 생성된 복제물이 그 형태로 달리 배포되거나 해당 도서관 밖에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동법 제108조(b)). 또한 도서관 등은 파손, 훼손, 분실 또는 도난당하거나 그 수록된 형태가 쓸모없게 된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발행저작물을 3부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건은 미발행된 대체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고, 디지털형태로 생성된 복제물이 그 형태로 해당 도서관 등 밖에서 일반공중에게 이용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동법 제108조(c)).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복제·배포는 일부복제와 전부복제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우선 도서관 등은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도서관 등 또는 타도서관 등에 소장된 집합물 또는 정기간행물의 논문 또는 기타 기고문의 1부 또는 기타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물이 이용자의 소유물이 되고, 복제물이 개인적인 연구, 학문 또는 조사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복제요청 장소 및 서식에 저작권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108조(d)). 다음 도서관 등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도서관 또는 타 도서관 등에 소장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복제·배포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고, 복제물이 이용자의 소유물이 되고, 복제물이 개인적인 연구, 학문 또는 조사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이용자의 복제요청 장소 및 서식에 저작권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108조(e)).

이와 같은 저작권법상 도서관 관련 규정을 요약하면, 우선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복제·배포의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디지털 형태의 복제·배포는 보존·대체 목적의 경우에는 허용되나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오래된 저작물⁹⁶⁾의 경우는 이

96) 보호기간이 20년이 남은 저작물 : 도서관은 보존, 학문 또는 조사의 목적으로 보호기간이 20년 남은 발행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팩스 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 배포, 전시 또는 실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저작물이 통상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거나, 복제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취득할 수 없거나, 저작권자가 위 두 가지 조건 중의 하나가 적용된다고 통지하지 않았어야 한다(저작권법 제108조(h)).

용자의 요청에 의한 디지털 복제가 허용된다.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 가능성 측면에서는 보존·대체용으로 복제한 저작물은 도서관 등의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보호기간이 20년 남은 저작물은 관외 이용이 가능하다.⁹⁷⁾

(3) 관외 서비스 허용을 위한 저작권법 개선방안

전자책의 관외 서비스 허용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도서관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저작권보호를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기술적 내지 조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자가 저작권사용료 또는 보상금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서로 합의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본 미국의 경우와 같이 계약적인 보완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고, 그밖에 법적인 보완으로는 도서관과 관련한 저작권법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저작권법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특칙은 전자책 도서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 자료를 복제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인터넷을 통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 게 불가능하고,⁹⁸⁾ 디지털 도서관 자료의 이용은 도서관 건물 안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같은 자료를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 수도, 도서관이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은 자료 부수만큼으로 제한된다.(저작권법 제31조 제2항) 자료를 다른 저장장치에 옮겨 담는 것도 안 되고 복제하려면 프린터로 인쇄해야 한다. 절판 등으로 자료를 구할 수 없어 다른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복제했을 때도 프린터로 인쇄한 형태로 받아야 한다.

97) 안효길, “전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의 개정방안”, 국회도서관보 Vol. 333, 22쪽.

98) 김재섭, “저작권 ‘족쇄’ 풀어야할 디지털도서관”, 『한겨레』, 2002년 3월 10일.

물론 출판업계의 사정과 불법 복제의 위험성이 있어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었지만, 전자책의 자유로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침해행위의 매개체로 보기보다는 정보이용을 가능케 하는 촉매로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술 도서의 전자도서관의 의무 구입, 전자책 도서를 소장한 도서관 확대를 통하여 출판업계의 이익을 보전하고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전자적 형태로 이를 도서관등을 통하여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디지털 형태로 된 전자책을 꼭 도서관내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이익을 최대한 이용하지 못하고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물론 불법복제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DRM (Digital Right Management) 기술 등을 채용하여 콘텐츠 제공자가 해킹당하지 않도록 하여 제공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등의 보완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⁹⁹⁾

또한, 저작권자에 대한 경제적 손실 염려도 관내이용과 관외이용에 대해 보상금을 차등화하는 것으로써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⁰⁰⁾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구매하면서 전자책업체와 자율적으로 이용 허락범위를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출판사는 이 경우 저작자의 명시적 허락을 받아 전자적 출판에 대한 권리 조항도 동의해야 할 것이다. 출판사, 저작자, 전자책업체가 동의한다면 도서관에서의 관외에서의 전송도 용이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책의 경우는 전자도서관을 통하여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외부에서도 전자책을

99) 정연덕, “이동통신사 DRM의 법적문제”, 『창작과 권리』 제43호, 2006년 여름, 62쪽.

100) 방송콘텐츠의 경우 최근 적절한 이용요금을 납부할 경우(예 : 프로그램 1회당 1,500원) 일정기간(30일) 동안 개인 컴퓨터에 콘텐츠를 다운받아 저장하여 수시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파일이 열리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출판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제도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이 경우 이용요금은 오프라인 출판물에 견주어 저작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제31조 제2항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전자책 인쇄에 대한 요금현실화

전자출판의 경우 그 성질상 대부분 인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쇄본의 경우 이용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단순 열람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산정한다면 저작권자나 전자출판업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내이용과 관외이용의 이용요금의 차등화와 함께 인쇄가 가능하도록 할 경우 현재 종이 값 수준의 이용요금이 아닌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이용요금의 부과가 필요할 것이다.¹⁰¹⁾

3. 도서관보상금제도의 보완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보상금약정을 체결한 도서관 수는 2007. 1. 현재 527개에 달하고, 그 중 국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도서관에서 일괄지급하고, 대학도서관 등에서는 각 이용자가 보상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¹⁰²⁾

동 제도의 도입취지가 도서관이라는 특정한, 공익목적에 위한 이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낮은 보상금 징수 기준에 의하여 소액의 보상금이 저작권자에게 분배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보상금지급의무의 주체는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와 제3항의 경우가 각각 다를 수 있으나, 한국복사전송권센터의 실무상으로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고려하여 원문이용도서관에서 보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체결한다고 하였다.

보상금 수령자와 관련하여서 현행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은 도서관 등이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01)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후술하는 저작물의 이용과 보상부분 참조.

102) 안효질, 앞의 논문, 19쪽.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은 도서관 등이 그 보상금을 저작권권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는 단체에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도서관 등은 저작권자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직접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한국복사전송권센터의 설립취지에 반하고 지급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보상금수령은 저작권자단체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¹⁰³⁾

Ⅲ. 도서정가제의 개선

1. 개정의 의미와 문제

도서정가제는 도입당시부터 서점업계와 인터넷서점업계, 문화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간의 입장차이가 명확하여 찬·반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가 타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입법되었으며, 이후에도 계속적인 논쟁이 있어왔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한시적 규정이었던 도서정가제 규정에 대한 온·오프라인 서점업계의 협력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의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 서점에 대한 불공정한 할인허용의 문제를 철폐하고, 시장경쟁 논리에 일임하는 최근 산업계 입법의 전반적인 경향에 따른 개정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개정된 도서정가제와 관련하여서도 기존의 도서정가제 규정의 문제점으로 지정되어왔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의무화하는 것으로써 동법 제29조의

103) 2006. 12. 28. 개정 저작권법은 보상금청구권은 지정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개별적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동법 제31조 제6항, 제25조 제5항).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와 같은 이유로 도서정가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저작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허용근거

독점규제법의 입법목적은 개별시장에서 경쟁의 유지 및 촉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물에 속하는 도서와 같은 출판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가장 큰 근거로는 출판산업은 문화산업으로서 제조업과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저작물은 고유한 창작물로서 통상 일반 공산품과는 다른 문화상품적 특성이 있고 문화의 보급과 문화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확보하고 그 발행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다종류의 저작물이 전국적으로 광범하게 보급되는 체제의 유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일부 출판사와 서점 간의 직거래, 할인판매 등 전반적인 자유경쟁을 요구하게 되면 국민문화적 측면에서 없어서는 안될 전문서적, 사서류, 학술서 등 시장성이 없는 저작물은 출판불능에 이르게 되고 그에 따른 저술 의욕의 감퇴 등을 불러 교육, 정보문화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저작물에 관한 재판매가격유지(정가판매)행위는 거의 출판업계의 상관행이 되었으며, 또한 출판업계는 그 업종의 성질상 다수의 출판사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서 중소기업인 영세기업의 비중이 높고 신규참여도 활발하여 경쟁적 성격이 다분한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재판매가격유지를 인정하더라도 그 폐해가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⁰⁴⁾라고 판결한 바 있다.

104) 서울고법 1996. 3. 19. 선고 95구24779판결.

또한, 개별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은 결국 독점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적 귀결 때문이다. 즉, 출판물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가격경쟁에 맡긴다면 결국에는 소비자로서 독자들은 하나의 출판사에서 출판된 출판물만을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양한 출판물의 공급을 통해서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사회적 노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이다.¹⁰⁵⁾

4. 출판자의 가격결정권 확보

2007. 7. 입법예고 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안)을 보면 제15조에서 할인방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즉,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서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독서진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으로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소비자보호 및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으로 직접 가격할인 이외의 누적점수제 및 할인쿠폰 등 유사 할인행위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할인방법의 다양화는 일시적으로는 도서판매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겠으나, 시장의 압력으로 출판사에게 할인액 만큼의 거품가격을 고려하여 가격책정을 하게 할 우려가 있어 근본적으로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종이책과 전자책을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소비자에게 이미 10퍼센트의 할인효과를 주고 있으므로, 지나친 할인정책은 문화산업으로서의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도서정가제의 본래적 의미에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도서정가제의 본래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책이 문화공공재라는 인식하에 도서의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05) 박승룡, 앞의 논문, 182쪽.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출판권법을 보면, 제21조(정가)에서 “저작물이 배포될 소매가격은 각 판에 관하여 출판인이 결정한다. 출판인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소매가격을 할인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위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항상 저작자의 동의를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출판사만이 최종 소비자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소매점에서 임의로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1항의 경우에도 최종 소비자 가격은 출판사만이 정할 수 있고, 출판사가 정한 가격에 판매해야 한다는 사항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종 판매가격까지 국가 규제하에 둔다는 의미로써가 아니라 소매점에서의 무분별한 할인경쟁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적절한 도서가격이 유지되게 하여야 출판사를 비롯한 저작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분배되게 되고, 이로 인해 창작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출판사만이 그 권한을 가질 수 있음을 명시할 것이 필요하다.

IV. 간행물 심의규정의 정비

1. 근거법의 적절성 여부

전자책을 비롯한 간행물은 현재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출판계에서는 간행물에 대한 심의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5장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기존 소관법인 『청소년보호법』이 보다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¹⁰⁶⁾

106) 백원근,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개정방향”, 출판문화, 2006, 3쪽.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에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그 목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유해 간행물’ 심의가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앞서 살펴보았던 독서진흥위원회와의 업무 분야 재정리와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신유형의 간행물에 대한 심의

개인 저작 전자책(야설 등)이 인터넷으로 유통되었을 때에는 사후적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인지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전자책은 단지 인쇄된 책을 화면상에서 옮겨놓은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의 경우, 다양한 영상물이나 게임을 함께 책 속에 포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특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기관이 없다. 또한 CD형태로 제작되어 유통되는 전자책을 제외한 인터넷간행물들이 모두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백이 야기되고 있다.

매체기술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독일에서는 기존의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청소년유해에 대한 규제대상이 되던 기존의 문서개념을 폐기하고 대신 기록미디어와 텔레미디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립시켰다. 기록미디어란 문자, 영상 또는 음성으로 기록된 매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도서, 음반, 도화뿐만 아니라 영화, 비디오물, 게임물, 디스켓, 시디롬, DVD 등이 포함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미디어 현실을 고려한 새로운 미디어와 정보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심의대상 및 규제기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¹⁰⁷⁾

107)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각종 매체물 심의시스템에 대한 청소년 연령 기준 및 등급분류 방식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고, 매체물 관련 업계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적 노력을 강화하며, 매체물 관련 역기능에 대한 국가의 대응근거 마련

또한, 전자책은 차세대 온라인 출판 서비스로 출판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¹⁰⁸⁾ 전자책 시장의 융복합화에 따라 현재 MP3 플레이어, 위성DMB폰, PMP, PSP 등 고기능 고사양의 휴대단말기의 급속한 보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자책은 이들 디지털 기기의 플랫폼에 융복합화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종이인쇄물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23조의 간행물의 유통질서 규정을 전자책의 발전과 더불어 문제되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공정한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현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 내지 제21조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해성 심의 규정에 있어서도 제2조 4호의 간행물에 국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간행물에 국한되지 않고 실질적인 전자책의 형태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3. 등급분류시스템의 정비

간행물 내용심의 및 등급분류시스템의 본질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폭력성이나 음란성(선정성) 등의 요소가 등급분류시스템 내에서 당해 간행물 심의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정도’ 내지

및 콘텐츠 제공측면에서 규정되어있는 청소년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수요자 중심의 법으로 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칭)청소년매체법을 제정하여, 사이버 환경에 적합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를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정수천, “매체물 심의시스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지식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과제』, 2007, 112쪽.

108) 전 세계 전자책 시장은 2005년에 14억 5,800만 달러로 전년대비 64.9%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06년, 2007년까지 각각 64.1%, 54.4%의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통계자료 참조.

‘강도(intensity)’가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즉 심의 및 등급분류를 하는 실제의 과정은, 당해 매체물이 담고 있는 콘텐츠의 내용이 폭력성 내지 음란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혹은 ‘어느 강도’의 수준인가를 판단하여, 연령에 따라 당해 간행물의 접근가능등급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간행물 내용심의 및 등급분류가 작동하는 기본전제는 당해 매체물의 내용이 원칙적으로 현행법 하에서 ‘적법한’ 것이라는 점이다. 즉 당해 콘텐츠가 적법한 내용의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폭력성이나 음란성의 정도 내지 강도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당해 콘텐츠가 ‘위법한(illegal)’ 것인지 여부, 즉 당해 콘텐츠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권한은 원칙적으로 사법부가 행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행물의 내용심의 및 등급분류기능만을 수행하는 심의기구는 불법성에 대한 판단권한이 원칙적으로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행 간행물 등급은 다른 매체의 경우와 달리 ‘유해간행물’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만 구분 가능한데, 신유형의 간행물인 경우는 유해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등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의 『등급법(Classification Act 1995)』의 경우 간행물, 영화, 컴퓨터게임의 등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 등급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 장관들과의 합의에 따라 등급위원회(Classification Board)가 코드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의 수정시에는 관계 장관의 합의가 필요하도록 하였다.¹⁰⁹⁾

109) 이에 관한 상세는 ‘Office of Film and Literature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Act 1995’ 참조.

우리나라와 같이 매체물이 각각의 근거법에 따라 소관부처를 달리 하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이 소관부처 장관의 합의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마련과 시행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등급법 제13조A에서는 간행물의 특정 등급시 조건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첫째 위원회가 어떤 간행물을 제한 없음(Unrestricted) 이라고 판정할 경우, 이 간행물이 밀봉 포장 내에 들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배달될 수 없다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둘째 위원회가 어떤 간행물을 1종 제한(Category 1 restricted)으로 판정할 경우, 이 간행물이 불투명한 재질로 만들어진 밀봉 포장 내에 들어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전시하거나 배달되면 안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는 등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심의규정을 개정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경우에도 이와 같이 실제 판매나 유통의 과정에서도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제 4 장 출판과 저작권

제 1 절 출판과 저작재산권의 적용

I. 출판권 개관

1. 출판권의 의의

출판(出版)이라 함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서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57조 제1항 참조). 여기서 발행이란 저작물을 일반 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권이 함께 적용하게 된다. 이 규정으로부터 출판권이라 함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도화로 발행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계약실무상 출판계약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출판자가 복제·배포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복제·배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출판권)를 설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57조 제1항).

이와 같이 출판권설정계약에 따라 출판권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출판권이라 한다(저작권법 제57조 제1항).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57조 제2항). 즉 저작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출판할 권능을 가진다.

출판권에 관하여 일본 또는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출판권을 ‘설정’ 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출판권의 성립을 ‘권리의 양도’로 법정하거나 출판계약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저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이전함으로써 출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¹¹⁰⁾

2. 출판권의 개념

출판권이라 함은 출판권자가 출판권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일반 공중의 수유를 위하여 원작 그대로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복제·배포할 권리를 의미한다(저작권법 제57조).¹¹¹⁾

여기서, ‘원작 그대로’라 함은 ‘원작의 전부를 출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작이나 번역 등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오자, 탈자 등이나 맞춤법이 틀린 것은 수정하여 출판할 수 있다.

또한 원작의 전부를 출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자가 출판된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중 상당한 양을 복제한 경우에는 출판권자의 출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출판권이 설정되면 출판자는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전유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저작물을 전집 그 외의 편집물에 수록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

원저작물과 그에 대한 번역저작물이 있는 경우 번역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자는 번역저작물의 저작자이자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니다.

110) 윤 경, “만화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침해요건과 그 동일성 판단방법”, (계간)저작권번호, 2006, 51쪽.

111) 출판권은 저작권법상 권리이다. 출판권을 가지게 되면, 해당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와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된다. 예컨대, 일정 기간 이내에 출판할 의무, 출판물의 재고 유지 의무 및 발행이나 판매의 보고 및 증쇄시 추가 인쇄 지불의무 등이 있다.

3. 출판권 관련 권리관계

(1) 출판권 침해의 의미

저작권법은 출판권자는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 출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출판권자는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는 저작권법 제57조의 규정을 형식적으로 해석하여 제3자가 출판권자의 승낙 없이 원작과 완전히 동일하게 출판하는 경우에만 출판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출판권자의 보호가 무색해진다. 이러한 태도는 출판권자의 권리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제3자에게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출판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저작권법 제57조의 규정을 다소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출판권의 본질이 복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출판한 작품이 복제에 해당한다면 대체적으로 출판권 침해로 봄이 상당하다.

(2) 복제권 침해와의 관계

출판권과 복제권을 비교하여 보면, 복제권이 출판권보다 약간 범위가 넓다. 출판권은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복제·배포할 권리이고, 복제권은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출판권 침해는 모두 복제권 침해로 되지만, 복제권 침해는 모두 출판권침해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출판권의 본질이 복제에 있으므로,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복제권 침해 여부의 판단방법과 차이가 없다. 출판권은 복제권보다 범위가 좁을 뿐 복제권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정행위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동일 저작물을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복제)하는 자는 출판권을 침해하는 자라 볼 수 있다.¹¹²⁾

(3) 출판권과 복제권의 관계

출판도 복제의 한 형태이므로 복제권의 내용에는 저작물의 출판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가 포함된다. 복제권과 설정출판권은 각각 배타적인 권리이므로 복제권자가 설정출판권을 설정한 경우 양자간에 경합이 생기고 복제권자는 그 범위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마치 소유물에 관하여 제한물권을 설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인정되고, 저작권자의 복제권은 그 범위에 한하여 제한되는 것이다. 따라서 복제권자는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하거나 제3자에게 출판을 허락할 수 없게 된다.

(4)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의 관계

1) 2차적저작물의 의의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되, 이것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창작물을 말한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2차적저작물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원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결과로 된다.¹¹³⁾

112)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도3115 판결은, “원작 그대로”라고 함은 원작을 개작하거나 번역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지 않고 출판하는 것을 의미할 뿐 원작의 전부를 출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침해자가 출판된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중 상당한 양을 복제한 경우에도 출판권자의 출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 판결은 “허락없이 복제(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복제)하는 것”을 출판권의 침해로 보고 있다.

113)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2) 2차적 저작물의 성립요건

원저작물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할 정도의 개변을 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컨대 맞춤법에 맞게 고치거나 단어만 비슷한 것으로 바꾼 경우는 원저작물의 복제물에 불과한 것이 된다. 즉,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서는 보통 저작물에서 요구하는 창작성보다 더 실질적이고 높은 정도의 창작성(some substantial, not merely trivial originality)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실질적인 개변(substantial variation)이라고도 한다. 그 정도가 되지 아니하는 사소한 개변은 단순한 복제에 불과하다. 실질적 개변도 넘어서서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고 아니하면 독립적 저작물이 된다. 즉 개변(variation)의 정도에 따라 원저작물, 복제물(trivial variation), 2차적 저작물(substantial variation), 독립 저작물의 순으로 된다.

2차적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정의한다면,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대한 관계에서 그것을 토대로 하였다는 의미의 종속성, 즉 그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종속성’과 원저작물에 2차적 저작물 작성자 자신의 창작적 개성이 부여되었다는 뜻의 새로운 창작성, 즉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는 창조성(창작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한다.

판례도, 같은 취지에서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재제(再製)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

거나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로 보고, 수정·증감·변경으로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로 보고 있다.

2차적 저작물은 그 중 새로운 창작적인 표현만이 보호된다. 따라서 제3자가 2차적 저작물 중 그 기초로 된 원저작물의 표현형식과 동일성이 있는 부분만을 복제하였다면 저작자의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3) 2차적 저작물의 작성과 출판권의 침해 여부

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원작을 개작하거나 번역하는 등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5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원작 그대로”라 함은 1차 1구절이라도 수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원저작물로서 즉, 원작의 복제권으로서 기능하는 형태로’ 라는 의미이므로, 번역하여 출판한다든가 또는 번안하여 출판한다고 하는 2차적 형태로 복제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작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로 실질적인 개변을 하여 출판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될지언정 출판권자의 출판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II. 출판계약의 구분과 적용

1. 출판계약의 개념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가지게 되는 출판권을 바탕으로 출판업을 운영하는 출판자가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출판계약이라 부르는데, 저작자와 출판자 사이의 이른바 ‘출판계약’에는 여

러 가지 유형이 있다. 여기에서 출판권과 복제·배포의 허락을 의미하는 출판허락계약과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출판허락계약은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한 점에서 출판권과 그 성질을 달리한다.

출판계약의 유형 중 출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범위가 넓은 것부터 보면, 저작재산권 전체를 출판자에게 이전하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배포권 포함)만을 양도하는 계약, 출판권설정계약, 출판허락계약, 독점적 출판허락계약 등이 있을 수 있다.

2.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저작재산권양도계약(저작권양도계약)은 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 전체를 출판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한 개의 저작권으로부터는 직접 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권 외 방송권·상연권·영화화권 등 많은 권능이 파생하지만, 이 계약은 이들 권능 모두를 포함한 저작권 전체를 출판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출판자는 계약체결의 본래 목적인 출판의 범위를 넘어 강력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3. 복제권 양도계약

복제권 양도계약은 저작권을 구성하는 많은 이용권 중 복제권의 이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즉 저작권 일부 양도의 계약을 말한다. 출판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복제권만으로 그 외의 권능은 모두 저작권자에게 유보되므로, 저작권양도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저작권의 주체에 변동은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4. 출판권설정계약

출판권설정계약은 저작권자 또는 복제권자와 출판자 사이의 물권 유사의 권리이며 마치 부동산의 용익물권과 같은 출판권 설정을 목적

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출판권 설정계약이 독점 출판허가 계약과 다른 것은 제3자에 대한 부분이다.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제3자에 의해 침해 받았을 경우 출판권을 가진 출판자는 직접 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독점 출판계약을 맺은 출판자는 물리적 권리자가 아니라 채권적 권리 밖에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전자와 같은 조치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자가 같은 작품을 두 출판자에게 독점출판을 허가했다면 출판권을 가진 출판권자는 등록을 통해¹¹⁴⁾ 상대방에 대한 대항력을 가질 수 있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게 된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출판권 설정계약과 출판허락계약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출판허락계약

출판허락계약(비배타적 출판허락계약)은 저작권 또는 복제권자가 출판자에 대해 출판을 허락하고 한편, 출판자는 자기의 계산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의무를 지닌 계약을 말한다.¹¹⁵⁾

114) 단,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협력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

115) 잡지 및 단행본 연재계약의 경우 단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거의 없다. ‘잡지연재계약’이란 공공연히 비독점 출판허락계약으로 본다. 단, 1회성 연재로 끝난다면 비독점 출판허락계약으로 보는 것에 문제가 없지만, 장기 연재라면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 일정 기간 동안 지면을 할애하여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소개한 출판사는 프로듀서 자격으로 해당 저작물의 독점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잡지 자체로 이익을 내기가 어려워 단행본으로 되어서야 비로소 이익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기에 이러한 독점성에 대한 주장에 더욱 설득력이 있다. 결국 여기서 독점이라는 것은 연재가 완료된 것을 조건으로 이것을 서적으로 출판하는 것에 대한 독점이라 할 수 있다. 연재출판사에서 서적 출판 부문이 없는 경우 타사에서 서적이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서적으로 출판하기를 희망하는 회사는 처음 연재를 한 잡지나 신문에 대해 독점의 포기 또는 양도를 요구할 것이다.

단발성 작품 게재는 비독점 출판허락이라고 했지만 적어도 이것은 경합하는 타 잡지와 신문 등에 합리적인 기간동안 게재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의무를 저작자가 갖는 형태의 한정적 독점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작가가 A잡지에 작품을 발표 후 바로 B잡지에 동일 작품을 게재하고 싶은 경우, A잡지는 한정적 독점을 근거로 작가에 항의할 수 있다. 또, ‘경쟁 잡지와 신문’ 중에는 집필자 자신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등도 포함된다. 무료로 공개한다는 점에서 ‘타 잡지와 신

출판허락계약 중에는 특약에 의하여 출판자에 대한 동일 저작물 외의 출판자에의 출판허락금지의무를 갖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의무가 저작권자에게 부과된 허락계약을 독점적(배타적) 출판허락계약이라 한다. 출판기업의 투기적 성격으로부터 본다면, 출판자가 출판권의 설정을 받지 않으면서도 계약에 의한 독점적 지위의 확보를 피하려 하는 것은 당연하고, 실제 이 특약이 이용되는 예는 많다.

5. 소 결

출판계약의 유형에 따라 이용권자와 제3자에 대한 대응, 계약목적에 대한 차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9> 저작권 이용계약의 구분

구 분	이용권자		출판권 설정자	양수인
	단 순	독 점		
내 용	저작권자가 복수인에게 이용허락 가능	저작권자가 특정이용자에게만 이용허락	복제·배포권자가 출판사에 독점출판권 설정	사용, 수익, 처분 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
성 격	채 권		물 권	
제3자에 대한 대응	권한 없음	저작권자에게 대응 요구	출판권자로서 직접 구제	저작권재산권자로서 직접 구제
근 거	저작권법 제46조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법 제45조

자료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캐릭터와 저작권”, 2002, 80쪽.

문'과는 다르지만, 기사 집필을 의뢰해서 원고료를 지불한 측에서 보면, 관련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계약매뉴얼』, 2006, 232쪽.

<표-20> 출판목적 계약의 종류와 차이점

구 분	내 용	효 과	기 간
저작권재산권 양도계약	저작권재산권로부터 저작권재산권 전부를 출판권자에게 양도하는 물권계약 (승계적 이전)	- 원칙적으로 출판의무 없음 - 저작권재산권 전부를 독점·배타적으로 행사 - 단독의 양도·입질 - 제3자 침해시 직접구제	저작권재산권과 동일
복제·배포권 양도계약	저작권재산권자(또는 복제·배포권자)로부터 복제·배포권만 양도하는 물권계약 (승계적 이전)	- 원칙적으로 출판의무 없음 - 저작권재산권 중 복제·배포권을 독점·배타적으로 행사 - 양도·입질시 복제권자 동의 필요 - 제3자 침해시 직접구제	저작권재산권과 동일
출판권설정 계약	출판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적 계약 (설정적 이전)	- 출판의무 있음 - 녹음·녹화권을 제외한 복제·배포권 독점·배타적 행사 - 양도·입질시 복제권자 동의 필요 - 제3자 침해시 직접 구제	특약이 없으면 3년
출판허락 계약	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 출판의무 있음 - 계약상의 출판할 권리만 보유 - 양도 등에 복제권자 동의 필요 - 제3자 침해시 복제권자 통해야 청구 가능	계약상의 약정기간

자료 : 이호흥, 『저작권모델계약서 I - 출판권설정계약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4, 60쪽.

제 2 절 저작물의 이용과 보상

I. 저작물이용의 보상금 문제

계약체결시에 저작물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보상금)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얻으리라고 예상되는 수익을 기초로 산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작물의 가격은 이용방법에 따라 일정하지 아니하고 수요자의 취향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예상과 빗나가는 때가 많고 처음에 정한 예상가격이 실제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그만큼 저작자는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계약체결시에 약정한 보상금이 실제로 얻은 수익(실제수익)에 비하여 상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합의한 보상금을 사후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계약의 원칙(계약의 안정성)에 의하면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계약 내용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저작물의 특성을 감안해서 계약체결시에 정한 보상금이 그 저작물을 이용해서 벌어들인 수입에 비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도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수정·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II. 저작권 사용료 징수체계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신탁 관리업은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 반면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신고사항으로 되어있으며, 현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등록된 저작권신탁관리기관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가 있다.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경우에는 약 370개의 업체가 신고 된 상태이다.

1.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서는 저작권사용료 징수기준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있다. 한편 사진, 미술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사안마다 회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작권사용료 기준에는 재방송료, 넷트사용료, 미주비디오사용료, 복제·배포사용료, 인터넷 사용료가 있다. 재방송료에 근거가 되는 재방송이란 방송사가 최초로 실시하는 전국동시중계방송을 본방송이라고 할 때 본 방송 이외에 실시하는 모든 방송을 의미한다.

<표-21> 재방송료

KBS, MBC	기본 극본료의 30%
SBS	기본 극본료의 25%
iTV, EBS	기본 극본료의 20%

넷트사용료란 현재 MBC 프로그램을 받아 방송(net방송)하는 전국 19개 지역 MBC와 SBS 프로그램을 받아 방송하는 전국 9개 지역민영 방송사의 사용료를 말한다.

<표-22> 네트사용료

지역 MBC	기본 극본료의 15%
지역민방사(SBS)	기본 극본료의 13%

미주에서의 방송 프로그램 사용의 대부분은 비디오 복제, 배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KTE, MBC America, SBS International 등 미주 방송 3사는 미주의 각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배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배포를 담당하는 자가 프로그램 테이프를 복제하여 각 소매점에 공급하면 교민들은 최종적으로 소매점에서 비디오를 대여하게 된다. 따라서 미주 비디오 대여는 총 3단계의 복제, 배포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는 협회와의 사용료 기준에도 반영되고 있다.

현재 미주 비디오 사용료의 지급률은 비디오매출액(각 미주 배포권 자가 방송사에 지불하는 판권료) 5.5%의 3배액 즉 16.5%이다.

복제, 배포 사용료에서 말하는 복제, 배포란 프로그램이나 대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녹음, 녹화, 인쇄 및 기타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으로서, 각 방송사 및 방송사와 계약을 맺은 제3자가 프로그램을 국내 외에 공급할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표-23> 복제, 배포 사용료

공급형태	사용료 기준
해외방송사 및 유선방송사에 제공시	드라마 프로그램 : 공급금액의 3.5% 드라마 이외 프로그램 : 공급금액의 3%
국내외 홈비디오 등으로 일반 공중에게 제공시	공급금액의 4.5%

공급형태	사용료 기준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국내에서 복제판매를 허용하여 배포하는 경우	공급금액의 5.5%
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에 공급시	공급금액의 6%
방송 후 그 방송대본을 이용하여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복제, 배포하는 경우	공급금액의 2.5%
CD-ROM 타이틀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	공급금액의 5.5%
DVD, VCD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	공급금액의 4.5%

3.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

시나리오작가들의 모임인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또는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서 저작권사용료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4.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공중복사기에 의한 복사가 사적 사용이라고 볼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나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그 권리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임의단체이다.

현재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학술정보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사용료는 개별허락계약인지 포괄허락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표-24> 개별허락계약의 사용료

도서 및 학위논문	복사	1면당 5원
	전송	1면당 10원
정기간행물	복사	1면당 5원
	전송	10면 기준 1건당 기본료 500원(추가 1면당 10원)
사진, 미술, 음악저작물(음악저작물은 문헌형태의 악보복사 및 전송에 한정)	저작권자와 협의한 금액	

<표-25> 포괄허락계약의 사용료

실액방식	이용자로부터 제출된 복사 전송의 실태보고에 의거하여 개별허락계약상의 단위요금을 기준으로 해당기간의 사용료 산출
정액조사방식	이용자가 미리 행하는 복사 전송의 실태에 관한 표본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개별허락 계약상의 단위요금을 기준으로 연간 사용료를 산출
간이방식	미리 정하는 조사 대신에 이용자가 신고한 복사, 전송 이용 상황, 업태 등을 감안하여 개별허락계약상의 단위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자와 협의하여 연간사용료를 정함

Ⅲ.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문제

1. 사적복제의 허용과 한계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0조).

종래의 저작물 이용형태는 출판물, 판매용 음반 등의 구입과 같이 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형태의 이용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적인 복제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이라는 것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복제기술의 발달과 그것의 대량보급 때문에 사적인 복제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 이용의 주된 형태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사적 복제와 관련된 저작물의 이용은 가정에서 신속하고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만큼 그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설사 사적 복제를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가 미치는 것으로 저작권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상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사적 복제에 대한 책임 추궁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2.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배경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 바로 위와 같은 사적복제의 허용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복사기·녹음기·녹화기와 같은 복제기거나 녹음테이프·녹화테이프 등과 같은 복제용 주변기기를 구입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책이나 음악, 영화 등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게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기기를 구입하는 사람이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¹¹⁶⁾

이것은 저작권법이 허용하고 있는 사적 복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되는 동시에 간접적으로 조직적·영업적인 불법복제에 대한 대책이 되기도 한다.

한편, 이러한 부과금제도의 의의를 저작물의 사적 복제로 인한 권리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한다면, 복사기에 의한 출

116) 오승중·이해완, 앞의 책, 364쪽.

판물 등의 복사에 대해서는 부과금제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전자복사기의 보급이 녹음·녹화기처럼 일반 국민(가정)에까지 널리 보급되어 있는 않은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할 때, 출판물 등의 복사는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복사 가게의 힘을 빌려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본인 또는 그의 지배하에 있는 자에 의한 복제일 것을 요구하는 사적 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사기에 의한 도서의 복제는 진정한 의미를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도서 복사의 경우에는 저작권자 등의 저작권(복제권)이 여전히 유효하게 행사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서 부과금제도를 통한 보상의 차원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부과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 대상을 주로 녹음·녹화기 및 녹음·녹화용 공테이프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운영상황

(1) 보상유형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보상에 대한 유형을 보면, 첫째 저작권자나 신탁단체를 통하여 직접이용허락이 실시되는 경우, 둘째 저작재산권자 불명 등의 사유로 법정허락을 받는 경우, 셋째 저작권법 상 저작재산권 제한에 의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사전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고 사후적으로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료를 지급해야만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개개의 권리자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제권 집중관리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1995년 현재 부과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모두 17개국에 이르고 있다.¹¹⁷⁾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제30조에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조항에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복사기에 의한 무단복제 방지조항을 만들기는 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떠한 형사적 처벌 또는 민사적 구제가 가능한지 명문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즉, 사업장 내에서 공중용 복사기의 이용은 저작권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아니므로, 당연히 저작재산권으로서의 보호가 인정되나, 그 침해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처벌이나 벌금의 부과, 회사 종업원의 침해시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보호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무단복사에 따른 별도의 처벌규정이나 구제절차의 규정은 없는 것이다.

(2)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통한 보상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비롯한 저작권 관련 단체들이 저작권보호센터를 발족하여 단속 및 계몽에 힘쓰고 있으며, 한국복사전송관리센터에서 권리자를 대신하여 일괄적으로 이용자와 복사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의 집중관리를 하고 있다. 복사기의 이용허락계약에 따른 이용료의 산정은 종업원 수 또는 복사기 수량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17) 미국은 저작권집중처리기구(CCC)를 1977년에 설립하여 약6,000여개의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독일 역시 1958년 비지 보르트(VG-Wort)라는 복사권처리기구를 설립하여 개별기업의 중심체인 산업연맹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어문 저작권의 관리단체인 일본복사권센터(JRRC)를 1991년에 설립하여 현재 약 4,000여개의 기업체 및 공공기관과 복사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계약의 따른 저작권 이용료의 산정 내용을 보면,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연구소 등을 제외) 직원 1인당 연간 2,000원 수준이며, 복사기 수량을 기준으로 하면 대당 연간 30,000원 정도의 낮은 수준의 이용료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률이 극히 낮은 실정이다.¹¹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 의하면 저작권법에 따라 2006년 말까지 센터와 계약을 맺은 곳은 정부기관의 경우 문화관광부 등 8개 기관, 기업체 중에서는 유한킴벌리와 풀무원 등 2개 업체를 포함 총 10개소에 불과하다. 전국 대학가 주변 1천500여 개 복사업소는 센터와 저작권 사용료 지불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¹¹⁹⁾

(3) 사용료 지급 형태

1) 이용허락에 의한 사용료 지급

이용자가 저작권이 신탁된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탁단체로부터 허락을 얻게 되며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용료가 저작권자에게 지급된다. 신탁되지 못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직접 저작권자를 찾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때에 이용료는 전적으로 저작권자 개인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계약에 의한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저작권자의 보상금은 공탁된다.

2) 저작재산권제한에 의한 보상금 지급

현행 저작권법에서 특정한 사용목적 등에 기하여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보상금 제도는 저작권법 제25조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에 따른 보상과 제31조 도서관에서의 복제 등에 따른 이

118) <http://www.copyright.or.kr/>

119) 연합뉴스, 2006. 12. 7.

용의 보상 제도이다. 학교교육목적 등의 이용에 따른 보상은 두 가지이며, 첫째,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에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도록 한 것과, 둘째,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등에서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하는 경우에 보상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이용에 따른 보상은 도서관 등이 소장한 도서를 이용하여 원문 DB를 구축하고 도서관 내 또는 도서관간에 열람, 출력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보상의 지급 기준은 문화관광부장관에 의하여 매년마다 고시된다. 보상은 이용자 또는 이용기관에서 지정단체에 납부하게 되고 지정단체에서 3년에 걸쳐 개별저작자에게 분배하게 되는데 2007년도부터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이상의 3가지 보상금 징수, 분배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¹²⁰⁾

제 3 절 전자책의 저작권

I. 전자책 저작권의 법적 보호

1. 서 설

전자책이 안고 있는 저작권법상 문제점의 근간은 ‘출판권’과의 괴리에서 시작된다. 즉, 2000년도 개정 저작권법에서 신설하고 있는 ‘전송’의 개념과 저작재산권상의 ‘전송권’이 기존 출판권 개념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출판과 전자책 생산이 별개의 법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는 전자책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특성은 곧 ‘전송’의 개념에는 부합하지만 ‘출판’의 개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디지털 저

120) 김동현, 『지식재산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29쪽.

작환경의 발전으로 인하여 새롭게 등장한 전자책, 전자신문 등과 같은 디지털 출판을 아날로그 출판에 터 잡은 저작권법상의 출판개념으로는 이를 적절히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2. 전자책의 권리와 출판계약

전자출판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작권자와 출판사, 전자출판사의 저작권 계약의 형식과 각 이해당사자의 권한부분이라 할 수 있다.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계약한 저작자와 출판사와의 법률관계가 전자출판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또한 최근 전자출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출판전문출판사와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54조 제1항에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²¹⁾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은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을 출판의 개념에 포섭하고 있지 못하므로 기존의 출판권설정계약만으로는 전자도서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설정출판권에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불문하고 전자적인 형태로 출판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와 저작인접권자에게 물권(物權)에 상당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121)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1항에서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 등을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편집, 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에 한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6항에서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있는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만일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경우 직접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또 이러한 권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하거나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접권을 양도함으로써 행사하게 된다. 이용자는 권리자와 이용허락계약이나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완전한 이용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양도계약에 있어서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간적·공간적으로 조건을 정하게 마련인데, 이 경우 이용자는 해당 양도에 대하여 주어진 조건 안에서 직접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용허락계약의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채권계약에 불과하므로 제3자의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권리자만이 물권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곧 이용자는 권리자의 처분에 맡겨 간접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결국 계약상 침해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 규정과 구상권 규정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직접 침해자를 상대로 권리구제를 받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출판사들이 이른바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출판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판사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출판권설정계약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출판사는 제3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직접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설정출판권은 곧 물권적인 성격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정출판권은 설정자(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사이에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가 설정되는 것으로서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전자책의 탄생과 발달은 이러한 출판권설정계약이 법률적으로 보완되어야 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책은 그것의 기술적 특성상 기술적 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그리고 보안의 문제 등에 있어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저작권법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전자책 관련 저작권법 이외의 규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하 ‘온디콘법’이라 함)』 제18조는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온라인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온디콘법 제2조 제1호, 제2호). 따라서 전자책은 그것이 문자 또는 영상의 싱글미디어 형태의 것이거나 또는 멀티미디어 형태의 것이어도 온라인콘텐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²²⁾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는 그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데 반하여, 온디콘법에 의한 보호는 디지털화하는 과정에 상당한 노력만 투입되었다면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보호요건이 낮다.

온디콘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자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이며, 그 보호기간은 온라인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로부터 5년 간이다. 따라서 전자책 출판자는 5년 동안은 그 전자출판물의 복제

122) 안효질, “전자책의 출현과 저작권법의 대응”, 국회도서관보, 2003. 5., 25쪽.

또는 전송에 대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온디콘법 제21조에 의하여 전자책 출판자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온디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II. 전자책의 기술적 보호

1. 전자책의 특성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

전자책은 그 특성상 복제·배포가 쉽다. 이러한 전자책의 특성으로 인하여 출판업자들이 전자책을 판매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불법 다운로드에 익숙해진 독자들은 정당한 가격으로 책의 구입을 하지 않으려하기도 하고 디지털의 속성상 한번 인터넷에 공유되면 무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책 상당수가 부분 인쇄가 가능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한다.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공익적 목적이 큰 도서관에서의 복사 및 전송은 저작권법상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구매하면서 전자책업체와 인쇄 범위를 정할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출판사와 전자책업체의 계약서에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전자책업체가 인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구매하면서 전자책업체와 인쇄 범위를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백히 저작권 침해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전자책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초기에 인쇄 기능을 개방적으로 허용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후 개별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미미한 국내 출판계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¹²³⁾¹²⁴⁾

적절한 보상이 없는 상태의 불법적인 복제와 배포는 당연히 통제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기술적인 보호조치와 저작권 관리정보의 보호가 필요할 것이다.

저작권법 제124조에서 기술조치의 무력화와 관리정보의 제거·변경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와 유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 활용되고 있다.

2. 미국의 저작권관련 기술적 보호

미국은 DMCA에 의하여 WIPO 저작권협약의 기술조치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고자 하였다.¹²⁵⁾

DMCA에 의하여 새로이 규정된 미국 저작권법 제1201조는 기술조치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i)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조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금지되며(1201(a) (1)(A)), (ii)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기술 등이 금지되며(1201(a)(2)), (iii)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술

123) 최근 ‘학술분야 전자책 구매 컨소시엄’은 가입한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전자책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전자책 구매를 일괄 대행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한다(전자신문, 2007. 4. 25). 국가의 중요한 학술 관련 정보와 지식이 공신력 있고 효율적인 채널을 통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컨소시엄이 활성화되면 한 동안 인터넷의 발달과 불법 복제로 고전해온 국내 학술분야 출판사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4) 서계원, “저작물 이용 및 보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식재산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2007. 10., 42쪽.

125) 각 국가 간의 최종적인 타협에 의하여 성립한 WIPO 저작권협약 제11조는 “계약당사국들은 본 조약과 베른협약에 따라 저작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작자가 사용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와,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가 허락하지 않거나 법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기술 등이 금지된다(1201(b)(1)). 이러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①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조치에 관한 것(1201(a)(1)(A))과 ②'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조치에 관한 것(1201(a)(2), 1201(b)(1))으로 구분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①기술조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것(1201(a)(1)(A), 1201(a)(2))과 ②기술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의 금지에 관한 것으로 구분된다.

디지털 환경하에서 저작권자는 디지털형태로 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술적인 조치(technical measures)를 취하게 마련이다. 기술적인 조치는 저작물의 복제물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전송, 배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기술적인 조치의 예로서는 암호화, SCMS (serial copy management systems),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¹⁾ 디지털 서명(digital signature), 비밀번호(password), 비밀번호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기술적인 조치는 저작권의 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기술적인 조치만으로는 저작권이 충분히 보호될 수 없다. 우선 다른 종류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우회하여(bypass)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작물을 보호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기술을 불법화함으로써 기술적인 조치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기술적인 조치의 보호에 관한 발상은 디지털 형태의 내용물(디지털 저작물 또는 디지털 콘텐츠)을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화와 같은 기술이 사용되면, 이 기술을 해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따라서 침해를 가능토록 하는 이러한 기술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시작된다. 곧 기술적인 조치의 보호는 끊임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행하여지는 기술적인 진보에 법이 개입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에 대하여 접근통제의 무력화 도구의 거래행위 규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복제통제 무력화조항 삭제는 논의되고 있다.

접근통제에 관한 기술조치의 무력화금지에 관한 조항은 DMCA 이후 2년 후, 곧 2000년 10월 28일에 발효되었다(1201(a)(1)(A)). 또한 이 조항은 일정한 유형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다(1201(a)(1)(B)). 곧 이러한 유형의 저작물 이용자가, 접근통제에 관한 기술조치의 무력화를 금지시킴으로써, 침해가 되지 않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에 대해서는 무력화금지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무력화금지에 관한 조항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새로운 권리가 부여되는 만큼 저작권자 및 저작물 이용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고,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DMCA는 어떠한 저작물이 무력화금지에 관한 예외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하여 DMCA는 DMCA 발효 후 2년 동안 Librarian of Congress가 Register of Copyrights의 권고에 따라 이에 따른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1201(a)(1)(C)). 이에 따라 2000년 10월 27일 저작권을 담당하는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은 예외와 관련되는 규칙¹²⁶⁾을 발표하였고, 이 규칙에 의하여 예외에 해당하는 저작물로서 (i) 여과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filtering software applications)에 의하여 봉쇄된 웹사이트의 목록으로 구성된 편집물과 (ii) 오작동·손상·폐기 등에 의하여 접근을 허용하지 못하는 접근통제 메커니즘에 의하여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포함)이 지정되었다.

126) Library of Congress, Copyright Office, Exemption to Prohibition on Circumvention of Copyright Protection Systems for Access Control Technologies, 37 CFR Part 201, 65 Fed. Reg. No.209, 2000.

제 4 절 저작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제도

I. 출판과 저작권 침해

1. 출판 관련 저작권의 침해

콘텐츠의 디지털화는 고속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 이외에 저작권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유통환경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앞서 살펴 본 공정이용의 문제를 비롯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수단의 현실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출판업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예컨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침해, 출판권자의 설정출판권의 침해,¹²⁷⁾ 무단 인쇄, 무단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작권의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실손해의 증명에 대한 어려움으로 실질적인 손해배상제도로써의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법원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서 용이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사용료 기준을 자주 이용한다.¹²⁸⁾ 그러나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적법한 이용을 상정한 대가에

127) 설정출판권은 출판자가 복제(배포)권자와 저작권법 제54조에 의한 출판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출판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직접적인 배타적 지배권이다. 그 권리의 성질은 준물권적 권리로 설정출판권자가 아닌 자가 그 저작물을 출판하면 설정출판권 침해가 된다.

128) 이러한 점은 통계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와 유사한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국 모두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사용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인용한 판례가 전체의 50% 이상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0%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자료는 『한국저작권관계법』 제6권~제10권의 2000년 이후 판례 중 손해배상을 인용한 판례 37건에 대한 결과이며, 일본의 경우는 『최신 저작권 관계

불과하고 권리자의 실손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권리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권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배상될 수 있도록 손해액의 입증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2. 저작권 침해의 특성

(1) 침해의 용이성

최근 저작물이 아날로그 형태와 더불어 디지털화된 형태로 존재함으로써 인해 그 침해가 보다 용이해졌다. 특히 디지털화된 저작물은 송신 혹은 전송이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자 혹은 저작인접권자는 저작물에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취해지더라도 그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그 보호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전달되고, 편집 등에 의해 다른 형태로 수정, 복제 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 침해가 상당하다 할 수 있다.¹²⁹⁾

(2) 침해의 광범위성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의 저작물의 경우 침해 등에 있어서 한정된 수량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저작물의 거의 대부분이 디지털화 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그 침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음악장르일 것이다. 즉, CD로 만들어진 음악은 MP3파일로 변환이 되고 이러한 변화된 파일은 소리바다와 같은 P2P서비스를 기반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침해는 너

판례집』 제1권~제10권의 판례 중 손해배상을 인용한 판례 89건에 대한 결과이다. 作花文雄, 『註解著作權法』(제3판), きょうせい, 2004, 482面.

129) 윤선희, “저작권법의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과제와 전망”, 『지적재산권법의 손해배상책임제도에 대한 과제와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2002. 11., 80쪽.

무도 광범위하여 그 침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되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들은 과연 어디까지가 자신의 손해의 범위인지를 밝힌다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3) 침해의 발견의 어려움

최근에 등장한 P2P서비스라든지, FTP에 의한 파일 전송, E-mail에 의한 저작물 이동을 살펴보면 그 익명성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즉, 저작권침해를 통해 장시간 사업을 한다든지, 장시간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 침해자를 찾아내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강력한 장비를 이용해 순간적 혹은 단기간에 특정한 혹은 특정다수, 불특정 다수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의 발견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는 저작권침해에 대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저작권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침해되는지 파악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러한 파악의 불용이성은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소송에 있어 일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4) 침해액산정의 어려움

광범위하고 발견이 어려운 저작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손해는 적을 것이다. 하지만 아날로그시대를 기준으로 제정된 법 하에서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손해의 보상을 적절하게 해줄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기존의 책의 부수나 음반의 판매량의 손해를 뛰어넘어 이제는 얼마만큼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졌고, 얼마만큼의 클릭이 이루어졌는지가

더욱 중요해 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경우 더욱 심각해진다. 즉, 디지털화된 정보는 계속해서 복제를 하더라도 원본의 손상 없이 복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복제의 부수를 산정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그 복제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5) 손해의 회복 불가능성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유상·무상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2조). 이러한 이용허락을 받은 타인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에는 이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하지만 저작물을 이용하는 비용보다 저작권을 침해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다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보다 불법적인 이용을 한 후 이용비용보다 적은 손해배상을 해주는 방법을 취하게 될 것이다. 저작권법상 제125조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을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규정은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즉,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발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발각되어 손해를 배상하게 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저작권자의 초과 손해만을 배상하면 되기 때문에 저작권의 침해적 이용은 이용허락을 통한 이용보다 많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음반이나 게임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이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짧은 기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발각되지 않고 그 저작물을 이용하여 사업을 한다면 저작권자가 입을 손해의 배상은 힘들어지게 된다.¹³⁰⁾

130) 윤선희, 앞의 논문, 82쪽.

II.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제도

1. 서 설

지적재산권법의 손해배상제도는 지적재산이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및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을 지적재산권법의 손해배상제도에서도 갖추어야 하는데, 지적재산의 무형적 특성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예컨대, 침해행위의 간주, 과실의 추정 등)과 손해의 발생 및 손해의 산정에서 유체물의 경우보다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해 왔다. 지적재산권법의 일실이익 손해에 관한 배상제도는 민법 제750조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주된 내용은 일실이익의 배상근거와 배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것이다.¹³¹⁾

즉,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허락범위를 벗어나 이용하는 행위 등의 저작권침해행위는 불법행위의 유형에 불과하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¹³²⁾

2.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의 내용

(1) 손해배상 관련 규정의 변천

1957년 최초의 저작권법 제정이후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규정은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131) 이에 관한 상세는 현대호, “민법전의 손해배상제도와 지적재산권법의 손해배상제도”, 『지적재산권법의 손해배상제도의 과제와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2002. 11., 32쪽. 참조.

132) 박성수, “저작권침해와 법정손해배상제도”, 『계간 저작권』, 제78호(2007년 여름호), 39쪽.

1957년 제정법 당시의 손해배상 관련 규정은 ‘민법, 기타법령의 준용’(제62조) 규정과 ‘부정출판물의 부수추정’(제63조) 규정이 전부였다.

1986년 전부개정에서는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침해자 이익액의 손해액 추정 규정(제93조 제2항)과 이외에 권리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제93조 제3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뼈대를 만들었다. 그밖에 부수추정규정도 확대 변경하여 부정복제물의 부수 등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출판물의 경우 5천부, 음반의 경우 1만매로 추정됨을 규정하였고(제94조), 침해정지청구권 및 침해의제행위 등도 이때 신설하였다. 2000년 일부개정에서는 1986년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과 제3항의 중복청구 논란을 정리하고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초과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밖에 저작권 등록된 저작물 등을 침해한 경우 과실을 추정하는 특례규정도 신설하였다. 2003년 일부개정에서는 부정복제물의 부수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법원 재량의 상당손해액 인정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부정복제물 부수추정규정과 관련해서는 대상 외의 적용이 곤란하며, 숫자가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있어왔기 때문이다.¹³³⁾

(2) 손해배상 특칙

1) 손해액의 산정

손해란 저작권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저작권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상태와 침해행위가 이미 발생한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액이고 손해의 배상범위는 침해행위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즉,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한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손해배상의 산정에 있어 최소 배상금을 예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

133) 이영록, 『지식재산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10., 72쪽.

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손해의 입증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가진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위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부족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지적재산권의 특징상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와 확대손해 등을 파악한다는 것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액의 추정규정 등을 두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특히 요즘과 같은 정보통신 사회에서는 그 파악이 더 힘들어지고 있어 문제라 하겠다.

2) 손해액의 추정

저작권법은 제125조에서 저작재산권 그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제외)를 가진 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동법 제126조에서는 부정복제물의 부수 등에 관한 추정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는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 등의 산정이 어려울 경우 출판물의 경우 5,000부, 음반의 경우 1만장이 침해되었다고 추정한다.

이러한 손해액의 추정과 불법복제물의 부수추정과 더불어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법은 저작권자의 지위를 높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의 경우에도 그 보호의 정도가 오늘날의 저작권 침해현상에 대해 적절하게 배상해 주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¹³⁴⁾

3) 기 타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127조에 의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자기의 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9조).

Ⅲ.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1. 한·미 FTA와 법정손해배상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란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 관하여 손해액의 상·하한을 미리 법령에 규정해 놓고 권리자로 하여금 실손해 대신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¹³⁵⁾

미국 저작권법상의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련하여서는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¹³⁶⁾ 국내의 대륙법적 체계

134) 윤선희, “저작권법의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과제와 전망”, 『지적재산권법의 손해배상책임제도에 대한 과제와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2002. 11., 80쪽.

135) 강동세, “한미 FTA 협상과 문화콘텐츠 보호”, 『한·미 FTA와 문화예술법의 발전방향』, 한국법제연구원, 2007. 6., 19쪽.

136) 반대론에 대한 근거로는 ①법정손해배상에 대한 외국 입법례가 드물고(일본이나 독일에서도 채택하지 않고 있음), ②다른 지적재산권과의 균형이 맞지 않으며, ③도입하게 되면 아직 외국 저작물을 많이 이용하는 사정상 외국 저작권자에게 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점 등이 있으며, 찬성론에 대한 근거로는 ①법정손해배상제도의 법제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②외국 입법례의 다소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도는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③현행 손해배상제도의 불합리성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 등이 있다.

와 조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도입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가 2007. 4. 2. 타결되었고,¹³⁷⁾ 한미 FTA의 내용 중 문화산업과 관련된 많은 내용 중 지적재산권 집행 부문의 강화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따른 후속 입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7월 2일에 공개된 한미 FTA 제18.10조 제6항에 의하면, “민사·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에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 가능한 법정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에 손해배상제도를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에 부합하도록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미국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

(1) 법정손해배상액의 인정근거

미국의 연방저작권법은 실제의 손해와 이익 대신에 최저액 및 최고액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정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 이유는 실제의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법정손해를 인정함으로써 저작권자는 저작권자가 투자를 하여 저작권을 집행토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며, 법정손해에 대한 위협에 의하여 침해자의 부당이익을 방지함으로써 침해를 억제할 수 있다

137) 자유무역협정(FTA)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중을 이루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2002. 10. 25. 타결되어 2004. 4. 1. 발효된 한국과 칠레간의 FTA를 비롯하여 한국과 싱가포르간의 FTA(2006. 3. 2. 발효), 한·EFTA간 FTA(2006. 9. 1. 발효), 한·ASEAN간 FTA(2007. 6. 1. 상품발효)가 있다.

는데 근거하고 있다.

(2) 법정손해배상액의 산정

저작물의 침해와 구제에 대하여는 제504조에서 법정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는데,¹³⁸⁾ 내용을 보면,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침해

138) 제504조 침해에 대한 구제 : 손해 및 이익

(a) 총칙

본 편 법전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한 책임을 진다.

- (1) (b)항에 규정된 저작권자의 실제 손해 및 침해자의 추가이익이나, 또는
- (2) (c)항에 규정된 법정손해.

(b) 실제 손해 및 이익

저작권자는 침해로 인하여 입은 실제 손해와 이러한 침해행위로부터 발생한 이익으로서, 실제 손해액의 계산에 있어서 참작하지 아니한 침해자의 이익을 회복할 수 있다. 침해자의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저작권자는 침해자의 총수입의 증거서류만을 제출하고, 침해자는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이외의 요인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부분을 증명하여야 한다.

(c) 법정 손해

- (1) 본 항 (2)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는 최종판결이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그 선택에 따라 실제 손해와 이익에 갈음하여, 저작물 1개에 관한 소송에 관련된 모든 침해로서 침해자 1인이 단독으로 책임을 지거나 2인 이상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행위에 대하여 750달러 이상 30,000달러 이하의 금액 중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정손해의 판정액을 회복할 수 있다.
- (2) 저작권자가 입증 책임을 다하고 법원이 침해행위가 고의로 행하여졌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법정 손해의 판정액을 150,000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다. 침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경우, 침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법정 손해의 판정액을 200달러까지 인하할 수 있다. 침해자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사용한 것이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사용이라는 믿음에 의한 결과이고 이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침해자가 다음인 경우에는 법원은 법정 손해액을 감면하여야 한다. (i) 비영리적 교육기관, 도서관, 또는 기록보존소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복제함에 의하여 침해를 하였거나 이러한 교육기관, 도서관, 또는 기록보존소 그 자체, 또는 (ii) (제118조 (g)항에 규정된) 공영방송국의 비영리적 활동의 일부로서, 발행된 비연극적 어문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이러한 저작물의 실연을 수록한 송신 프로그램을 복제함에 의하여 침해한 자 또는 공영방송국.
- (d)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손해 : 법원이 자신의 행위가 제110조 (5)상 면책된다는 항변을 주장하는 시설의 피고 사업자가 그의 보호되는 저작물의 이용이

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입은 실제의 손해(actual damages), 침해에 기인하여 저작권자가 입은 이익(profit), 법정손해(statutory damages)를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는 실제의 손해 및 이익을 배상 받거나 법정손해를 배상 받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1) 고의에 의하지 않은 침해

저작권자는 최종판결이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그 선택에 따라 실제 손해와 이익에 갈음하여 저작물 1개에 관한 소송에 관련된 모든 침해로서 침해자 1인이 단독으로 책임을 지거나 2인 이상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행위에 대하여 750달러 이상 30,000달러 이하의 금액 중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정손해의 판정액을 회복할 수 있다.

이 액수의 사이에서 정당한 법정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는 i) 실제의 손해 및 침해자의 이익이 입증되었고 저작권자가 이를 선택한 경우의 그 손해 및 이익과 ii) 법정손해가 인정되는 근거(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창작하고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한 동기를 주기 위한 것과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법정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법원은 실제의 손해액과 침해자의 이익을 산정하고자 노력한다. 원고가 실제로 손해를 입지 않았거나 피고가 이익을 거의 얻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을 최소한의 법정손해배상액에 한정시킨다.

둘째, 원고가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사용허락을 얻도록 하였음에도 피고가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소송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졌는데도 침해물품을 계속 판매하는 경우, 실제의 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증거발견 노력에 피고가 협력하지 않아서 이를 어렵게 한

그 조항 상 면책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경우에는 언제든 원고는 본 조 상의 손해액 보상에 더하여 관련 시설의 사업자가 최장 3년까지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그러한 이용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했어야 할 사용료의 두 배의 보상을 받을 권한이 있다.

경우 등에 대하여 법원은 높은 법정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¹³⁹⁾

2) 고의에 의한 침해

저작권자가 입증책임을 다하고 법원이 침해행위가 고의로 행하여졌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침해자가 그 재량에 의하여 법정 손해의 판정액을 150,000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다. 침해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경우, 침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법정손해의 판정액을 200달러까지 인하할 수 있다.

3. 기 타

미국의 경우에 위와 같은 민사적 구제와 함께 제506조에서 형사적 침해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상업적인 이익이나 개인의 금전적인 이득을 위하여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것을 포함하며, 특정한 180일 기간 내, 그 이상의 저작물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1,000달러 이상의 총 소매가치를 가지는 복제물 또는 음반을 복제 및 배포에 의하여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자는 법전 제18편 제2319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처벌된다고 하였다. 즉, 초범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누범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법원은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때에는 소정의 형에 부가하여 모든 침해 복제물 또는 음반과 이러한 복제물 또는 음반을 제작하는데 사용된 모든 기구, 장치, 또는 장비의 몰수, 파괴 또는 기타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39) 정보통신부, 『효과적 S/W보호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2004, 139쪽.

이러한 미국의 규정은 TRIPs협정 제41조 및 제61조의 요구치에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제61조(침해구제)에서는 “회원국은 적어도 고의로 상표 또는 저작권을 상업적 규모로 침해한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와 처벌을 규정한다. 이용가능한 구제는 이와 상응하는 정도의 범죄에 적용되는 처벌 수준과 일치하고 억제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구금 및 벌금을 포함한다. 적절한 경우에 이용 가능한 구제에는 침해상품과 주로 범죄행위에 사용된 재료 또는 기구에 대한 압수, 몰수 및 폐기를 포함한다. 회원국은 그 밖의 다른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 특히 그 침해행위가 고의적으로 상업적 규모로 행해지는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 5 절 출판관련 저작권 보호방안

I. 출판계약의 공정화

1. 서 설

우리나라는 독일과 같은 출판권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저작권법 제 7절에서 7개 조문에 불과한 출판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저작자의 지위를 배려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즉, 출판권 제도를 통한 저작자 보호의 일부조항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민법 등 일반법을 통하여 약자인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반영할 수 있으나, 일반법리가 출판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그 명확성을 결여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출판권법을 별도로 입법하여 체계적인 저작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출판계약의 명확화를 꾀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서 저작자 보호 및 공정한 계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독일 출판권법과의 비교

(1) 출판계약의 정의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출판계약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는 반면, 독일 출판권법에서는 제1조에서, 출판계약은 저작자나 그의 권리승계인이 출판자에게 특정한 조건하에 저작물에 대한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제작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고 출판자는 그에 대하여 발행과 배포에 대하여 담보의무를 지는 비전형적 쌍무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⁴⁰⁾ 즉, 출판계약에 의한 투자위험은 전반적으로 출판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 계약방식

작가와 출판사가 맺는 출판계약은 대다수 완성된 작품이거나 앞으로 완성될 작품을 전제로 하며, 그것을 서적으로 판매했을 때 얼마의 인세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명제로 한다. 그러므로 작품 완성 또는 출판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많으나, 이러한 출판계약의 관행은 상호간에 위험을 내포(사전 제작비의 지급 등에 있어서 계약의 불이행 등)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추세이다.

출판계약은 주로 출판권설정계약과 출판허락계약의 두 가지 유형이 전형적인 것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일본에서 유래된 매절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계약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¹⁴¹⁾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와

140)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의 출판에 관한 1901년 6월 19일의 출판권법상의 규정은 모두 임의규정이다.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미술과 사진의 출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다가 최근 그림책 등 전형적 출판방식으로 출판하는 경우에는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적용대상에 관해서 우리 저작권법 제57조 이하와 실질적 차이는 없다. 그러나 전자출판(electronic publishing) 즉 오프라인 제품(CD-ROM, CD-I)이나 온라인(인터넷)상에서의 복제·배포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41) 매절이란 책 판매량과 상관없이 출판자가 저작권자에게 미리 한번에 저작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출판계약시 그 대가를 인세제가 아닌 원고

같은 여러 가지 유형이 혼합하여 계약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한 유형에 속한다고 쉽게 결론내리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출판계약의 방식과 관련하여서 저작권법상에 규정이 없고, 실제로 정형화된 형식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문화관광부에서 출판표준계약서 양식을 마련하였으나, 실제 출판업계에서는 계약서를 만들지 않거나 약식 계약서로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를 보면, 출판계약에 대하여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방식의 자유), 신문이나 잡지의 기고물의 경우와 같이 묵시적으로도 체결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대부분 문서로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정형화된 서식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정형화된 서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거래약관을 규제하는 규정이 적용된다(독일 민법 제307조~제310조).

저작자들의 경험부족을 배려해서 표준계약서를 개발 보급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권리자 단체와 출판자 단체들간의 협상을 통해 개발하고 있어 저작자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체계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출판자의 의무

출판자의 가장 대표적인 의무사항으로 저작권법 제58조의 복제·배포의무를 들 수 있다. 독일에서도 출판권법에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출판자는 저작물을 합목적적이고 관행상의 방법으로 복제·배포할 의무를 지게 되며(출판권법 제14조), 출판자는 완성된 저작물

료형태로 한번에 지급하는 모든 경우를 통칭하여 매절이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번역출판의 경우에 있어서 출판계의 오래된 관행이고, 한 책에 수명의 작가가 동원되는 편집물 등의 경우에 인세산정 및 배분의 어려움이나 판매량에 따른 인세지급의 액수가 너무 적어 원고집필 및 기고의 동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홍승중·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5, 418쪽.

의 경우에는 원고가 도달함과 동시에, 분책과 같이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출판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가 각 부분을 인도함과 동시에 복제를 시작해야 한다(출판권법 제15조)고 하였다.

또한, 저작물의 형식이나 장정은 출판자가 결정하나 출판계를 지배하는 관행을 존중하고 저작물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출판권법 제14조 제2항), 새로운 철자법으로 변경할 때는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교정에 관해서도 출판자는 출판권법을 존중해야 한다(출판권법 제20조). 그러나 통상 교정할 의무를 저작자가 부담하는 때가 많다. 저작자는 교정은 하더라도 저작물을 변경할 수는 없다. 관행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범위(독일의 경우 계약실무에 의하면 조판비용 전체의 20%이내)에서는 가능하나 그 정도를 초과하여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액된 조판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법령저작물의 경우와 같이 법령이 개정되는 등 변경을 정당화 시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행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해서 저작물을 변경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조판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는다(출판권법 제12조).

이와 같이 독일의 출판권법에서는 교정, 조판비용 등 출판에 부수되는 상세한 부분까지도 법에 규정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소 결

1901년에 제정된 독일의 출판권법은 대부분 임의규정에 해당되므로 적용상의 한계는 있을 것이나, 출판계약의 당사자 간 달리 특약이 없는 경우에 법률관계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출판계약과 관련하여 단행법을 통하여 그 법률관계가 별도로 논의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저작자의 일반적인 계약법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있어왔으나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¹⁴²⁾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저작권법의 내용을 독일의 경우와 같이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저작권자의 지위보호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약관규제절차를 통하여 표준계약서의 내용통제를 하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II. 이용보상의 합리화

1. 출판계약에 대한 추가보상청구권의 도입

저작물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보상을 위해서는 계약체결시에 약정한 보상금이 실제로 얻은 수익에 비하여 상당하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독일의 출판권법과 저작권법의 입법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저작자와 행한 지급약정에 따라 보상금(인세)을 저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저작물의 인도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출판권법 제22조 제1항).¹⁴³⁾

보상의 정도는 일차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출판권법 제22조 제2항), 합의한 보상금의 정도가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일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수정을 강제적으로 청구할 수 있

142) 주로 거대회사에 해당되는 이용자 측(출판사 등)으로부터의 강력한 반대의견이 있으며, 저작자 중에서도 강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저작자의 지위와 이용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저작자 측에서도 이해관계의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143) 잡지나 신문 기고물의 경우에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때가 많다.

다. 즉, 그 수익이 사전적인 것이든 사후적인 것이든 수익과 보상금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계약내용의 수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①보상금은 판매부수의 소매가격에 인세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종량제, 비례보상제). 이러한 방식으로 보상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출판자는 매년 저작자에게 보상금을 계산하고 영업장부의 열람도 저작자에게 허락하여야 한다(출판권법 제24조). 보상금을 종량제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정액제)에는 각판마다 계산해야 하고, 보상금은 원고 인도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상금은 행(줄)으로 계산하여 정하거나, 인쇄면수로 계산하여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줄의 수나 인쇄면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저작자는 추가보상제의 원칙상 순이익의 배당에 여러 번 참가할 수 있다. 순이익의 계산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입에서 출판자의 일반경비와 지출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출판권법 제24조는 이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 출판권법은 저작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써, 출판계약에 있어 발생하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해결하고, 저작자를 강하게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에 위와 같은 추가보상청구권에 대한 규정을 도입한다면 경제적 효과가 불확실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를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저작권집중단체를 통한 이용보상의 확대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로는 대부분 저작권자와 출판자가 직접 계약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작권을 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한 경우에는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고, 출판 또는 발행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복제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국내의 어문분야 저작권신탁단체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등이 있으며, 이 중 복사기 등을 통하여 복사 이용 하고자 할 경우에 어문저작물의 복사권만을 집중관리하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권리처리 된다. 전송의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반드시 요구 된다. 처음 저작물을 출판한 출판사가 동일한 저작물을 전송에 이용한다 하더라도 저작권자로부터 전송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 대한 이용허락과 대가징수, 권리자에 대한 배분이 논리적 일관성을 갖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저작권집중관리 단체의 저작권 사용료 산정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 유사하게 저작권 사용료를 관리하는 대표적인 단체로 미국에서는 Copyright Clearance Center (이하 ‘CCC’)를 들 수 있다.¹⁴⁴⁾

CCC는 저작권자 및 출판자와 사용자 사이의 중간매개 역할을 하는 비영리기구로서 우리나라의 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즉, 복사기 등에 의한 복사행위로 인한 사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권리자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CCC에 의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첫째, 거래별보고체제(Transactional Reporting System or Pay-Per-Use Service)로서 각각의 거래별 사용료 징수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에게

144) 우리나라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저작권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와 관련된 정부기구로는 저작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저작권사무소(Copyright Office) 내의 저작권사용료조정위원단(Copyright Arbitration Royalty Panel)이 있다. 그러나 동 위원단이 강제허락과 관련된 사용료 조정을 담당하게 되고 강제허락의 대상에는 음악저작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어문저작물의 경우에는 정부기구인 동 위원단보다는 CCC에 의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한 자발적인 보고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 방법은 논문이나 기타 어문저작물의 첫 번째 면에 저작권자에 의해 결정된 사용료를 공시하고 사용자가 사용료를 CCC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징수된 금액은 CCC의 소요비용을 공제하고 저작권자에게 지급된다.

둘째, 연간사용허가방법(Annual Authorization Service)으로 거래별 보고체제에 수반되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사용자의 사용실적이나 산업계의 기분을 바탕으로 산정된 사용료를 징수하고 CCC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어문저작물에 대하여 무제한적인 사용을 인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사용료 징수방법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주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CCC는 저작물의 사용을 영업적(상업적) 사용과 학문적(비상업적 사용)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용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영업적 사용의 경우에는 거래별보고체제와 연간사용허가방법이 모두 적용되는 반면, 학문적 사용이나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용에는 거래별보고체제만을 적용한다.¹⁴⁵⁾ CCC 이외에 미국에서는 온라인 어문저작물의 출현과 더불어 온라인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새로운 단체가 등장하여 저작자, 출판자 등을 연결해 주고 있다.

CCC를 비롯한 미국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징수하는 저작권사용료는 우리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는 달리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물론 CCC는 사용자로부터 저작권 사용신청이 접수된 경우에 이에 따른 비용으로 신청건수마다 3달러의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CCC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3달러 비용 이외에 저작권 사용료로 지불해야 하는 구체적 금액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저작권자 또는 출판자에 의해 사안별로 결정되도

145) Bob Pimm, *Riding the Bullet to the E-Book Revolution*, 18 Ent. & Supports Law 1, 2000.

록 하고 있다. 즉 저작권자와 출판자의 합의에 의해 저작권 사용료가 결정된다.

이는 저작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저작권사용료를 정하는 우리 제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제도의 특징은 저작권 사용료징수를 저작권자의 재산권 행사의 하나로 이해하여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 사용료를 그 사용빈도수나 해당분야에서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기업 또는 단체이나 또는 학문적 목적을 위한 개인이나 등 사용자의 특성 또는 영리목적 또는 학문적 목적과 같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저작자의 지명도가 높아 판매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협상력이 높아지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저작권 사용료 계약을 하지만 지명도가 낮은 작가의 경우에는 낮은 저작권 사용료로 계약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저작권 사용료가 저작물에 대한 가격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¹⁴⁶⁾

이에 반하여 우리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제시하는 사용료는 일반도서나 학습물이나 하는 단순구분과 사용면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사용료를 정하고 있어 불합리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우리나라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체계는 이러한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모든 어문저작물의 재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어문저작물의 특성만을 기준으로 한 단순화된 저작권 사용료의 징수체계하에서는 징수의 용이성은 달성될 수 있지만 저작권자의 권리

146) 조현승, “출판시장과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권리”, KIET산업경제, 통권 79호, 2005. 4., 65쪽.

보호와 저작물 사용자의 보호라는 양 측면을 고려할 때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이용목적과 방법에 무관하게 저작물의 형태에 따라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예컨대, 복사물의 경우에도 학술적 혹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상업적인 경우를 구분하지 않아, 학술 논문과 일반도서에 대해 동일한 저작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문학서적의 경우에도 참고서류와 일반도서로만 구분하여 저작물의 인기도나 저작자의 지명도와는 무관하게 이들에 대해 일정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제도는 저작권 사용료 징수에 있어 저작권자의 의사와 사용자간의 합의를 통해 저작권 사용료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비교적 시장원리가 반영된 사용료를 도출하게 한다.

미국제도가 저작권 사용료 결정에 대한 거래비용을 높인다는 단점이 있으나, 저작권자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과 이용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저작권 사용료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제도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체제에도 미국의 사례를 신중히 검토하여 장점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용허락 유형의 확대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환경과 달리 거래 비용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집중관리단체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강제허락방식은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¹⁴⁷⁾

147) 방석호, “미국 CCC의 운영실태 및 활용방안”,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발전 방향 및 제안』,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003. 5., 16쪽.

한편, 독일의 경우 간접적인 강제허락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독일저작권법 제54a조는 저작물을 사진술을 이용하여 복제하는 경우에 관한 보상금규정이다. 동 규정 제1항은 통상의 어문저작물을 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금규정이며, 제2항에 의하여 복사기기의 운영자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보상금의 액수는 그 복사기기의 위치 및 통상의 사용실태 등 제반환경을 고려하여 그 복사기기사용의 방법 및 범위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저작권법 부록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액수는 당사자들이 보상금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강제허락제도에 대한 운영도 집중관리단체에 맡긴다는 전제하에 독일의 복사기기 보상금제도¹⁴⁸⁾와 같은 간접적 강제허락제도나 미국과 같이 디지털화에 따른 특수한 강제허락 유형 등을 저작권법에 첨가함으로써,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이용허락제도를 둘러싼 역할을 넓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¹⁴⁹⁾

Ⅲ. 전자책의 저작권 보호

1. 전자출판 규정의 보완

전자책이 안고 있는 저작권법상 문제점의 근간은 ‘출판권’과의 괴리에서 시작된다. 즉, 2000년도 개정 저작권법에서 신설하고 있는 ‘전송’의 개념과 저작재산권상의 ‘전송권’이 기존 출판권 개념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출판과 전자책 생산이 별개의 법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출판권과 전송권의 개념이 저작권법상 별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정할 수 없어 출판권은 설정을 목적으로, 전송권은 이용허락을

148) 안효질, “독일 VG WORT의 운영실태 및 활용방안”,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발전방향 및 제안□□,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003. 5. 19., 49~55쪽.

149) 서계원, 앞의 논문, 37쪽.

목적으로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출판과 관련한 저작권법의 규정을 보면, 출판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제57조에서 출판권의 설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출판권이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는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을 출판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지 못하므로 기존의 출판권설정계약만으로는 전자책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출판의 개념과 전자출판에 대해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1항에서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 등을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편집, 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에 한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6항에서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자출판의 개념을 저작권법에서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출판권설정계약의 정비

저작권법상의 전자출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현재 통용되고 있는 ‘표준출판권설정계약서’에도 오프라인 중심의 출판과 관련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출판된 출판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자출판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신규 저작자에 대해서는 전자출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단일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의 규정이 없이 개별계약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저작

자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나 저작권 보호의 면에서 출판사에게 유리하게 체결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개정과 함께 기존의 ‘표준출판권 설정계약서’를 전자출판을 병행할 수 있는 ‘전자출판 및 디지털콘텐츠 등 저작물 이용설정계약서’의 형태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3. 동일성 유지권의 문제

한편, 최근의 전자출판업계의 추세를 보면, 전자출판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전자출판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전자출판 관련 계약의 내용은 직접 저작자와의 계약보다는 저작자와 출판계약이 되어 있는 (오프라인)출판사를 선별하여 전자출판에 관한 전자책서비스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형태에 있어서는 저작권자가 오프라인 출판사와 이미 전자출판에 관한 저작권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¹⁵⁰⁾ 전자출판 전문출판사는 이러한 전자출판이용허락계약의 범위

150) 전자책 전문출판사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자책서비스 표준계약서의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제 3 조 갑(도서데이터 제공자)의 보증 및 의무사항

1. 갑은 본 계약과 함께 또는 본 계약 기간 동안 을에게 제공할 모든 콘텐츠(이하 ‘본 계약 콘텐츠’라 함)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적법하게 창작된 완전한 저작물임을 보증한다.
2. 갑은 을이 본 계약 콘텐츠를 기초로 eBook 및 디지털콘텐츠를 제작(2차적 저작물, 편집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등의 작성 등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본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인 지위, 권리 및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3. 갑은 갑이 제공한 본 계약 콘텐츠에 대한 권리확보 여부를 을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며, 갑이 제공한 콘텐츠의 권리확보 확인에 대한 을의 모든 의무를 면책한다.
4. 본 계약 콘텐츠의 대상이 되는 도서의 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등 수익분배는 갑의 부담으로 하여, 갑이 지급한다.
5. 본 계약 콘텐츠와 관련하여 해당 도서의 저작권자나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금지청구 등의 분쟁이 야기된 경우 갑은 즉시 그 사실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갑의 비용으로 방어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을을 면책시켜야 한다.

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자책의 형태로 저작물을 가공하여 유통시키고 이익을 분배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그런데, 전자출판전문출판사가 전자책을 서비스하기 위해 실시하는 ‘저작물 가공’에 대한 법적성질 및 권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2차적 저작물이라 볼 수 있는 수준의 현저한 변형이나 각색은 아니라 하겠으나, 전자출판의 경우 구성형식이나 내용을 융통성 있게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서비스되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따라 제공형식도 다양하게 제작되어야 상품성을 인정받게 된다. 또한, 어문저작물만을 복제·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회화, 삽화 등 미술 저작물, 영상저작물, 음악저작물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종의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즉, 저작권법 제13조에서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전자책을 위한 저작물 가공은 이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출판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의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예외규정이 적용됨을 저작권자와의 계약에서 명시하거나¹⁵¹⁾ 전자출판에 대한 개념규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형태로

을 이 을의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그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갑이 본조 1항, 2항, 3항의 보증사항 및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발생한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갑은 eBook 및 디지털콘텐츠 제작, 판매, 유통 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151) 다만,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는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로 볼 수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8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을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 바, 상업성이 강한 응용미술작품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하지 아니한 자를 저작자로 할 수 없다. 저작물인 도안의 제작자가 도안의 수정의무의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주문자측의 도안 변경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면 주문자측이 도안을 일부 변경한 다음 변경된 도안을 기업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4. 전자책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체계화

저작권법은 제2조 제28호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라 하였으며, 제124조에서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⁵²⁾

이 규정에 따르면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치가 다른 기기에 내장되어 있거나 다른 기기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체, 분석하여 보았을 때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이외의 다른 실용적 기능이 없는 장치가 포함된 경우에는 규제대

152) 저작권법상의 규정 이외에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 제1항 본문,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2조 제9호, 제7조를 종합하면 기술적 보호조치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교유번호 입력, 암호화 및 기타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 저작자에게 부여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 등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 참조.

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근거규정은 마련되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디지털 저작물의 관리와 유통을 위해 우리 역시 DRM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주체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권리의 수동적 관리나 불법 복제물 감시, 계몽 정도의 역할은 하고 있으나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게 하지 말고 권리관계의 처리까지 포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집중관리단체로의 방향 재정립이 요구된다.¹⁵³⁾ 2006년 산업기술진흥협회가 459곳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중소벤처기업은 방문자 출입통제, 보안관리 규정, 카드키 설치 등 기본적인 시스템만 보유하고 있어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기밀유출을 막을 수 있는 디지털저작권관리 시스템(DRM)과 문서관리 시스템(DMS)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각 6.1%, 27.7%에 불과하였다고 한다.¹⁵⁴⁾ 이 점에서 현행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집중관리단체로의 방향 재정립 논의는 구체화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IV. 손해배상제도의 개선

1. 서 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최근의 논의는 타결된 한미FTA의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여기에서도 한미 FTA협정문에 의거하여 2007년 9월 13일 입법예고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의 법정손해배상제도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153) 방석호, 앞의 논문, 29쪽.

154) 파이낸셜뉴스, 2007. 10. 10.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제125조의2에서는 실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소송에서 손해가 실손해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권리자가 선택할 수 있고, 법원은 법정손해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손해액을 인정하도록 하되, 법정손해액의 상한(저작물당 1천만 원, 최고 5천만 원)만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⁵⁵⁾

즉, 저작권법 개정안은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에서는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 (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 및 제85조의2 제1호 내지 제3호·제104조의2제1항 및 제3항과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 및 위반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배타적 이용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

155) 문화관광부,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참조. <http://www.mct.go.kr/index.jsp>

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안 제125조의2(법정손해액의 청구)에서는 “①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 및 제85조의2 제1호 내지 제3호·제104조의2 제1항 및 제3항·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손해액을 포함한다)에 같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이하 “법정손해액”이라 한다)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상한을 5천만 원으로 증액한다.

②2개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법원은 제1항의 법정손해액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한 저작권자 보호

따라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최저 및 최고 배상액수와 관련하여 과연 어느 정도의 금액을, 법원이 어떠한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가일 것이다. 미국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사항이다.

개정안 제125조의2에 있어 법정손해액의 범위는 미국 저작권법과 싱가포르 저작권법¹⁵⁶⁾을 조합하여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법정

156) 싱가포르 저작권법 제119조 제2항(d)에 따르면, 싱가포르를 법정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저작물 기준으로 각 저작물당 1만 싱가포르 달러, 소송기준으로 20만 싱가포르 달러를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이규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현황 및 개선 방안”, 『지식재산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60쪽.

손해액과 관련하여 원칙적인 상한 및 예외적인 경우의 상한은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반영하여 미국 법제를 거의 따른 것이라 할 수 있고, 법정손해액의 하한을 두지 않은 것은 싱가포르 저작권법의 예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법정손해액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법정손해액의 상한 뿐만 아니라 하한도 같이 둘 것을 제안할 견해가 있다.¹⁵⁷⁾

그러나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법정손해배상액제도의 핵심은 실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있어 활용하는 것이므로 실손해액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하한을 두지 않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 제도는 분명히 권리자에게 실익이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¹⁵⁸⁾

또한 실손해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현행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여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적당한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법정손해액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두는 제도하에서는 당사자가 하한선에 따라 당사자가 법정손해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이 기계적으로 판단하면 충분하므로, 하한선만을 두지 않은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법원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법원의 업무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으나 이것이 권리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

157) 이 견해에 따르면, ①한미 FTA 협정에서 “법정손해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의 상한선만을 정하고 하한을 두지 않은 것이 법정손해액제도를 통하여 권리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②권리자로서는 현행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해서도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여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적당한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법정손해액의 상한선만을 정한 개정안은 오로지 권리자를 불리하게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박성수, “한미자유무역협정과 지적재산권집행 - 저작권을 중심으로 -”, 2007년 추계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공동학술대회(주제 : 『FTA와 지적재산법 : 집행 및 구제를 중심으로』) 발표논문, 2007년 10월 4일, 60면.

158) 이규호, 앞의 논문, 60쪽.

따라서 법정손해액의 하한을 두지 않고 법원의 재량을 충분히 인정
한 점은 법원의 역할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우리나라에서는
타당한 것이라 생각된다.

제 5 장 결 론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법의 기본적인 성격이 규제법에서 진흥법으로 바뀌었고, 출판진흥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내용면에서는 아직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진흥기구 부재의 문제, 전자출판물의 유통 및 전자도서관의 문제, 일몰법이었던 도서정가제의 계속 유지에 대한 문제, 청소년보호법상의 간행물윤리위원회 규정을 진흥법 체계에 통합시킨 문제 등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남아있고, 출판업계 사이에서도 온·오프라인 출판업자들 간의 입장이 달라 체계적인 진흥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바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진흥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진흥기구가 없는 문제에 대하여, 진흥기구 설치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의 출판관련 공익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진흥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가칭)출판진흥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현행법상의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가칭)출판진흥위원회 내의 유통정책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며, 독서진흥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서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던 양서권장 사업은 독서진흥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본래적 설치목적인 간행물의 심의에 더욱 전문화된 기구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최근 전자출판 및 전자책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전자도서관의 확대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제2항의 도서관 안에서만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관외 복제, 전송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저작권자에 대한 경제적 손실 우려가 있으므로 관내이용과 관외이용에 대해 보상금을 차등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책의 무단인쇄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DRM 등 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인쇄요금의 적절한 부과를 함께 규정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는 최근 개정으로 온·오프라인 서점에 불공정하게 적용되었던 할인허용의 문제를 시장경쟁 논리에 일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온·오프라인 서점의 동일한 할인허용은 다른 의미로는 도서의 거품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도서정가제의 본래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1항에 출판자가 가격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즉 최종소비자 가격을 출판사만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출판사가 정한 가격에 도서를 판매해야 한다는 사항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간행물심의는 현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열거된 간행물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유형간행물 등을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간행물 등급분류기준과 관련하여서도 각 매체물간에 등급분류의 동일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므로 각 매체물에 대한 근거법의 소관부처 간 합의를 통한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저작권법에 있어서도 저작자 보호를 위한 출판계약의 공정화 문제,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문제, 전자책의 저작권 보호 문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문제 등 저작자와 출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하여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출판계약에 관한 일반법이 없이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저작권법에는 출판계약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도 없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규정을 독일 출판권법의 경우와 같이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앞서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해 서면계약을 일반화하도록 하고, 약관규제절차를 통하여 표준계약서의 내용통제를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저작자 보호를 위하여 출판계약 체결시에 약정한 보상금이 실제로 얻은 수익에 비해 상당하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추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추가보상청구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통한 출판계약체결의 경우 획일적으로 사용료를 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용자의 이용목적과 방법, 저작자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체계화·다양화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전자책의 저작권보호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자책’과 ‘전자출판’의 개념을 저작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출판권설정계약의 내용도 전자출판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출판되는 전자책이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전자출판의 경우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의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예외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는 한미FTA 협정문에 의거하여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2007년 9월 입법예고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제125조의 2에서는 실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소송에서 손해가 실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권리자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법원은 법정손해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손해액을 인정하도록 하되, 법정손해액의 상한(저작물 당 1천만 원, 최고 5천만 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제 5 장 결 론

결국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최저 및 최고 배상액수와 금액 결정에 대한 법원의 고려사항에 대한 문제해결이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일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의 내용, 즉 법정손해액의 하한을 두지 않고 법원의 재량을 충분히 인정한 점은 법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큰 우리나라의 경우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

- 경미 김-휘서, “프랑스 저작권법 개정안”, 계간 저작권, 2006 여름 호.
- 계경문, 디지털환경에 맞는 출판권 강화 필요, 출판문화, 대한출판문화협회, 2006. 3.
-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5.
- 김기태, 출판사 홈페이지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 출판문화, 대한출판문화협회, 2006.
- _____, 저작권법상 출판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비블리아학회, 2001. 11.
- _____, 출판계약실무와 저작권, KEPA 포럼 자료집, 2006.
- 김문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전면 개정안 검토보고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2005. 6.
- 김재윤,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내용과 출판계 과제, 문화예술 255, 2000.
- 김종수, 「지식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2007.
- 김지표, “인터넷 서점의 할인경쟁 및 수익성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원 논문집, 제54집, 2006.
- 박성수, “저작권침해와 법정손해배상제도”, 『계간 저작권』, 2007.
- 박지희, “e-book의 현황과 전망”, 정보통신정책 제13권 1호, 2001.
- 방석호, “미국 CCC의 운영실태 및 활용방안”, 한국복사전송권센터의 발전방향 및 제안, 2003.

- 백원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개정방향, 출판문화, 대한출판문화협회, 2006.
- _____, 독서문화진흥법 제정과 독서정책 발전방향, 출판문화, 대한출판문화협회, 2006.
- _____, “(가칭)한국출판진흥위원회 왜 설립되어야 하는가”, (가칭)한국출판진흥위원회 설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5.
- 백원근·박호상, “도서정가제 평가 및 향후 방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 문화관광부, 2005.
- 부길만 외, 『OECD 회원국의 도서가격제도 현황』,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2005.
- 서계원, “출판인쇄진흥법의 현황과 문제점”, 『콘텐츠저작물 관련 법제의 동향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6.
- _____, “저작물 이용 및 보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식재산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 서달주, “독일의 출판관련 법제 현황과 시사점”, 『지식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2007.
- 성동규 외 4인, “전자출판물 이용자 증대를 위한 기반연구: e-book을 넘어 u-book으로”, 한국전자출판협회, 2005.
- 성선제, “온라인 뉴스와 저작권-상생의 길”, 계간 저작권, 2006 여름호,
- 안효질, 전자책의 출현과 저작권법의 대응, 국회도서관보 제40권 제3호, 2003. 5.
- 오승중·이해완 공저, 저작권법, 박영사, 2005.
- 윤 경, “만화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침해요건과 그 동일성 판단방법”, (계간)저작권 봄호, 2006.

- 윤선희, “일본의 문자·활자진흥법과 관련하여”, 계간 저작권,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2006.
- _____, “저작권법의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과제와 전망”, 『지적재산권 법의 손해배상책임제도에 대한 과제와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2002.
- 윤철상, 지식정보사회 발전을 위한 출판콘텐츠 진흥방안, 문화관광위원회 정책자료집, 2001. 9.
- 이규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현황 및 개선방안”, 『지식재산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 이대회, 전자교과서의 저작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6집,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12.
- 이용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의미와 방향”, 출판문화, 2006.
- 이정춘, 디지털 시대의 전자책 발전방향: e-book의 시장전망과 문제점, 문화관광부, 2000.
- 이호영, “수직적 거래제한의 규제-미국의 학설 및 이론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와 법치, 법문사, 2004.
- 임형목, “죽어가는 출판문화, 어떻게 살릴 것인가”, 『출판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 2005. 6.
- 정연덕, “이동통신사 DRM의 법적문제”, 『창작과 권리』 제43호, 2006년 여름
- 정윤경,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디지털시대에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안 세미나 자료집, 2007. 3.
- 정종원, 『출판&전자출판』, 학예사, 2006.

참고문헌

- 조현승, “출판시장과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권리”, KIET산업경제, 통권 79호, 2005. 4.
- 주정민, “국내 콘텐츠제작 및 유통 로드맵 구성방안(디지털콘텐츠를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에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안 세미나 자료집, 2007. 3.
- 최준영, “출판·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출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 2005. 6.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계약메뉴얼』, 2006.
- 출판유통진흥원, 『한국의 출판유통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2003,
- 현대호, “민법전의 손해배상제도와 지적재산권법의 손해배상제도”, 『지적재산권법의 손해배상제도의 과제와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2002.
- 황적인, “출판과 법률”, 세계의 출판, 한국언론연구원, 1991.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외국의 간행물 심의법제』, 2004.
- _____, 『아시아 3개국 간행물윤리조사, 일본·대만·홍콩』, 2001.
- _____, 간행물심의연감, 2005.
- 대한출판문화협회, “(가칭) 한국출판진흥위원회” 설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5. 한국출판연구소, 『도서정가제 평가 및 향후 방향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2005.
-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백서, 2006.
- _____, 도서정가제 평가 및 향후 방향에 관한 연구, 2005.

- _____ , 문화산업백서, 2005.
- _____ , 한국 전자책 산업 발전방안 연구, 2000.
- _____ ,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 2007.
- 산업자원부, 지식재산강국실현을 위한 지식재산법제 정비방안, 2006. 7.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2독일개정저작권법과 저작자의 지위강화”,
저작권연구자료 44. 2003.
- 한국언론재단, 출판환경변화에 따른 출판산업 발전방안 세미나, 2001. 11.
- 한국전자출판협회, 전자출판산업 활성화 기반연구, 2006. 2.
- _____ , KEPA 포럼 자료집, 2006.

< 영미 문헌 >

- Angelina Benedetti, “eBooks at kcls.org”, King County Library System
eBooks in the public Library Conference, 2004. 3.
- OverDrive, Angela Arnold, “eBook Retail & Distribution Channels”, Open
eBook Forum, 2004. 6.
- Philip Sefchovich, “eBook Industry Trends”, Book Fair, 2003. 10.
- Mills Davis, Mark Walter, “Next Wave Publishing Technology :
Revolution in Process and Content”, The Seybold Report, Vol 3,
No 15, 2003. 11.
- Herald Henke, “Consumer Survey on eBooks”, Open eBook Forum, 2002. 12.
- Bill Cope, Dean Mason, “New Markets for Printed Book”, C-2-C Project
Book 3. 1, 2002.

참 고 문 헌

Bob Pimm, Riding the Bullet to the E-Book Revolution, 18 Ent. & Supports Law 1, 2000.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Evaluating DRM : Building a Marketplace for the Convergent World, Version 1.0, retrieved 15 September 2006.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 2005~2009, 2005.

Dreier/Schulze, UrhG, Komm. 2. Aufl, C. H. Beck Muenchen, 2006. §§ vor 31. RdNr. 250.

Rehbinder, Manfred, Urheberrecht, 12. Aufl. C. H. Beck. 2002.

Creech, K.C, Electronic Media Law and Regulation(3rd), Boston, Focal Press, 2000.

Croteau, D. & Hoynes, W, The Business of Media, Corporate Media and the Public Interest, Pine Forge Press, 2001.

Thomas Heide, Copyright in the EU and U.S. : What “Access-Right?”, 48J. COPY. SOC'Y 363, 365, 2001.

WIPO,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2006.

Revised Draft Basic Proposal for the WIPO Treaty on the Protection of Broadcasting Organizations, SCCR / 15 / 2 (Sep. 11-13, 2006).

WIPO Doc. SCCR/7/8, April 4, 2002.

Andr Lucas et Henri-Jacques Lucas, Traité de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2eéd., 2001, Litec. no 880.

André R. Bertrand, Le droits d'auteur et les droits voisins, 2.éd., 1999, Dalloz. p.371.

Claire Elizabeth Craig, “‘Lending’ Institutions: The Impact Of The E-Book On The American Library System”, University of Illinois Law Review, 2003 U. Ill. L. Rev. 1087.

Eugene Volokh, “Cheap Speech And What It Will Do”, Symposium: Emerging Media Technology and the First Amendment, Yale Law Journal May, 1995, 104 Yale L.J. 1805.

Fisher, William W., III, Promises to Keep-Technology, Law, and the Future of Entertainment, Stanford Univ Press, 2004.

Hannibal Travis, “Building Universal Digital Libraries: An Agenda For Copyright Reform”, Pepperdine Law Review 2006, 33 Pepp. L. Rev. 761.

< 일본 문헌 >

豊田きいち 著, 著作権と編集者・出版者, 日本エディタ-スクール出版部, 2004.

送澤三男, デジタルコンテンツ法(上), 商事法務, 2004. 6.

岡村久道, インターネットの法律實務, 新日本法規出版, 2001.

諏訪春雄, 書物と電子書籍, 勉誠出版, 2004.

横山三四郎, ブック革命電子書籍が紙の本を超える日, 日経BP社, 2003. 12.

金井重彦, 著作権法 コメントール(上), 東京布井出版, 2000.

森泉章, 著作権法と民法の現代的課題(半田正夫先生古稀記念論集), 法學書院, 2003.

참고문헌

作花文雄, 著作権法基礎と應用, 發明協會, 2005.

作花文雄, 詳解 著作権法, ぎょうせい, 2002.

加戸守行, 『著作権法逐條講義』, 著作権情報センター, 2000.

大,阪弁護士会 知的財産法實務研究会, デジタルコンテンツ法(上), 商事
法務, 2004.

大,阪弁護士会 知的財産法實務研究会, デジタルコンテンツ法(下), 商事
法務, 2004.

齋藤茂樹, デジタル・コンバーゼンスの衝撃, 日経BP企画, 2005.

送澤三男, デジタルコンテンツ法(上), 商事法務, 2004. 6.

岡村久道, インターネットの法律實務, 新日本法規出版, 2001.

林紘一郎, 情報メディア法, 東京大學出版會, 2004.

부록

출판권법(독일)

제 1 조 (출판계약의 내용)

문학 및 음악 저작물에 관한 출판계약을 통해 저작자는 출판인에게 자신의 계산으로 복제 및 배포를 위하여 저작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출판인은 저작물을 복제하고 배포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 2 조 (저작자의 억제 의무 및 유보 권능)

① 저작자는 계약관계의 존속기간 동안 당해 저작권의 존속기간 중 제3자에게 금지시킬 수 있는, 당해 저작물의 모든 복제 및 배포를 억제하여야 한다.

② 그러나 저작자에게는 다음 각 호를 위한 복제 및 배포 권능이 유보된다.

1. 다른 언어 또는 다른 방언으로의 번역
2. 희곡적 형태로의 이야기의 재현 또는 이야기 형태로의 연극저작물의 재현
3. 단지 발췌 또는 다른 조성이나 음역으로의 옮김이 아닌 음악저작물의 편곡
4. 듣기 위한 기계적 재현 목적의 당해 저작물의 이용
5. 원(原) 저작물을 그 내용에 따라 영화나 이에 유사한 절차로써 재현한, 문자저작물이나 구상적(bildlich) 표현을 묘사한 것의 이용

③ 당해 저작물이 발행된 역년이 경과한 후 20년이 지났다면, 저작자도 전집으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제 3 조 (삭제)

제 4 조 (출판권의 한계)

부 록

출판인은 전집이나 편집저작물을 위하여 개별 저작물을 활용하거나 또는 특별판을 위하여 전집이나 편집저작물의 일부를 활용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위의 활용이 저작권의 전속기간 중 누구에게나 허용되어 있다면 위의 활용은 출판인에게도 동일하게 허용된다.

제 5 조 (판수)

- ① 출판인은 오직 하나의 판(版)을 위하여 권한이 있다. 출판인에게 다수의 판을 간행할 권한이 부여된 때 [출판조건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각각의 새로운 판을 위하여 종전의 것과 동일한 약정이 적용된다.
- ② 출판부수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출판인은 1,000부를 제작할 수 있다. 출판인이 복제가 시작되기 전에 저작자에 대한 의사표시를 통하여 발행부수를 더 적게 정하였다면 그 출판인은 제시한 부수만큼 당해 판을 제작할 수 있다.

제 6 조 (추가 및 증정본)

- ① 통상적인 추가본은 허용된 출판부수에 함께 계산되지 아니한다. 증정본의 경우에도 그 수가 허용된 출판부수의 2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한 이와 같다.
- ② 손상본을 대체하거나 보충하는 것이 아닌 추가본은 출판인이 배 포함 수 없다.

제 7 조 (간행본의 멸실)

출판인이 보관하는 간행본이 멸실되면 출판인은 이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출판인은 사전에 이를 저작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8 조 (출판권의 부여)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저작자 본인은] 복제 및 배포를 억제하나 출판인에게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저작자는 계

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출판인에게 복제 및 배포를 위한 배타적인 권리(출판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9 조 (출판권의 발생, 소멸 및 출판권의 보호)

- ① 출판권은 출판인에게 저작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발생하여 계약 관계의 종료와 함께 소멸한다.
- ② 출판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출판인은 저작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 정해진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 (제공시 저작물의 상태)

저작자는 출판인에게 복제를 위하여 적합한 상태로 저작물을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11조 (제공의 시점)

- ① 이미 완성된 저작물에 관하여 출판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저작물은 즉시 제공되어야 한다.
- ② 저작물이 출판계약의 체결 이후에야 작성되는 것이라면 제공 시기는 저작물의 목적에 따라 정해진다. 이와 같이 목적에 따라 정해지지 아니하면 제공 시기는 저작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른 작업을 하여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시점으로 정해진다. 제공 시기를 정함에 있어서 저작자의 여타 활동은 출판인이 계약 체결시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을 때에만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저작자의 변경권)

- ① 복제가 완료될 때까지 저작자는 저작물에 변경을 가할 수 있다. 새로운 판이 간행되기 전에 출판인은 저작자에게 변경을 가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변경은 출판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

부 록

② 저작자는 제3자를 통하여 변경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저작자가 복제가 시작된 이후에 통상의 정도를 넘는 변경을 하면 저작자는 이로부터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 그러나 그 사이에 생긴 정황으로 변경이 정당화된다면 저작자는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 (복제 및 배포의 방식)

출판인은 저작물을 목적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복제, 배포할 의무를 부담한다. 출판본의 형식 및 장정은 출판거래의 통례에 따라 저작물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여 출판인이 결정한다.

제15조 (복제의 개시)

완성된 저작물이 출판인에게 도달된 즉시 이 출판인은 복제를 시작하여야 한다. 저작물이 부분으로 나뉘어 발행된다면 간행순서에 따른 정해진 부분을 저작자가 인도한 즉시 복제가 시작되어야 한다.

제16조 (복제의무의 범위)

출판인은 계약상 또는 제5조에 따라 제작할 수 있는 간행부수를 제작할 의무를 부담한다. 출판인은 재고가 절판되지 아니하도록 제때에 배려하여야 한다.

제17조 (새로운 판의 간행)

새로운 판을 간행할 권리가 있는 출판인에게 이 권리를 행사할 의무는 없다. 위 권리를 행사하도록 저작자는 출판인에게 적절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판의 간행이 제때에 행하여지지 아니하면 저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판의 간행을 출판인이 거절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위의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제18조 (출판인의 해지권)

- ① 계약 체결 이후에 저작물에 따르는 목적이 소멸되면 출판인은 당해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저작자의 보수청구권은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출판계약의 대상이 편집저작물에의 기고이고 편집저작물의 복제가 이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

제19조 (편집저작물에의 기고의 삭제)

편집저작물에서 새로운 간행부수가 제작되는 경우 출판인은 편집인과의 합의 아래 개별 기고문을 삭제할 수 있다.

제20조 (교정)

- ① 출판인은 교정을 배려하여야 한다. 출판인은 제때에 교정쇄를 검토하도록 저작자에게 한 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저작자가 출판인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당해 교정쇄는 인정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정가)

저작물이 배포될 소매가격은 각 판에 관하여 출판인이 결정한다. 출판인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소매가격을 할인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위 가격을 올리기 위하여는 항상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22조 (보수)

- ① 출판인은 저작자에게 합의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상황에 비추어 보아 보수만을 받고 저작물을 넘겨주는 것이 기대된다면 그 보수는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 ② 보수액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상당한 금전보수가 합의된 것으로 본다.

제23조 (보수의 만기)

보수는 저작물의 제공시 지급되어야 한다. 보수액이 불확정적이거나 복제량, 특히 간행부수에 의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복제된 즉시 보수는 만기가 된다.

제24조 (판매보수)

보수가 판매에 의하여 정해진다면 출판인은 매년 저작자에게 전 사업연도에 관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자가 출판인의 영업장부를 열람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25조 (증정본)

- ① 문학저작물의 출판인은 저작자에게 매 100 간행부수당 1부의—그러나 전체적으로 5부 이상 15부 이하의—증정본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출판인은 저작자에게 그가 요구한다면 견본쇄로 1부수를 인도하여야 한다.
- ② 음악저작물의 출판인은 저작자에게 통상적인 분량의 증정본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③ 편집저작물로 발행되는 기고에 관하여는 특별본을 증정본으로 인도해도 된다.

제26조 (우대가격으로의 간행본의 인도)

출판인은, 저작자가 요구하는 한,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당해 저작물의 간행본을 자신의 출판업 경영상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저작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27조 (원고의 반환)

저작자가 복제 이전에 (원고의) 반납을 유보하였다면 출판인은 원고가 복제된 후 이 원고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28조 (삭제됨)

제29조 (계약관계의 종료)

- ① 출판계약에서 특정 판수 혹은 특정 간행부수로 제한이 있었다면 이 판수 혹은 간행부수가 절판되었을 때에 위 계약관계는 종료된다.
- ② 출판인은 저작자에게 그가 요구하면 개별 판수 혹은 특정 간행부수가 절판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③ 출판계약이 일정 기간을 두고 체결되었다면 이 기간이 경과된 후 출판인은 더 이상 재고 간행부수를 배포할 수 없다.

제30조 (저작물의 시기에 맞지 아니하는 제공으로 인한 출판인의 해제권)

- ① 저작물의 전체 또는 그 일부가 시기에 맞추어 제공되지 아니하면, 출판인은 이것의 이행을 청구함에 갈음하여 제공할 상당 기간을 부여하면서, 이 기간이 경과되면 저작자의 급부를 거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저작물이 계약상 인도되어야 할 시점 이전에 시기에 맞추어 제공될 수 없음이 알려졌다면 출판인은 위 기간을 즉시 정할 수 있다. 즉, 위 기간은 표시된 시점 이전에 경과되지 아니하도록 정해져야 한다. 저작물이 시기에 맞추어 제공되지 아니하면 위 기간이 경과된 후 출판인은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물의 제공청구권은 배제된다.
- ② 저작물의 시기에 맞춘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저작자가 거절하거나 혹은 당해 계약의 즉각적인 해제가 출판인의 특수한 이익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 ③ 저작물의 시기에 맞지 아니한 제공으로 출판인이 불리하게 하는 것이 단지 경미한 정도라면, 위 해제는 배제된다.
- ④ 본 조항을 통하여도, 저작자가 지체한 경우 출판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

제31조 (저작물의 계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인한 출판인의 해제권)

- ① 저작물이 계약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0조가 준용된다.
- ② 위 흠결이 저작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사정에 기인한 것이면, 출판인은 제30조에 규정된 해제권에 갈음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2조 (계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복제 및 배포로 인한 저작자의 해제권)
저작물이 계약에 부합되게 복제 또는 배포되지 아니하면, 제30조 규정이 저작자의 이익에 따라 준용된다.

제33조 (저작물의 우연한 멸실)

- ① 저작물이 출판인에게 제공된 후 우연히 멸실되어도 저작자는 보수청구권을 가진다. 그 이외의 점에 관하여 양 당사자는 급부의무를 면하게 된다.
- ② 그러나 저작자는 출판인의 요구가 있으면 상당한 보수를 받고—기존의 준비작업이나 여타 자료들을 근거로 약간의 노력만 들이면 완성할 수 있는—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별도의 저작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저작자가 그러한 저작물을 상당한 기간 안에 무료로 제공하면, 출판인은 당해 저작물을 멸실된 것에 갈음하여 복제, 배포할 의무를 부담한다. 저작물이 제공된 후 상대방에 귀책사유 있는 사정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누구나 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③ 출판인이 수령 지체에 있다면 인도가 된 것과 동일하다.

제34조 (저작자의 사전 사망)

- ① 저작자가 저작물의 완성 이전에 사망하였을 때, 이 저작물의 일부가 이미 출판인에게 제공되어 있으면 출판인은 제공 부분을 존중하여 저작자의 상속인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유지

할 수 있다.

② 출판인이 제1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상속인은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출판인이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 유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위 권리는 소멸한다.

③ 저작물의 완성이 저작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정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도 본 조항이 준용된다.

제35조 (사정 변경으로 인한 저작자의 해제권)

① 계약체결 당시 예견하지 못했고 상황을 인식하여 사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였다면 저작자가 저작물을 발행하지 않았을 상황이 발생한다면, 복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저작자는 출판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출판인에게 새로운 판을 발행할 권능이 있으면, 그 신판에 관하여 본 조항이 준용된다.

② 저작자가 본조 제1항을 근거로 해제 의사표시를 하면, 그 저작자는 출판인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배상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저작자가 해제 이후 1년 이내에 당해 저작물을 다른 곳에서 간행하면, 이 저작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저작자가 출판인에게 나중에 계약을 완성시키자는 신청을 했는데 출판인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 배상 의무가 생기지 아니한다.

제36조 (출판인의 파산)

① 출판인의 재산에 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고 절차 개시 이전에 저작물이 이미 제공되었다면 파산법 제103조가 적용된다.

② 파산관재인이 계약의 이행을 주장하고 출판인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다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갈음하여 계약관계에서 생겨난 의무에 책임을 진다. 그러나 위 양수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파산재단은 위 양수인에게 배상받을 손해배상에 관하여 사

전에 소구할 항변권을 포기한 보증인과 같은 책임을 진다. 파산절차가 폐지되어도 위 책임에서 생겨난 저작자의 파산재단에 대한 청구권은 보장된다.

③ 파산절차 개시시에 복제가 시작되지 아니하였다면 저작자는 계약관계를 해제할 수 있다.

제37조 (출판계약 해제의 의사표시 및 법률효과)

제17조, 제30조, 제35조, 제36조에 규정된 해제권에는 민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계약상의 해제권에 관한 조항이 준용된다. 상대방에 의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해제되면 상대방은 부당이득반환 규정에 따른 책임만을 진다.

제38조 (계약의 일부 유지)

① 저작물이 전부 또는 일부 제공된 후 출판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계약이 일부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정에 따라 다르다. 해제가 법률에 근거하든 계약상 유보에 근거하든 차이가 없다.

② 의심스러운 경우 계약은 출판인이 처분할 수 없는 간행본과 저작물의 이전 부분 또는 구판에 미치는 한도에서 유지된다.

③ 계약이 유지되는 한도에서 저작자는 그 부분에 상응한 보수를 주장할 수 있다.

④ 계약이 달리 원상복구된 경우에도 위 조항들은 적용된다.

제39조 (비보호 저작물에 관한 출판계약)

①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이 계약의 대상이라면 저작자는 출판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저작자가 저작물이 이미 달리 출판되었거나 공표된 사실을 악의로 숨겼다면 권리 하자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하자담보 의무에 관한 민법상의 조항이 준용된다.

③ 위 저작자는 당해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제2조에 따라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를 억제하여야 한다. 출판인에 의한 저작물이 공표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위 제한은 없다.

제40조 (비보호 저작물에 관한 출판계약시 출판인의 권능)

제39조의 경우 출판인은 자신으로부터 공표된 저작물을 제3자에게 변경 없이 또는 변경을 가하여 다시 복제하게 할 권능이 있다. 계약상 새로운 판 또는 그 이상의 간행본 제작이 개별적 보수의 지급에 따른다면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41조 (정기간행물에의 기고)

신문, 잡지 또는 여타 정기간행물에 기고가 공표되면 제42조 내지 제46조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본법이 적용된다.

제42조 (삭제)

제43조 (정기간행물상 간행본의 부수 및 교정)

기고를 포함하는 편집물에서 출판인은 제작되는 간행본의 수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0조 제1항 제2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4조 (정기간행물상 변경의 허용)

기고가 저작자의 성명없이 발행된다면 출판인은 원문과 같은 종류의 편집물에 통상적인 변경을 할 권능이 있다.

제45조 (정기간행물상 저작자의 해지권)

① 기고가 출판인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하면 저작자는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보수청구권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기고가 발행되어야 할 시점이 저작자를 위하여 출판인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만 기고의 복제 및 배포청구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부 록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저작자에게 귀속한다.

제46조 (정기간행물상 증정본과 저작자의 매수권)

- ① 기고가 신문으로 발행되면 저작자는 증정본을 요구할 수 없다.
- ② 출판인은 저작자에게 서적의 판매가로 간행본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47조 (주문계약)

- ① 주문자가 저작물의 내용 및 구성의 종류와 방식을 정확히 규정한 계획에 따른 저작물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 의심스러운 때에는 주문자에게 복제 및 배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② (저작자의) 작업이 백과사전 같은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나 편집물을 위한 보조적인 것 또는 부수적인 것에 한정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

제48조 (출판의뢰인)

출판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저작자가 아닌 경우에도 본법이 적용된다.

제49조 (대상이 없어짐)

제50조 (발효)

본법은 1902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문자·활자 진흥법 (일본)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문자·활자문화가 인류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축적해온 지식과 지혜의 계승 및 향상, 그리고 풍요로운 인간성의 함양과 건전한 민주주의 발달에 필수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문자·활자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 이념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문자·활자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자·활자문화 진흥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기해 지적이고 풍요로운 국민생활과 활력 있는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문자·활자문화’라 함은, 활자와 기타 문자를 이용해 표현된 것(이하 문장이라 함)을 읽고 쓰는 것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신적 활동, 출판활동 및 문장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 출판물 등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 3 조 (기본이념) 1. 문자·활자문화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추진은 모든 국민이 자주성을 존중받으며 평생에 걸쳐 지역, 학교, 가정, 기타 다양한 장소에서 거주 지역, 신체적 조건, 기타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동등하게 풍요로운 문자·활자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어야 한다.

2. 문자·활자문화의 진흥에 있어서는 일본어가 일본문화의 기반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 학교교육에서는 모든 국민이 문자·활자문화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정 전반을 통해 읽기능력과 쓰기능력,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기초로 하는 언어능력 함양에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전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문자·활자문화의 진흥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가 있다.

제 5 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가와의 연계를 도모하면서 지역의 실정에 맞춰 문자·활자문화 진흥에 관한 정책을 책정하여 실시할 책무가 있다.

제 6 조 (관계기관과의 연계 강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문자·활자문화의 진흥에 관한 정책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도서관,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체제 정비에 노력해야 한다.

제 7 조 (지역의 문자·활자문화 진흥) 1.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은 도서관 봉사에 대한 주민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수의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공립도서관이 주민에 대해 적절한 도서관 봉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서의 충실 등 인적 체제의 정비, 도서관 자료의 충실화, 정보화의 추진 등 물적 조건의 정비, 기타 공립도서관의 운영 개선과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대학 및 기타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도서관의 일반공중 개방, 문자·활자문화에 관련된 공개강좌의 개설, 기타 지역의 문자·활자문화 진흥에 공헌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앞의 제3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지역에서의 문자·활자문화 진흥을 위해 문자·활자문화 진흥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펼치는 민간단체의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 8 조 (학교교육에서의 언어능력 함양) 1.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학교교육에서 언어능력의 함양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의 보급과 기타 교육방법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교원의 양성과 연수 내용의 충실화 및 기타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학교교육에서의 언어능력 함양에 필요한 환경 정비를 충실히 하기 위해 사서교사 및 학교도서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여타 직원의 충실화 등 인적 체계의 정비, 학교도서관 자료의 충실화와 정보화 추진 등 물적 조건 정비에 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 9 조 (문자·활자문화의 국제교류) 국가는 가능한 다양한 나라의 문자·활자문화가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함과 아울러 우리나라 문자·활자문화의 해외 발신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그 문화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외국 출판물의 일본어 번역을 지원하고, 일본어 출판물의 외국어 번역을 지원하며, 기타 문자·활자문화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0조 (학술출판물의 보급) 국가는 학술출판물의 보급이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학술연구 성과에 대한 출판의 지원,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1조 (문자·활자문화의 날) 1. 국민 일반에 널리 문자·활자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문자·활자문화의 날을 정한다.

2. 문자·활자문화의 날은 10월 27일로 한다.

3.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문자·활자문화의 날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록

제12조 (재정상의 조치 등)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문자·활자문화의 진흥에 관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및 기타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